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장 진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김 연 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최근 인구사회학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단연 1인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부상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형태의 가족을 대신하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상징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 기능, 가치관의 변화를 담지하고,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각 연령대의 요구에 맞는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 ‘5抛世代’로 지칭되는 청년세대는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정 그리고 주거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여성 1인가구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이기에 가지는 어려움을 동시에 지닌 계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빈곤, 소득빈곤은 중장년세대를 넘어 고령세대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 주거공급,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를 위해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토론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 공유해주신 연구자 및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청년여성 1인가구로써의 삶에 대해 공유해주신 참여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이 연구가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넘어 삶의 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 경 희

Contents

I 서론_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1.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실태조사	8
1.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	9
3. 연구추진체계	11

I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 및 특성_ 13

1. 선행연구 검토	15
2.1.1 1인가구 및 청년여성의 정의	15
2.1.2 1인가구와 주거에 관한 연구	18
2.1.3 여성 1인가구와 안전에 관한 연구	20
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규모와 특성	22
2.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 현황	22
2.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인적자본 및 경제적 특성	27
2.2.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현황	33
2.2.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사회참여	35

3. 청년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현황	36
2.3.1 일자리 지원 정책	37
2.3.2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37
2.3.3 여성 안전정책	40
2.3.4 해외사례	42

Ⅲ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현황 및 특성_ 47

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49
3.1.1. 조사개요	49
3.1.2.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적 특성 및 세대별 비교	51
3.1.3. 청년여성 1인가구 경제적 특성 및 세대별 비교	59
3.1.4.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및 세대별 비교	73
3.1.5.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상태	88
3.1.6. 청년여성 1인가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96
3.1.7. 청년여성 1인가구 정책수요	103
3.1.7. 소결	107
2. 점유형태 및 안전 결정요인 실증분석	111
3.2.1. 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분석모형 및 방법	111
3.2.2.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결과	114
3.2.3. 안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및 방법	117
3.2.4.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영향요인 분석결과	121
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 조사결과	124
3.3.1. 조사개요	124
3.3.2. 자발적 1인가구 유입과 원가족과의 관계	125

3.3.3.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	126
3.3.4. 청년여성 1인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130
3.3.5. 공동주거로 인한 장점 및 애로사항	131
3.3.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경험과 문제점	133

IV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_ 137

1.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지원방안	139
4.1.1.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139
4.1.2.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및 대상조건 완화	144
2. 안전 지원방안	147
4.2.1. 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147
4.2.2.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적극적 확대 및 환경개선	149
4.2.3.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 및 기능 확대	150
3. 일자리 지원방안	153
4.3.1. 강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153
4.3.2.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대상자 확대	156

참고문헌 _ 158

Abstract _ 160

부록 _ 163

표 목차

표 I-1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 가구 현황 및 비중(2000-2015)	4
표 I-2	서울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2000-2015)	5
표 I-3	연령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및 비중(2015)	5
표 I-4	소득 1분위 청년 임차가구의 RIR, Schwabe지수 추이(2009-2012)	6
표 I-5	설문조사 대상 및 특성	8
표 I-6	분석자료 및 출처	9
표 I-7	FGI 조사 참여자 특성	10
표 II-1	통계청 가구형태별 정의	15
표 II-2	선행연구 1인가구 정의	16
표 II-3	서울시 일반가구 및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추이(1990-2015)	23
표 II-4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추이(1995-2015)	23
표 II-5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2015)	24
표 II-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변화(2010-2015)	25
표 II-7	서울시 일반가구 및 여성 1인가구 거주기간 비교(2010)	25
표 II-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거주기간 비교(2010)	26
표 II-9	서울시 일반가구 및 여성 1인가구, 세대별 5년 전 거주지 비교(2010)	27
표 II-10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2010)	28
표 II-11	서울시 성별 1인가구 교육수준(2010)	29
표 II-12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2010)	29
표 II-13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종사상지위(2010)	30
표 II-14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직업별 종사비중(2010)	31
표 II-1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지위(2010)	32
표 II-1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상관관계	32
표 II-1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인상태(2010)	33
표 II-1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거주유형(2010)	34
표 II-19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점유형태(2010)	34
표 II-20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참여 현황(2015)	35
표 II-21	서울시 1인가구 주요 지원정책 현황	36

표 II-22	북아일랜드 HMO 주거면적 기준	43
표 II-23	북아일랜드 HMO 위생시설 기준	43
표 II-24	미국 SRO 주택품질 판정기준	45
표 III-1	청년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주요 내용	49
표 III-2	청년여성 1인가구 조사대상 표집현황	50
표 III-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교육수준	52
표 III-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혼인상태	52
표 III-5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1인가구 유입경로	53
표 III-6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유입경로	53
표 III-7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삶 만족도	54
표 III-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 및 근로형태와 삶 만족도 상관관계	55
표 III-9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삶 만족도	55
표 III-10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혼자 사는 어려움	56
표 III-11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자 사는 어려움	57
표 III-1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월평균소득별 우울감 경험	59
표 III-1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종사장 지위	60
표 III-1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근로형태	60
표 III-15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61
표 III-16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월평균소득 분포	62
표 III-1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분포	63
표 III-1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근로형태	63
표 III-1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분포	64
표 III-20	서울시 청년여성 교육수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65
표 III-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근로소득 외 소득	66
표 III-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66
표 III-23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주관적 생활수준	67
표 III-2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대비 생활비별 주관적 생활수준	67
표 III-2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연령대별 부채유무	68
표 III-2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부채규모	69
표 III-27	서울시 청년여성 근로형태별·연령대별 부채규모	69
표 III-28	서울시 청년/중장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저축금액 분포	70
표 III-2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월평균 저축금액 분포	70
표 III-3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71

Table Contents

표 III-3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저축의 주된 이유	72
표 III-3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 저축의 주된 이유	72
표 III-3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주거형태	73
표 III-3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 월평균소득과 주거형태 상관관계	74
표 III-3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주거형태	74
표 III-3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 근로형태와 주거면적 상관관계	76
표 III-3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주거면적	76
표 III-3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점유유형	77
표 III-3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과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78
표 III-40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	78
표 III-4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별 주거비	79
표 III-4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주거비 마련방법	80
표 III-43	소득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비 부담정도	81
표 III-4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현 주거지 선택이유 1순위	82
표 III-45	현 주거지 선택이유 1순위별 2순위	83
표 III-4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점유유형별 현 주거지 만족도	84
표 III-47	월평균소득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마련 시 어려움	85
표 III-4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내 집 마련의 필요성 정도	86
표 III-4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내 집 마련이 불필요한 이유	87
표 III-5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공동체주택에 관한 인식	87
표 III-5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주거형태별 주관적 안전정도	88
표 III-5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89
표 III-5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관적 노출 범죄유형	90
표 III-5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유형별 범죄발생 가능성 장소	90
표 III-5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와 주거지 안전 상관관계	91
표 III-5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지 안전에 대한 인식	91
표 III-57	월평균소득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층수	92
표 III-5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층수, 주거지 안전,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93
표 III-59	거주지 층수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인식	93
표 III-6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불안의 원인	94
표 III-6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경험여부	95
표 III-62	남성 1인가구 대비 주관적 범죄노출정도	96
표 III-6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평일/주말 여가활동 1순위	97

표 III-6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 주말 여가활동 1순위	98
표 III-6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 주말 여가활동 1순위	99
표 III-6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소득수준별 여가시간 충분정도	100
표 III-6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소득수준별 여가활동 어려운 이유	101
표 III-6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소득별 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	102
표 III-6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소득수준별 고민대화상대 유무	103
표 III-7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1순위 정책수요	104
표 III-7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택안정 정책수요	105
표 III-7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정책수요	106
표 III-7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경제적 지원 정책수요	107
표 III-74	변수 기초통계량	114
표 III-75	서울시 청년여성 점유형태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116
표 III-76	변수 기초통계량	119
표 III-7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영향요인 추정결과	122
표 III-78	안전영향요인 한계효과	124
표 III-79	FGI 조사 참여자 특성	125
표 부록2-1	학력	181
표 부록2-2	혼인상태	181
표 부록2-3	혼자 생활하는 이유	182
표 부록2-4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182
표 부록2-5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183
표 부록2-6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1순위	183
표 부록2-7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2순위	184
표 부록2-8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1순위	184
표 부록2-9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2순위	185
표 부록2-10	거주주택유형	185
표 부록2-11	점유형태	186
표 부록2-12	신체건강상태	186
표 부록2-13	신체건강상태	187
표 부록2-14	정신건강상태	187
표 부록2-15	정신건강상태	188
표 부록2-16	운동빈도	188
표 부록2-17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189

Table Contents

표 부록2-18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	189
표 부록2-20	고민상담 상대	190
표 부록2-21	현재 직업	190
표 부록2-22	종사상 지위	191
표 부록2-23	전반적인 생활수준	191
표 부록3-1	학력	193
표 부록3-2	혼인상태	193
표 부록3-3	거주주택유형	194
표 부록3-4	혼자 생활하는 이유	194
표 부록3-5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195
표 부록3-6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195
표 부록3-7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1순위	195
표 부록3-8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2순위	196
표 부록3- 9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1순위	196
표 부록3-10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2순위	197
표 부록3-11	점유형태	197
표 부록3-12	신체건강상태	198
표 부록3-13	신체건강상태	198
표 부록3-14	정신건강상태	199
표 부록3-15	정신건강상태	199
표 부록3-16	운동빈도	200
표 부록3-17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200
표 부록3-18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	201
표 부록3-19	여가시간의 충분도	201
표 부록3-20	여가시간의 충분도	201
표 부록3-21	여가활동이 어려운 점	202
표 부록3-22	고민상담 상대	202
표 부록3-23	현재 직업	203
표 부록3-24	종사상 지위	203
표 부록3-25	근로형태	204
표 부록3-26	부채여부	204
표 부록3-27	전반적인 생활수준	204
표 부록3-28	향후 생활수준	205

그림 목차

■ 그림 II-1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절차	39
■ 그림 III-1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자 사는 어려움별 우울증 경험	58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다인(多人)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정책변화 필요

- 1990년 25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시의 1인가구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111만 가구에 달하였으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역시 1990년 13만 가구였으나, 2015년 57만 가구로 집계되며 1인가구 중 절반은 여성 1인가구로 집계됨

□ 고용불안정 및 주거, 안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여성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0년 45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09만 명이었으나, 서울시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000년 250만 명에서 40만 명 감소하였음. 청년세대는 유일하게 2000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세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남. 이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임금근로자 중 30.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 고용의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역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9.5%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세 보증금의 증가 등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빈곤의 가속화, 주거취약계층에 편입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 한편, 강력범죄피해자 중 87.0%는 여성이며, 이 중 91.7%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강간·강제추행 피해여성 중 55.6%는 청년여성으로 집계되고 주거지(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발생비중이 가장 높음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불안정주거 및 안전지원방안 마련

-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주거빈곤에 직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FGI를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위치와 주거환경,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주거안정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 서울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청년여성 1인가구의 높은 비중

- 서울시 1인가구는 1990년 25만 7천 가구였으나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50만 가구, 2015년 112만 가구에 달함.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 9.1%에서 2015년 28.5%로, 19.4%p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5)
- 서울시 1인가구의 증가추세 가운데 2015년 여성 1인가구 역시 1990년 13만 2천 가구에서 4.3배 증가한 57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43.7%(24만 9천 가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로 나타남

□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로 관악구, 강남구에 거주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관악구(2만 7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1.2%가 집중되어 있음. 다음으로는 강남구(1만 9천 가구), 마포구(1만 5천 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됨
- 2010년 자치구 일반가구 대비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강남구였으나 2015년 관악구로 나타남.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이 25%~30%인 자치구는 2010년 관악구가 유일하였으나 2015년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총 6개 자치구로 증가함. 이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수의 증가를 의미함

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현황 및 특성

□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및 개인적 편의를 위해 1인가구 유입, 높은 생활만족도

- 청년여성 1인가구 중 61.5%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 1인가구로 유입되었으며, 26.4%는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 1인가구 중 63.9%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45.8%), 고령여성 1인가구(30.4%)보다 더 높은 비중임. 즉, 이혼/사별 등에 의한 비자발적 유입보다 자발적 유입비중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 경제적 문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6.4%),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19.6%)등의 순으로 조사됨. 특히,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32.6%)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정규직은 이보다 9.8%p 낮은 22.8%를 보임

□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 서울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38.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65.8만원 낮은 172.7만원으로 조사됨.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15.2%는 최저임금이하(월평균 135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6.4%가 최저임금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이보다 20.8%p 높은 27.2%로 조사됨. 즉,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낮은 소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5.9%는 5평 미만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월평균소득 200-250만원 1.0%, 250-300만원 0.9%, 300만 원 이상 0.0%로 나타남. 즉, 소득수준은 주거환경으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임
-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점유유형에 있어서도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남. 최저임금이하 1인가구 중 55.1%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매월 주거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 게다가 42.1%는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여겨지는 고시원/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불안정 점유형태(보증금 있는 월세/사글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매월 주거비를 부담(경제적 부담)하는 악순환에 놓임

□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자가 비중,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부모 지원에 의존

- 청년여성 1인가구의 자가 점유비중은 6.2%수준으로 중장년여성 1인가구(51.0%)보다 44.8%p 낮았으며, 고령여성 1인가구 70.0%에 비해 무려 63.2%p 낮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여성 1인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불안정이 매우 높은 계층임을 의미함
- 또한 주거비 마련을 위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33.7%가 부모나 친지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64.5%에 달함. 바꿔 말하면, 청

년여성 1인가구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석됨. 또한 월세 등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에 대해 74.2%는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을 가진 고소득 계층이라 할지라도 73.3%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

- 조사대상의 55.4%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거지 층수가 낮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4층 이상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8.1%만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나, 지하/반지하(42.0%), 3층(42.5%), 1층(42.7%), 2층(53.2%) 순으로 나타남
-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11.3%),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9.4%) 등으로 나타남

□ 주거지의 안전보다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인터뷰 결과, 청년여성 1인가구는 스스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선택 시 안전보다 접근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여성폭력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는 안전불감 모습도 관찰됨

□ 공동체주택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나 사생활 보장 등의 문제점

- 2인 1실의 공간과 주방, 화장실의 공유로 인한 불편함, 적은 공급량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 이는 공동체주택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최소한의 독립 공간(1인 1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짧은 이용가능시간 및 개인정보 노출의 불안감

- 현재 이용가능한 시간대는 밤10시~새벽2시까지 이나 버스환승 등의 상황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지님. 또한 귀가 후 스카우트의 실적을 위해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서명 등)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불안에 노출됨

3. 정책방안

□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 역세권 중심의 자가소유 저소득 고령여성 1인가구 발굴 및 리모델링 협의
 - ※ 연립/다세대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거취 문제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단독주택 우선 고려
- 리모델링 전액지원을 전제로 한 임대료, 임대기간 협의
-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유지를 통한 고령여성 1인가구 참여활성화 및 리모델링 및 신축건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마련
 - ※ 토지 및 신축건물 중 1실은 고령여성 1인가구로 유지하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증축된 실에 대한 소유·운영은 서울시로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특히, 고령여성 1인가구의 사망 시 재산권에 대한 법적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부지확보 및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시 기부채납
 - 역세권 주변 임야(산) 또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한 사업부지 확보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시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 노원구 상계3동의 경우, 역세권 내 재정비촉진지구, 임야, 낙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시범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됨

□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및 대상조건 완화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4조(입주자 선정) 개정을 통한 서울시 1인가구 주택공급 우선순위 대상자 포함
- 서울시 재건축사업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 시 1인^o가구 우선공급대상자 포함
-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1인가구 우선권 부여 및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필요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여성 1인가구 의무배정 및 장기안심주택을 포함한 주택자금 지원정책 대상자 확대 요구

□ 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집주인과 협의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집주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시설 설치신청 → 집주인과 협의 후 방법창, 주 출입구 안전

시설 등 건물 전체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여성안심택배 설치 시 우선적 고려

□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적극적 확대 및 환경개선

- 서울시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공용주차장 내 여성안심택배 설치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우선순위 설치 및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 24시간 편의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안전 및 접근성 확보

□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 및 기능 확대

- 안심귀가스카우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력확보 및 2교대 시스템 체계마련
- 주중/주말 및 하절기/동절기 각각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지구대 또는 자율순찰대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 방안 마련
-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이용실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강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대상 교육수준, 전공, 경력, 자격증 여부 등 개인특성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인력풀 구성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강소기업 수요조사 후 민간 일자리와 연계
- 청년여성과 서울시 강소기업 매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대상자 확대

-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심 근로실태조사 및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법적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에 대한 신고 시 신고절차, 증빙서류 등 원활한 신고 및 해결을 위한 도움서비스 운영

※ 현재 최저임금미만 사업장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증빙(근로시간, 월평균소득 등)을 통해 차액분 지급명령이 이루어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모하여 왔으며, 최근 핵가족화를 넘어 홀로 가구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1인가구의 수는 약 220만 가구였으나, 2015년 520만 가구로 집계되어 일반가구의 30.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역시 2000년 약 50만 가구였으나 2010년 약 85만 가구, 2015년 112만 가구로 증가하여 서울시 일반가구 중 28.5%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서울시 가구 정책은 전통적 다인(多人)가구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정책변화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편,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1인가구는 2000년 28만 가구였으나 15년간 1.9배 증가하여 2015년 52만 가구에 달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수는 서울시 1인가구(112만 가구) 중 46.8% 해당하며, 중장년 1인가구보다 1.6배, 노인 1인가구의 2.1배이다. 또한 2015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2%였으며, 이는 남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48.8%보다 2.4%p(2만 7천 가구) 높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중 청년여성 1인가구는 43.7%를 차지하여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1 서울시 성별/세대별 1인 가구 현황 및 비중(2000-2015)

(단위: 가구, %)

연도	성별/ 비율	계	20세 미만	2030 (청년세대)	4050 (중장년세대)	6080 (고령세대)
2000	남성	237,340	3,468	159,777	55,337	18,758
	%	47.3	0.7	31.8	11.0	3.7
	여성	264,905	3,800	125,022	65,029	71,054
	%	52.7	0.8	24.9	12.9	14.1
2005	남성	321,904	3,525	202,393	86,031	29,955
	%	47.6	0.5	30.0	12.7	4.4
	여성	353,835	3,987	167,758	84,630	97,460
	%	52.4	0.6	24.8	12.5	14.4
2010	남성	404,576	4,122	228,576	123,659	48,219
	%	47.3	0.5	26.7	14.5	5.6
	여성	450,030	4,957	204,384	105,988	134,701
	%	52.7	0.6	23.9	12.4	15.8
2015	남성	544,059	5,604	272,130	191,468	74,857
	%	48.8	0.5	24.4	17.2	6.7
	여성	571,685	8,117	249,555	140,489	173,524
	%	51.2	0.7	22.4	12.6	15.6

주1 : 해당셀의 %는 전체가구에서 해당 연령대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2 : 60-80대는 85세 이상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DB웹자료

한편, 청년세대를 의미하는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의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우석훈 외, 2007). 특히, 서울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어려운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이 취업자 수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0년 45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09만 명이었으나, 2015년 서울시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000년(250만 명) 대비 40만 명 감소한 210만 명이였다. 특히, 청년세대는 2000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유일한 세대로 드러나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표 I-2 서울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2000-2015)

(단위: 천명)

성별	세대별	2000(A)	2005	2010	2015(B)	B-A
남성	청년세대	1,429	1,338	1,175	1,093	-336
	중장년세대	1,098	1,226	1,341	1,371	273
	고령세대	167	232	277	370	203
여성	청년세대	1,074	1,075	982	1,009	-65
	중장년세대	692	832	947	999	307
	고령세대	106	129	168	247	141

자료: 통계청, 시도별 취업자 수, 2015, DB웹자료

청년세대의 고용의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임금근로자 중 30.8%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는데(통계청, 2015), 이는 21.9%를 보인 청년남성 비정규직보다 8.9%p(11만 명) 높았다. 즉, 서울시 청년여성은 취업, 일자리 등 청년세대가 가진 어려움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가지는 어려움을 동시에 지닌 계층이라 볼 수 있다.

표 I-3 연령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및 비중(2015)

(단위: 천명, %)

성별	세대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¹⁾	
				%		%
남성	총 합	10,878	7,997	73.5	2,882	26.5
	청년세대	4,639	3,625	78.1	1,014	21.9
	중장년세대	5,090	3,949	77.6	1,141	22.4
	고령세대	1,038	391	37.7	647	62.3
여성	총 합	8,434	5,044	59.8	3,390	40.2
	청년세대	3,648	2,526	69.2	1,123	30.8
	중장년세대	3,724	2,238	60.1	1,487	39.9
	고령세대	917	247	26.9	670	73.1

주1 : 비정규직의 경우 한시직/기간제/시간제/비전형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2015, DB웹자료

이와 같은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문제는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9.5%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세 보증금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빈곤의 가속화, 주거취약계층에 편입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정희주·오동훈, 2014).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은 주택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주거비에 지출하지 않는 상태”(오동훈, 2001)로 정의할 수 있다. 임경지(2015)에 의하면 직업을 갖지 못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비율이 높은 20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Rent to Income Ratio)¹⁾과 슈바베 지수²⁾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60%는 RIR 지수가 30%³⁾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마련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놓여있었다.

【 표 I - 4 】 소득 1분위 청년 임차가구의 RIR, Schwabe지수 추이(2009-2012)

(단위: 천원, %)

구 분	절대액						비율			
	소득		지출		주거비		보증금 제외		보증금 포함	
	전체 소득	가처분 소득	전체 지출	소비 지출	보증금 제외	보증금 포함	RIR	Schwabe	RIR	Schwabe
2009	673	570	861	758	150	277	26.3	19.8	48.6	36.5
2010	694	574	894	775	164	312	28.6	21.2	54.4	40.3
2011	772	643	991	863	185	342	28.8	21.4	53.2	39.6
2012	849	738	986	875	194	364	26.3	22.2	49.3	41.6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해당연도, 최은영(2012) 재구성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지를 선택하여 안전, 건강에 취약한 환경에 놓일 우려도 배재할 수 없다. 범죄통계(2014)에 의하면 강력범죄피해자 중 87.0%는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약 6.7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강력범죄피해 여성 중 91.7%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보다 무려 18.7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피

1)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을 의미함

2) Schwabe지수는 가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RIR과 슈바베 지수가 25%를 초과하면 매우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보증금을 포함한 RIR지수를 중심으로 산출한 결과임

해여성 중 55.6%는 청년여성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여성의 강력범죄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강간·강제추행은 주거지(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가 19.8%로 가장 높았으며 노상(17.3%), 숙박업소·목욕탕(10.9%), 유흥접객업소(9.4%), 기타교통수단(4.8%)순이었다. 따라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 여성 안전을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열악한 주거지는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거빈곤이 개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밝혔다. 이처럼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주거빈곤, 건강악화 등 복합적 불평등 구조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위치와 주거환경, 안전 등을 점검하고 주거안정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 및 1인가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1인가구 또는 청년세대 지원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와 정책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비롯해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더불어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가족정책 중추 합의를 수립하고 1인가구를 위한 주거, 건강, 안전 등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국 및 서울시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성별/세대별 비교를 실시한다. 셋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실태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1.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실태조사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 유입경로, 경제상태, 주거, 안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여가 등을 실태조사하였다. 특히, 주거불안정과 주거지 형태 및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연령대별/근로형태별 임의 할당하였다. 다만, 주거환경 비교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를 최소 15.0% 범위 내에서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I-5 설문조사 대상 및 특성

구 분		명	%
연령대	20-24세	95	13.5
	25-29세	211	29.9
	30-34세	236	33.4
	35-39세	164	23.2
거주지	도심권	70	9.9
	동북권	210	29.7
	서북권	137	19.4
	서남권	213	30.2
	동남권	76	10.8
근로형태	정규직	394	55.8
	비정규직	276	39.1
	자영업	36	5.1

설문조사와 더불어 서울시 1인가구 현황 등에 관한 거시적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 배포기간의 한계로 인해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MDIS)와 2015년 KOSIS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청년여성 1인가구의 분포 등을 2015년 인구총조사를

4)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III장 조사개요를 참고

이용하였으나, 교육수준 및 종사상지위 등은 부득이하게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의 통일성을 위해 2010년과 2015년 두 개 연도에 동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가령,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는 주거형태가 제공되나 점유유형은 아직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2015년 주거형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구총조사 주거형태 및 점유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I-6 분석자료 및 출처

지표	세부지표	분석기간	출처
	1-1. 성별/세대별 1인가구 수	2015년	통계청 (KOSIS)
	1-2. 자치구별 청년여성 1인가구 수	2015년	
	1-3. 세대별 거주기간	2010년	통계청 (MDIS)
	1-4. 세대별 5년 전 거주지		
	1-5. 세대별/성별 교육수준		
	1-6. 세대별/성별 경제활동상태		
	1-7. 세대별/성별 종사상지위		
	1-8. 세대별/성별 혼인상태		
	1-9. 세대별/성별 주거형태		
	1-10. 세대별/성별 점유형태		
2. 경제활동인구조사	2-1. 연령별/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2015년	통계청
3. 사회조사	3-1. 세대별 사회참여	2015년	통계청

1.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경험과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다양한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특히, 주거지 불안의 원인과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 이용경험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주택 공급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체주택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공동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현재 서울시 안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I-7 FGI 조사 참여자 특성

사례	참여자	연령	경제활동상태	지역	특성
A	김△△	20대 후반	아르바이트	마포구	연립/다세대 거주
B	김○○	30대 초반	정규직	강남구	연립/다세대 거주
C	김□□	30대 초반	정규직	마포구	연립/다세대 거주
D	황△△	30대 초반	정규직	서초구	연립/다세대 거주
E	김○○	20대 후반	프리랜서	서초구	연립/다세대 거주
F	안□□	20대 후반	정규직	마포구	오피스텔 거주
G	조△△	30대 후반	정규직	마포구	오피스텔 거주
H	박○○	20대 중반	비정규직	서대문구	공동체주택 거주
I	성□□	20대 중반	비정규직	서대문구	공동체주택 거주
J	김○○	20대 후반	정규직	용산구	연립/다세대 거주
K	원△△	20대 후반	정규직	강동구	연립/다세대 거주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1. 선행연구 검토
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규모와 특성
3. 청년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현황

I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1. 선행연구 검토

2.1.1 1인가구 및 청년여성의 정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청년과 1인가구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으며,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청년과 1인가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통계청 가구 정의의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가구는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1인가구로 다시 구분되며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 비혈연 6인 이상 가구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포함하고 있다.

표 II-1 통계청 가구형태별 정의

구 분	세부분류	정의
일반 가구	혈연가구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하는 가구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집단 가구	집단시설 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 기숙사 등의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비혈연 6인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 내에서

구 분	세부분류	정의
	이상 가구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
외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설명자료

그 중 일반가구 안에 포함되어있는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기존의 많은 문헌들에서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옥연·문영기, 2009). 차경욱(2006)은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1인 가구라 정의하였으며, 김년희·채정숙(2005)은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가구를 독신가구 혹은 단독가구로 정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혜영 외(2007) 역시 배우자가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혹은 이혼 전 단계로써 별거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와 기러기가족, 주말부부 등 가족과 별거로 인한 가구를 1인가구로 정의하였다.

표 II-2 | 선행연구 1인가구 정의

연구자	지칭 용어	1인가구 정의
여운경·양세정 (2001)	1인 가구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단독 가구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가구 또는 부부(노부부)가구
김년희·채정숙 (2005)	독신 가구, 단독 가구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까지 포함,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차경욱 (2006)	1인 가구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가구
김옥연·문영기 (2009)	1인 가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 청·장년층 가구
통계청 (2015)	1인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이상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정의한다. 즉,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 후 이혼 또는 사별, 학업·직장 및 원가족의 이민 등으로 인해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포함한다.

청년세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는 만 15~24세, 우리나라에서는 만 15~29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역시 15~29세 이하를 청년세대로 보았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인 15세~34세를 청년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의 경우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청년취업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우리나라 청년세대 연령규정인 만 15~29세를 따르고 있으며 성영애(2013)는 통계청 연령분류기준에 따라 만 34세 이하를 청년세대로 분류하였다. 김수정(2010)은 만 18세~34세, 안상수 외(2015)는 만 15~34세를 청년세대로 정의하였다.

앞서 많은 연구들이 청년세대를 34세까지 제한하여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연령을 포함하여 만19세~39세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해 후술하겠으나,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여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여성 1인가구의 노동시장 진출 시기 등을 고려하고 더욱 폭넓은 연령대와 경제적 여건, 근로형태 등으로 세부 분류하여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연령을 포함하였다.

2.1.2 1인가구와 주거에 관한 연구

1인가구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주택과 주거분야라고 할 수 있다(변미리, 2014). 특히, 1인가구는 2000년 이후 주거분야의 새로운 정책수요자로 등장하면서 주택공급계획 및 수요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성진용, 2008). 하지만 여성 1인가구의 주거관련 연구는 주로 안전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주거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빈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과 여성 1인가구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에 관한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문제 조사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인가구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 중 권주안 외(2007)은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전망하고 공급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인가구 임차유형별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주거선호 고려, 소형주택 공급, 대출대상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분석한 신미림·남진(2011)에 의하면 1인가구는 주택수요에 있어 소득보다 주거비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일반가구와 달리 연령대별로 주택수요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박천규 외(2009)는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신미림·남진(2011)과 다르게 생애주기별 주택선호 및 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서울시 1인가구의 소득계층별 거주지 선택요인을 분석한 신은진·안건혁(2010)에 의하면 모든 계층에게 직장과의 거리, 범죄율은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하였으며 중·고소득층은 상업시설 분포, 저·중소득층은 녹지시설분포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저·중소득층은 다른 계층과 달리 대중교통 접근성이 거주지 선택에 중요하였으며 복지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주거지의 긍정적 요인이었으나 고소득층에게는 주거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장과의 거리, 접근성, 안전환경, 복지 및 녹지시설 등 소득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유미·남진(2008)은 1996년~2006년까지의 서울시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선택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소득은 개인의 인적특성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특히, 인적특성 중 교육연수와 성별,

직종이 유의하였으며 전문직이거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높았다. 이는 주거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인적특성(교육, 연령, 직업 등)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1인가구의 주거수요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지웅(2014)은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전국 20-34세 청년의 14.7%가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거나 지하, 옥탑,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서울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빈곤율이 36.3%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가구 주거문제의 심각성과 지역적 차이를 역설하였다. 임경지(2014) 역시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 문제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높은 주거비로 보았다. 이현정(2014)은 수도권 지역 사회진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모 의존도를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명하였으며, 배병우 외(2013)연구 역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함을 지적하였다.

주거환경은 개인의 건강,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구자해·우동주(2002)는 주거규모, 공간구성, 환기, 냉·난방 등 물리적 주거환경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였다. 박정민 외(2015)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빈곤을 정의하고 열악한 주거상태가 개인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임재현(2011)은 주거빈곤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거환경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권중돈(2012)에 의하면 쪽방, 여인숙, 무허가 건물, 어둡고 외진 골목에 위치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항상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에 놓여있음을 우려하였다. 서울시 만20세~65세 비혼여성의 주거를 연구한 김진영(2013)에 의하면 개인 사생활과 안전, 보안서비스에 높은 주거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택안전에 관한 연구는 경찰활동의 강화(장석현, 2005; 김보환, 2003; 양문승, 2002)나 환경설계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김세용, 2008; 김영제, 2007; 이은혜 외, 2008)에 관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소득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주

거환경은 다시 건강, 안전과 관련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주거비 부담 등 경제 상태를 조사하고 안전을 포함한 주거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1.3 여성 1인가구와 안전에 관한 연구

여성에 대한 폭력 감소를 위한 여성안전 강화방안 마련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온 연구주제이다(장미혜, 2015). 실제 강력범죄피해자 중 87.0%는 여성이었으며 이 중 91.7%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였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중 55.6%는 청년여성으로 조사되었다(범죄통계, 2014). 서울시 25세~49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황성은 외(2013)연구 역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77.0%가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안전에 있어서 이주여성(김창연·강인화, 2009),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이성은·이화조, 2011), 비혼여성 1인가구(이성은, 2012), 여성노인(장미혜, 2012), 여성 청소년(윤덕경 외, 2011)에 대한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30대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집중 조명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특히, 주거지 안전을 포함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전반적인 안전인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성안전을 다룬 기존의 많은 연구는 안전한 환경 즉,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 대해 장미혜(2015)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같이 특정 시간대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가능하고 둘째,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셋째, 성희롱이나 폭력피해의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 대해 도시계획이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용과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 김상훈·한혜련(2014)은 서울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CPTED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내용 중 주택 내·외부의 시야 확보 및 접근통제, 골목길 시야 확보 및 보행공간 개선이 가장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CCTV 확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명확한 구분 역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성·장윤식(2014)은 부산과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211명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가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CTV 설치인식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성범죄 두려움 모두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CPTED에 근거한 CCTV 설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박영주·윤우석(2014)은 대구시 여성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인식정도가 실제 범죄피해 위험이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특정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한편, CPTED에 기반한 안전한 환경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조은경(2003)은 18세 이상의 서울시 남녀 453명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 변인들을 설문조사하여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남성은 파출소까지의 거리 및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 등 물리적 요인과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반면, 여성은 피해가능성과 나이 등 심리적 요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2013)은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예방의 취약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으로 연결됨을 지적하고 저비용 방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홈 방법서비스와 수원시와 광명시의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서비스를 사례 분석하여 민간-공공 상호협력 방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안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확대,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주거지 안전시설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안전지원 방안을 접근하나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제적 상태와 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허준(2013)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나 허준의 연구는 여성 1인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통계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안전정책의 체감도를 조사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달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불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 안전을 포함,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규모와 특성

2.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 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 1천만 명이 넘던 서울의 상주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963만 명에 이르렀다. 서울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증가하여 1990년 약 281만 가구에서 2010년 350만 가구로 25%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인구감소와 가구 수 증가 현상은 서울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요 요인으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꼽을 수 있다(이재수·양재섭, 2013).

1990년 서울시 1인가구는 25만 7천 가구였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 50만 가구, 2015년 112만 가구에 달하였다.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 9.1%에서 2015년 28.5%로, 19.4%p 증가하였으며 통계청은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추세가 203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울시 여성 1인가구는 1990년 13만 2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51.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43만 9천 가구가 증가하여 2015년 여성 1인가구는 1990년 여성 1인가구 대비 4.3배 증가한 57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Ⅱ 표 Ⅱ-3 Ⅱ 서울시 일반가구 및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추이(1990-2015)

(단위: 명, %)

구 분	일반가구 (A)	1인가구 (B)	1인가구 비중 (C=A/B)	여성1인가구 (D)	여성 1인가구 비중 (D/B)
1990	2,814,845	257,382	9.1	132,406	51.4
2000	3,085,936	502,245	16.3	264,905	52.7
2010	3,504,297	854,606	24.4	450,030	52.7
2015	3,914,820	1,115,744	28.5	571,685	51.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이처럼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5년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중 무려 52.1%가 청년여성이었으나, 2015년에는 이보다 8.4%p 감소한 43.7%였다. 그러나 25만 가구를 보이며, 여전히 여성 1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Ⅱ 표 Ⅱ-4 Ⅱ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추이(1995-2015)

(단위: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청년여성	100,314	125,022	167,758	204,384	249,555
중장년여성	43,294	65,029	84,630	105,988	140,489
고령여성	45,654	71,054	97,460	134,701	173,52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장민선(2015)은 청년여성 1인가구 주요 증가원인으로 교육과 취업을 꼽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대학가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구와 가장 많은 사업체가 몰려있는 강남구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관악구는 관악구 일반가구의 35.6%에 해당하는 2만 8천 가구가 청년여성 1인가구로 나타나 가장 청년여성 1인가구 집중된 자치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여성 1인가구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만 9천 가구), 마포구(1만 5천 가구), 광진구(1만 5천 가구) 등의 순이었다. 일반가구 대비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 역시 관악구가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29.8%), 마포구(28.4%), 강남구(27.1%)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5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2015)

(단위: 명, %)

구 분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가구	1인가구 비중	구 분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가구	1인가구 비중
서울특별시	249,555	1,199,168	20.8%	구로구	7,951	44,809	17.7%
관악구	27,981	78,576	35.6%	은평구	7,682	57,356	13.4%
강남구	19,328	71,448	27.1%	성동구	7,138	35,124	20.3%
마포구	15,489	54,512	28.4%	용산구	6,995	31,877	21.9%
광진구	14,904	50,022	29.8%	강동구	6,953	48,114	14.5%
동작구	14,264	51,659	27.6%	노원구	6,830	62,529	10.9%
성북구	12,900	55,826	23.1%	중랑구	6,690	49,069	13.6%
송파구	12,385	66,522	18.6%	강북구	5,297	42,561	12.4%
강서구	11,939	69,138	17.3%	종로	4,968	21,272	23.4%
동대문구	11,864	47,515	25.0%	양천구	4,723	44,606	10.6%
서대문구	10,739	42,043	25.5%	금천구	4,508	28,396	15.9%
영등포구	10,643	45,576	23.4%	도봉구	3,811	37,239	10.2%
서초구	9,973	45,748	21.8%	중구	3,600	17,631	20.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증가 더불어 1인가구 밀집지역 역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비교한 결과, 일반가구 대비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이 25%~30% 미만인 지역이 2010년 1개 자치구(관악구)에서 6개 자치구(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로 증가하였다. 반면, 15%~20%미만인 지역은 8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송파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북구, 금천구)에서 4개 자치구(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로 감소하였다. 즉,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자치구의 공통된 특징은 사업체 밀집지역 또는 연립/다세대, 고시촌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서울통계 사업체현황(2014)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사업체의 약 8.6%(70,262개)가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과의 거리가 취업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보인 이상호(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관악구에 위치한 사업체는 서울시 소재 사업체 중 3.2%(26,396개)에 불과하였으나 소위 고시촌으로 알려진 관악구에 가장 많은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변화(2010-2015)

구 분	2010	2015
30% 이상	강남구	관악구
25%이상-30% 미만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20%이상-25% 미만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성북구, 용산구, 서초구, 중구, 성동구
15%이상-20% 미만	중구, 성북구, 송파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10%이상-15% 미만	강동구, 중랑구, 구로구, 은평구,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강동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DB웹자료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여성가구주 기준)의 거주기간을 비교한 결과,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매우 짧은 거주기간을 보였다. 일반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19.3%인 반면에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25.7%p 높은 45.0%였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22.7%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거주기간으로 드러나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매우 낮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청년여성 1인가구의 대부분은 일반가구와 다르게 많은 수가 월세의 점유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67.7%는 2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보이며 주거불안정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7 서울시 일반가구 및 여성 1인가구 거주기간 비교(2010)

(단위: 명, %)

구 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총 합
일반가구	262,910	199,705	168,737	181,369	548,307	1,361,028
%	19.3	14.7	12.4	13.3	40.3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91,049	45,866	25,945	19,116	20,361	202,337
%	45.0	22.7	12.8	9.5	10.1	100.0

주: 현재 이 집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일반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수도 거주기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거주기간을 보면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짧고, 중장년여성, 노인여성 1인가구 순으로 거주기간이 늘어남을 보였다. 이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독립한 기간이 짧음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주거안정성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표 II-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거주기간 비교(2010)

(단위: 명, %)

구 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총 합
청년여성 1인가구	91,049	45,866	25,945	19,116	20,361	202,337
%	45.0	22.7	12.8	9.5	10.1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27,373	15,620	12,061	12,888	41,001	108,943
%	25.1	14.3	11.1	11.8	37.6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14,516	12,201	13,231	13,580	93,665	147,193
%	9.9	8.3	9.0	9.2	63.6	100.0

주: 현재 이 집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절반은 5년 전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2%의 비중을 보인 일반가구에 비해 28.7%p 낮았다.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비교를 살펴봐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4050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20.9%, 6080 노인여성 1인가구는 31.5%를 보였다.

Ⅱ 표 II-9 Ⅱ 서울시 일반가구 및 여성 1인가구, 세대별 5년 전 거주지 비교(2010)

(단위: 명, %)

구 분	현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다른 시군구	기 타	총 합
청년여성 1인가구	20,361	71,663	104,945	5,368	202,337
%	10.1	35.4	51.9	2.7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41,001	43,456	22,765	1,721	108,943
%	37.6	39.9	20.9	1.6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93,665	36,322	16,726	480	147,193
%	37.6	39.9	20.9	1.6	100.0
일반가구	498,149	521,589	315,668	25,622	1,361,028
%	36.6	38.3	23.2	1.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이처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째는 서울시에 집중된 교육기관이다. 전국 4년제 대학교의 20.0%에 달하는 38개의 대학교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생의 23.7%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원 재학생의 46.5%가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통계, 2015). 둘째는 사업체의 서울시 집중화이다. 전국 사업체의 21.3%, 1,000명 이상 사업체의 41.5%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통계청, 2014). 이처럼 서울시에 양질의 교육기관과 대규모 사업체의 집중화 현상이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인적자본 및 경제적 특성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 중 교육정도가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며(강창희 외, 2014), 최근 과거와 달리 고학력의 미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군집분석을 통해 서울시 1인가구를 유형화한 변미리(2014)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세대 1인가구는 미혼, 고학력-고소득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72.6%는 대학교 졸업자였으며, 대학원 졸업자 또한 10.5%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여성 1인가구 중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46.3%p 낮은 26.3%에 그쳤다. 세대별 교육수준의 차이에 있어 고령여성 1인가구는 더욱 격차가 벌어졌는데, 고령여성 1인가구의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청년여성 1인가구보다 65.8%p 낮은 6.8%에 불과하였다. 정진호 외(2004)의 연구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노동력의 질을 좌우하며 노동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이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0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2010)

(단위: 명, %)

구 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총 계
청년여성 1인가구	106	208	1,352	32,547	146,945	21,179	202,337
%	0.1	0.1	0.7	16.1	72.6	10.5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1,346	8,863	16,348	45,420	28,614	8,352	108,943
%	1.2	8.1	15.0	41.7	26.3	7.7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32,689	55,294	22,824	25,393	10,022	971	147,193
%	22.2	37.6	15.5	17.3	6.8	0.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청년여성 1인가구가 청년남성 1인가구에 비해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대졸자는 71.2%를 보인 청년남성에 비해 1.4%p 높았으며, 대학원졸업자는 9.8%를 보인 청년남성보다 0.7%p 높았다.

【 표 II-11 】 서울시 성별 1인가구 교육수준(2010)

(단위: 명, %)

구 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총 계
청년남성 1인가구	153	313	1,695	37,582	149,478	20,626	209,847
%	0.1	0.2	0.8	17.9	71.2	9.8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06	208	1,352	32,547	146,945	21,179	202,337
%	0.1	0.1	0.7	16.1	72.6	10.5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경제활동 역
 시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73.7%가
 경제활동인구였으며, 중장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7.6%보다 6.1%p(7만 5천명) 높았
 다⁵⁾.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에 비해서도 더 높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더 높은 경제
 활동참가율(1.3%p)을 보였다.

【 표 II-12 】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2010)

(단위: 명, %)

구 분	경제활동(일+휴직)	미취업	총 계
청년남성 1인가구	151,903	57,944	209,847
%	72.4	27.6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49,092	53,245	202,337
%	73.7	26.3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73,640	35,303	108,943
%	67.6	32.4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24,761	122,432	147,193
%	16.8	83.2	100.0

주: 2%표본자료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전수조사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 5)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에서 실업자(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청년여성 1인가구의 실업률을 산출할 수 없었다. 지역별고용조
 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한계
 를 가진다. 다만, 2015년 연령별 실업률은 20-29세 10.5%, 30-39세 3.1%, 40-49세 2.3%, 50-59세
 2.4%로 청년세대의 실업률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인다.

【 표 II-13 】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종사상지위(2010)

(단위: 명, %)

구 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¹⁾	무급가족종사자	총 계
청년남성 1인가구	130,298	20,665	940	151,903
%	85.8	13.6	0.6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30,488	17,907	697	149,092
%	87.5	12.0	0.5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50,690	21,534	1,416	73,640
%	68.8	29.2	1.9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16,333	7,751	677	24,761
%	66.0	31.3	2.7	100.0

주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산하여 산출함

주2: 2%표본자료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전수조사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경제활동을 하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였는데, 10명의 취업자 중 약 9명은 임금근로자로 조사되었다. 비록, 임금근로자의 범위 안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을 포함하고 있으나 김복순(2014)의 연구결과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빈곤 위험성에 덜 노출되며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1.5%p 청년여성 1인가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한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40.9%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나타났다. 이는 16.9%의 비중을 보인 중장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24.0%p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중 역시 28.1%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와 직업별 종사비중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서비스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낮았다.

Ⅱ 표 II-14 Ⅱ 서울시 세대별/성별 1인가구 직업별 종사비중(2010)

(단위: 명, %)

산업분류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장년 여성	고령 여성	총 합
관리자	5,393	2,644	1,315	273	4,232
%	3.6	1.8	1.8	1.1	1.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6,593	60,917	12,474	1,526	74,917
%	37.3	40.9	16.9	6.2	30.3
사무종사자	31,117	41,813	10,726	605	53,144
%	20.5	28.1	14.6	2.4	21.5
서비스종사자	13,699	21,014	16,927	4,676	42,617
%	9.0	14.1	23.0	18.9	17.2
판매종사자	19,173	17,609	13,787	3,307	34,703
%	12.6	11.8	18.7	13.4	14.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9	0	50	115	165
%	0.1	0.0	0.1	0.5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843	2,095	4,583	1,371	8,049
%	7.1	1.4	6.2	5.5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52	817	1,264	555	2,636
%	4.4	0.6	1.7	2.2	1.1
단순노무 종사자	8,214	2,183	12,514	12,333	27,030
%	5.4	1.5	17.0	49.8	10.9
총합	151,903	149,092	73,640	24,761	247,493
%	1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73.7%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2.2%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대학교 졸업 + 대학원졸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약 15만의 청년여성 1인 가구 중 87.5%는 임금근로자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83.8%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표 II-1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지위(2010)

(단위: 명, %)

구 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총 합
경제활동(일+휴직)	106	52	978	24,458	107,666	15,832	149,092
%	0.1	0.0	0.7	16.4	72.2	10.6	100.0
미취업	0	156	374	8,089	39,279	5,347	53,245
%	0.0	0.3	0.7	15.2	73.8	10.0	100.0
임금근로자	106	52	813	20,163	95,807	13,547	130,488
%	0.1	0.0	0.6	15.5	73.4	10.4	100.0
자영업자	0	0	165	4,133	11,434	2,175	17,907
%	0.0	0.0	0.7	23.2	64.0	12.2	100.0
무급가족 종사자	0	0	0	162	425	110	697
%	0.0	0.0	0.0	23.2	61.0	15.8	100.0

주 : 2%표본자료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전수조사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물론, 임금근로자의 범위 안에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고용의 질을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교육수준과 종사상지위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상태 변수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는 1을, 취업(일+휴직)에는 2를 부여하였다. 또한 종사상지위 변수 역시 무급가족종사자는 1, 자영업자 2, 임금근로자 3으로 재가공하였다. 이처럼 가공된 변수를 활용하여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지위 모두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1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상관관계

구 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0.398***	0.034*

***p<0.01 **p<0.05 *p< 0.1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로 생활하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3.2%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기러기가족 또는 별거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94.0%가 비혼으로 나타났는데 이혼/사별 등을 원인으로 1인가구에 유입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발적 유입의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III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실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부분은 직장이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1인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1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인상태(2010)

(단위: 명, %)

구 분	비 혼	유배우	사 별	이 혼	총 합
청년남성 1인가구	197,031	9,245	0	3,571	209,847
%	93.9	4.4	0.0	1.7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90,104	6,376	273	5,584	202,337
%	94.0	3.2	0.1	2.8	100.0

주: 2%표본자료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전수조사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2.2.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현황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54.8%), 주택 이외의 거처(17.4%), 아파트(14.6%), 연립/다세대(10.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2.3%)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아파트 거주비중이 낮고,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호텔이나 여관 등, 기숙사, 기타)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청년세대에서 중장년세대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남성 1인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거주 비중이 낮고 아파트,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청년남성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1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거주유형(2010)

(단위: 명, %)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총 합
청년남성 1인가구	122,855	26,894	24,059	5,028	31,011	209,847
%	58.6	12.8	11.5	2.4	14.8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12,101	28,121	21,249	4,937	35,929	202,337
%	55.4	13.9	10.5	2.4	17.8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53,191	35,034	14,675	1,679	4,364	108,943
%	48.8	32.2	13.5	1.5	4.0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72,246	46,541	22,444	2,506	3,456	147,193
%	49.1	31.6	15.3	1.7	2.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이어서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점유유형은 월세(56.3%), 전세(33.1%), 자가(7.0%), 무상(3.5%)순으로, 절반이상이 매달 주거비 부담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안정적 점유형태인 자가의 비중은 7.0%에 불과하여 중장년 여성 1인가구(25.3%), 노인여성 1인가구(42.4%)에 비해 월등하게 낮았다. 이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을 매우 잘 드러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점유형태에 있어 청년남성 1인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19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점유형태(2010)

(단위: 명, %)

구 분	자 가	전 세 (월세 없음)	월 세	무 상	총 합
청년남성 1인가구	15,681	73,608	111,760	8,798	209,847
%	7.5	35.1	53.3	4.2	100.0
청년여성 1인가구	13,029	66,217	116,164	6,927	202,337
%	6.4	32.7	57.4	3.4	100.0
중장년여성 1인가구	27,074	36,721	40,248	4,900	108,943
%	24.9	33.7	36.9	4.5	100.0
고령여성 1인가구	61,829	50,591	29,300	5,473	147,193
%	42.0	34.4	19.9	3.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표본 원자료, 2010

2.2.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사회참여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여성 1인가구 6명 중 2명(33.9%)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종류로는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36.4%), 친목 및 사교단체(34.7%)가 월등히 많았으며 시민사회단체(10.2%), 종교단체(9.3%), 학술단체(4.6%), 이익단체(4.7%)순이었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단체활동은 친목 및 사교, 취미, 스포츠, 레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타 세대에 비해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한 단체의 종류도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활동 폭이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0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참여 현황(2015)

(단위: 명, %)

구 분	단체참여 여부			참여한 단체(1순위)						
	있다	없다	총 합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총 합
청년여성	33.9	66.1	100.0	34.7	9.3	36.4	10.2	4.6	4.7	100.0
중장년여성	27.6	72.4	100.0	67.4	18.6	9.1	-	4.9	-	100.0
노인여성	34.6	65.4	100.0	53.7	38.6	2.7	2.4	2.6	-	100.0

자료: 통계청(MDIS), 사회조사, 2015, 원자료

3. 청년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현황

서울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일자리, 커뮤니티, 주거, 안전 등의 영역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21 서울시 1인가구 주요 지원정책 현황

영역	사업명	주요내용 및 사업목적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 청년중심 경력형성형 사업 확대 - 신규사업 청년사업으로 제한하여 발굴 - 청년사업 20%이상 인원 확대 유도 - 기존 일반사업 중 청년 참여비율이 낮은 사업은 청년할당제로 전환 ○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 근로여건 - 1회 11개월 → 2회 23개월 이내 ○ 사업 참여기관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 - 시 각 부서 및 사업소로 국한되었던 뉴딜사업 신청기관 →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커뮤니티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계획한 다양한 마을사업 선정·지원 ○ 1인가구 이웃만들기(지정공모) 단위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내 1인가구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우리마을 공간 지원사업 -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카페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 1인구 등 지역주민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부엌 조성
주거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지원주택 공급	○ 자치구와 연계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주택 제공 -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쪽방주민 임대주택 등 ○ 자치구 및 비영리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서비스 제공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 공유형 임대주택(고시원형) -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1인가구에게 공급 - 공공고시원, 공공기숙사 형태로 운영 ○ 긴급주거형 공공임대(노후 여관·여인숙 활용) - 2~3인가구 대상 - 기존 노후 여관 및 여인숙을 리모델링

영역	사업명	주요내용 및 사업목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 사회주택 공급 - 민간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 대부함으로써 임대료 인하
	대학생 희망 하우스 공급	○ 다가구/다세대 매입물량의 일정량 공급 ○ 저렴한 임대료(시세 30% 이하) 책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도심 내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 후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안전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	○ 여성안심택배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여성안심택배 설치 ○ 서울시 홈 방문서비스 - 민간보안업체와 연계를 통해 안전확보 ○ 안심귀가스카우트 -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 1인가구 동행 -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

2.3.1 일자리 지원 정책

청년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사업의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은 청년사업으로 제한하여 발굴하고 기존 청년사업은 20% 이상 청년인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일반사업 중 청년 참여비율이 높은 사업은 청년사업으로 전환 유도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 일반사업(여성사업포함) 중 청년 참여비율이 낮은 사업은 청년할당제로 전환하여 일정 인원은 반드시 청년이 참여토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1인가구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한계를 지닌다.

2.3.2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서울시의 주거비는 6개 광역시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며(KB부동산, 2016),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임경지, 2015) 서울시에서의 주거마련은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비주택(고시원, 숙박시설,

쪽방) 거주자는 144,629가구이며, 비주택 평균 주거면적은 3.68m² 수준으로 대부분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 또한 2006년 잠실동 고시원 화재 등 안전상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서울시, 2015).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서울시 1인가구 종합대책 10개의 사업 중 6개의 사업은 주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택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준주택(고시원, 여인숙·여관 등 숙박시설, 쪽방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인가구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사업은 공유형 공공임대주택(고시원형)과 긴급주거형 공공임대로 구분되며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은 1인가구, 긴급주거형 공공임대는 2~3인가구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공고시원 또는 공공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며 SH공사가 직영으로 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한다. 입주를 위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화장실, 거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쉐어하우스 방식은 공용공간 관리, 소음, 사생활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승욱 외, 2014).

서울시는 청년주거문제를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해결하고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토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주변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장기 대부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거주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잦은 주거이동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해소한다. 입주기준에 있어서 1인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제한하여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 외에 방치된 주거지를 활용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도 시행중에 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은 방 3개 이상의 단독, 다세대/다가구를 집주인 동의하에 임대하고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에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⁶⁾한다. 이후 자치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자는 서울시가 아닌 사회적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게 된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1~2인가구의 독거

노인, 대학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주변시세 80% 이하 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최소 6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호받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 16일자 헤럴드경제는 부동산 실무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취약부분을 언급했다. 특히,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주거지원 사업과 달리 시, 자치구, 사업시행자, 집주인, 입주자 등이 얹혀 있어서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음과 서울시 빈집 물량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 청년, 대학생 등 넓은 대상범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75가구, 2016년 200가구로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보인다.

그림 II-1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절차



이밖에 서울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희망하우징 사업이 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매입 및 시·구유지 활용 등 주거를 지원 방식은 있어 앞서 다뤘던 사업과 동일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다 저렴한 주변시세 30%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 3명이 한집에

6) 최대 2천만원 한도 무상지원임

살면서 거실과 화장실,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에서의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견된다. 2013년 2월 20일자 머니투데이는 희망하우징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희망하우징의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청소와 공동취사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 소음, 대인관계 문제 등 희망하우징을 싸지만 불편한 주거지로 칭하고 있었다. 이는 김승욱 외(2014)에서 언급한 셰어하우스의 문제와 동일했다.

서울시의 청년세대 주거지원에 있어서 개인적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식을 띄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거형태는 함께 생활을 공유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박준영, 2015),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이봉만·김원택, 2014)효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공용공간 관리와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승욱, 2014; 정다운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 공동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존 공동체주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3 여성 안전정책

서울시는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를 고려하여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은 수립하고 주거지원, 안심환경 조성, 건강관리 지원, 특화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육성 및 생활불편 해소까지 총 5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의 안전정책은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 집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혼자 생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성안심택배는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는 서비스로 2013년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시민이용 증가 및 설치 요청 민원을 반영하여 2013년 50개소, 2014년 100개소, 2015년 12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40개소가 추가되어 총 160개소가 운영되며 총 누적 이용자수는 5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서울시청, 2016). 하지만 2014년 10월 안심택배이용자 1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안심택배를 이용하는 이유로 ‘택배를 받거나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69%)가 가장 높았으며 ‘택배기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13%)에 그쳤다. 추후 다시 언급하겠으나, 본 연구의 FGI를 통해 안심택배이용경험을 인터뷰한 결과, 안전보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하고 있었으며 거주지 근처에 마련되지 않았거나, 무거운 짐의 경우 이동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의 스카우트가 거주지까지 바래다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스카우트는 여성의 귀가를 도와줌과 더불어 취약지역순찰 및 계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버스나 지하철역 도착 20분 전 120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상황실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밤 10시~새벽1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2016년 6월 18일 MBC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요일별로 이용시간이 상이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⁷⁾와 특정지역에는 스카우트가 배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FGI에 의하면 스카우트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인한 불안감, 지하철역에 내려서 버스로 다시 이동해야 할 시 이용의 문제점 등도 존재하였다.

서울시는 밤길동행서비스와 더불어 위급상황 시 긴급대피 할 수 있도록 673곳의 24시간 편의점을 통해 여성안심지킴이 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24시간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과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상시 카운터에 있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다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도 희망 시 지원한다. 이러한 안심지킴이집의 인지도는 다른 안전사업에 비해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안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3.0%수준으로 낮았으며, 성폭력발생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미·장진희, 2015).

7) 실제 이용하기 위해 전화로 신청하였으나 월요일은 스카우트가 12시까지만 하여 이용할 수 없음이 보도되었다.

서울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정책 이용자수를 이용하여 이용률을 산출한 조영미·장진희(2015)에 의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 1.9%, 여성안전마을 0.4%였으며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여성안심택배마저 2.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자 FGI를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3.4 해외사례

해외 주요 선진국의 1인가구 대상 정책은 대개 주거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 또는 청년세대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주거지원 정책으로 언급되는 영국의 HMO(House in Multiple Occupation)와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영국 HMO

우선 영국의 HMO는 일반적으로 두 가구 이상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HMO에는 전형적으로 임대용 방 한 칸, 학생기숙사, 간호를 받는 숙소, 호스텔, 그리고 임대를 위해서 개조된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각 지방정부는 HMO를 운영하는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허가 과정에 적용한다. 특히, 영국의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기준을 따라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5년 안에 주거위생·안전평가시스템(Housing Health & Society Rating System: HHSRS)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HMO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취사시설, 위생시설, 조명과 환기, 화재안전으로 구분된다. 주거면적기준은 주거지 형태에 따라 침실, 침실/거실, 침실/거실/부엌으로 나뉘며 1살 미만의 아이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1~10살은 0.5명으로 계산한다.

【 표 II -22 】 북아일랜드 HMO 주거면적 기준

침실	1인	6.5㎡
	2인	11㎡
	3인	15㎡
침실/거실	1인	10㎡
	2인	15㎡
	3인	19.5㎡
침실/거실/부엌	1인	13㎡
	2인	20.5㎡

취사시설과 관련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 주방은 가능하다면 거주하는 방과 같은 층에 위치하도록 한다. 또한 부엌 역시 면적기준과 조리대의 크기, 전기시설(오븐, 전기쿠커, 핫플레이트 등)의 수를 두고 있다.

위생시설에 대해 욕실 또는 샤워실, 공동 화장실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두 개의 화장실이 요구되는 경우(6명 이상), 화장실 하나는 욕조, 샤워실, 세면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위생시설(욕실,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은 일반적으로 방과 2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수평거리가 30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 표 II -23 】 북아일랜드 HMO 위생시설 기준

구 분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기준	공동화장실 설치기준
1-5명	1개	1개
6-10명	2개	2개
11-15명	3개	3개

조명과 환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부엌은 투명 유리창, 화장실과 욕실은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되어야 하며 채광창의 총 면적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엌, 화장실, 욕실은 창문을 통해 바로 외기와 접하여 환기가 되어야 하며 개방할 수 있는 창면적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전기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인공채광이 되어야

하며, 환기장치가 한 시간마다 최소 3번 가동되어야 한다. 문과 지붕창은 환기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재안전 기준은 화재발생 시 모든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단층의 경우, 모든 방의 문은 복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복도는 현관을 제외한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3층 건물의 경우, 각 층에서 개방 가능한 창문(혹은 문)을 통해 집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계단은 화재에 30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4층 건물의 경우, 2~3층 건물의 안전시설 기준과 추가로 3층 이상에 다른 비상구로 연결되어 있는 대피경로가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피로, 비상구 표시등과 유도등이 필요하다.

2) 미국 SRO

영국뿐만 아니라 1980년대 미국에서 홈리스가 증가하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이 SRO호텔을 매입·개보수를 통해 SRO주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과 홈리스 등 취약집단을 위한 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SRO가 단신자를 위한 중요한 주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1987년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반영되었다.

SRO 프로그램 대상 건물은 기존 SRO호텔, 개량을 통해 SRO로 전환된 주택, 낡은 호텔, 학교, 기숙사,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을 포함한다. 또한 SRO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보수 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하여야 지원이 지속된다.

주택품질기준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보안, 온열환경, 조명 및 전기, 주고 및 자재, 실내공기품질, 수도, 납 성분 페인트, 접근성, 위치 및 근린지역, 위생상태, 화재경보기의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Ⅱ 표 II-24 Ⅱ 미국 SRO 주택품질 판정기준

구 분	판정 기준(Acceptability Criteria)
위생시설	- 화장실은 독립된 공간에 위치 - 수세식 변기를 갖추고 있어야 함 - 고정된 세면대, 샤워기 또는 욕조와 냉/온수 공급이 가능해야 함 - 인증된 정화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취사 및 쓰레기처리	- 오븐, 스토브 또는 레인지를 갖추어야 함 - 가구규모에 맞는 적합한 규모의 냉장고를 구비해야 함 - 모든 필수적인 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기기들은 주택 소유자 또는 기관이 공급함 - 주방싱크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해야 함 - 싱크대는 공인된 공공 또는 민간 시스템으로 배수해야 함 - 음식을 저장, 준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음식을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함
공간과 보안	- 전기판넬, 라디에이터, 강제 통풍기와 같은 안전한 난방장치 설치 - 각 방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절한 난방이 제공되어야 함 - 난방장치 또는 증발 냉각기가 있다면 각 방에 적절한 난방 제공 - 가스, 석유 또는 등유를 사용하고 통풍구가 없는 난방기를 설치하면 안되며 전기난로는 가능함
조명 및 전기	- 주방과 각 침실에는 적어도 하나의 창문이 있어야 함 - 주방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콘센트를 최소 한 개 보유해야 함 - 거실과 각 침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콘센트를 최소 두 개 보유해야 함
구조 및 자재	- 천장, 벽, 바닥은 심하게 왜곡되었거나 기울어짐 등 손상이 없어야 함 - 토대와 외부 벽 구조, 표면은 큰 손상이 없어야 하며 침입 또는 해충의 침입으로 인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함 - 내부와 외부의 계단, 복도, 현관, 통로의 상태와 시설은 발을 헛딛거나 추락할 위험이 없어야 함
실내공기품질	- 일산화탄소, 하수가스, 연료가스, 먼지 및 기타 유해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한 공기 오염이 있으면 안됨 - 적절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져야 함 - 욕실에는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다른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함 - 침실에는 적어도 한 개의 창문이 있어야 함
수도	- 인증된 공공 또는 민간 수도를 공급받아야 함
납 성분 페인트	- 1978년 이전에 완공된 주택에 대해 표면을 조사하고, 부식 시 표면을 보수해야 함 - 납 중독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는 위험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접근성	- 거주공간은 혼자서 출입이 가능해야 함 -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 계단 또는 창문, 사다리과 같은 대체 출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구 분	판정 기준(Acceptability Criteria)
위치 및 근린지역	- 홍수, 열악한 배수시설, 예비 정화조 또는 하수처리 문제, 산사태, 비정상적인 공기, 지나친 소음, 진동, 해충 또는 설치류의 침입, 화재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됨
위생상태	- 주택과 시설에는 해충과 설치류가 없어야 함
화재경보기	- 지방정부 또는 주의 소방국의 요건에 맞는 곳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함

II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현황 및 특성

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2. 점유형태 및 안전 결정요인 실증분석
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 조사결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현황 및 특성

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3.1.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를 위하여 2016년 5월에서 6월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중인 청년 여성 1인가구로 한정하였으며, 총 설문조사 대상자는 700명이었다. 설문지역을 크게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연령별, 고용형태 별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토대로 온라인조사와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결과 최종적으로 총 70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최종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에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설문조사 주요 내용

주제	조사내용
1인 가구 삶	☐ 1인 가구 거주기간, 거주 이유, 유입경로 ☐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곤란한 점, 향후 전망 ☐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
경제활동	☐ 업종, 종사장 지위, 근로형태, 근로시간, 이직경험 ☐ 총소득 및 총지출 세부현황, 주관적 생활수준, 향후 생활수준 ☐ 저축규모 및 저축이유, 부채규모
주거	☐ 거주충수, 거주지 면적, 주거유형, 점유형태, 주거지 선택이유

주제	조사내용
	☐ 점유유형별 월평균 주거비, 주거비 마련방법, 주거비 부담정도 ☐ 현 주거지 만족도, 주택구매 시 어려운 점 ☐ 내 집 마련의 필요성 및 이유, 공동생활주거지에 관한 의견
안전	☐ 현 주거지 안전정도, 불안의 원인 ☐ 안전교육 경험여부, 일상생활 안전 및 원인, 범죄발생가능 장소 ☐ 가장 노출되어 있는 범죄유형, 1인가구 범죄노출정도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육체적, 정신적), 우울감 경험빈도 ☐ 일상적 운동여부 및 이유
여가생활	☐ 여가활동 종류 및 횟수, 여가를 보내는 사람 ☐ 주관적 여가시간의 충분한 정도, 여가시간 향유시 어려운 점
사회관계망	☐ 친한 친구 숫자, 주요 고민상대,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 빈도 ☐ 설날 연휴기간 함께 보낸 사람
정책요구	☐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주거, 안전, 일자리, 건강)
일반적 사항	☐ 학력,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30-34세(33.4%), 25-29세(29.9%), 35-39세(23.2%), 20-24세(13.5%)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자(59.8%)가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별로 비혼(94.6%)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혼(3.3%), 기혼(2.0%), 사별(0.1%)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별로는 동북권(29.7%)과 서남권(30.2%)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주거형태 비중은 연립/다세대(31.9%), 오피스텔(29.0%), 고시원/원룸(21.5%), 아파트(13.0%), 단독주택(4.5%)순이었다.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비중은 절반을 넘는 55.8%였으며 비정규직은 39.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5.1%로 조사되었다.

표 Ⅲ-2 청년여성 1인가구 조사대상 표집현황

구 분		명	%
연령대	20-24세	95	13.5
	25-29세	211	29.9
	30-34세	236	33.4
	35-39세	164	23.2
교육수준	중졸이하	1	0.1
	고졸	96	13.6
	전문대졸	121	17.1
	4년제 대졸	422	59.8

구 분		명	%
	석사졸	62	8.8
	박사졸	4	0.6
혼인상태	비혼	668	94.6
	기혼	14	2.0
	이혼	23	3.3
	사별	1	0.1
거주지	도심권	70	9.9
	동북권	210	29.7
	서북권	137	19.4
	서남권	213	30.2
	동남권	76	10.8
주거형태	단독주택	32	4.5
	연립/다세대	225	31.9
	아파트	92	13.0
	오피스텔	205	29.0
	고시원/원룸	152	21.5
근로형태	정규직 ¹⁾	394	55.8
	비정규직 ²⁾	276	39.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36	5.1

주1: 정규직은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주2: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로 정의함.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근로자를 포함함

3.1.2. 청년여성 1인가구 일반적 특성 및 세대별 비교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중장년여성, 고령여성 1인가구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보였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69.2%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28.8%, 고령여성의 경우 6.0%였다. 반대로 고졸이하인 경우는 청년여성 1인가구 13.7%, 중장년여성 1인가구 48.1%, 고령여성 1인가구는 91.0%에 달하였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며 더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할 수 있다(정진호 외, 2004).

【표 Ⅲ-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구 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총 합	$\chi^2(p)$
전 체		(1,810)	19.6	29.3	14.1	32.4	4.6	100.0
세대별	청년여성	(706)	0.1	13.6	17.1	59.8	9.4	100.0
	중장년여성	(504)	4.4	43.7	23.2	26.0	2.8	100.0
	고령여성	(600)	55.2	35.8	3.0	5.5	0.5	100.0

주: ***p<0.01

혼인상태에 있어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94.6%는 미혼으로 조사되어 다른 세대에 비해 미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장년여성 1인가구 역시 미혼(47.6%)이 가장 많았으나 이혼(28.8%), 사별(15.9%)의 비중 역시 높아 1인가구 유입경로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여성 1인가구는 사별이 66.0%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또한 20.5%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이혼 또는 사별 등 혼인상태 변화로 인한 1인가구 유입보다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Ⅲ-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혼인상태

(단위: %)

구 분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총 합
전 체		(1,810)	6.5	51.1	16.1	26.4
세대별	청년여성	(706)	2.0	94.6	3.3	0.1
	중장년여성	(504)	7.7	47.6	28.8	15.9
	고령여성	(600)	10.7	2.8	20.5	66.0
						100.0

실제 서울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유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유입(①)이 61.5%로 나타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8.7%), 고령여성 1인가구(0.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장년여성, 고령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앞서 혼인상태에서 보았듯이 배우자의 이혼, 별거, 사별(②)로 인한 유입이 가장 많았다.

표 Ⅲ-5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1인가구 유입경로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세 대 별	전 체	(1,810)	26.6	38.1	3.1	6.9	5.4	19.7	0.2	100.0
	청년여성	(706)	61.5	3.4	1.0	4.0	3.5	26.4	0.3	100.0
	중장년여성	(504)	8.7	42.5	8.5	7.1	6.0	26.8	0.4	100.0
	고령여성	(600)	0.5	75.3	1.0	10.2	7.0	6.0	0.0	100.0

주1: ①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배우자의 이혼, 별거, 사별 ③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④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기타

근로형태별, 5세 단위별로 나누어 서울시 청년여성의 1인가구 유입경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64.5%)는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58.3%)에 비해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유입비중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1인가구 유입경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20-20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1인가구로 유입된 비중은 15.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비중이 높아져 35-39세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36.0%에 달하였다. 이처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유입경로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개인적 편의에 의한 자발적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6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유입경로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x ² (p)
연령별	전 체	61.5	3.4	1.0	4.0	3.5	26.4	0.3	100.0	-
	20-20세	79.0	2.1	0.0	2.1	1.1	15.8	0.0	100.0	-
	25-29세	75.8	0.0	0.5	1.9	2.4	19.4	0.0	100.0	
	30-34세	53.4	1.3	2.5	8.1	4.7	30.1	0.0	100.0	
	35-39세	44.5	11.6	0.0	1.8	4.9	36.0	1.2	100.0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chi^2(p)$
근로형태	정규직	64.5	1.0	0.8	3.1	2.3	27.9	0.5	100.0	66.4*** (0.00)
	비정규직	58.3	4.4	1.5	4.7	4.4	26.8	0.0	100.0	
	자영업	52.8	22.2	0.0	8.3	11.1	5.6	0.0	100.0	

주1: ①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배우자의 이혼, 별거, 사별 ③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④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기타

주2: *** $p < 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주3: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점정량을 제시함

1인가구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63.9%는 만족함을 보이며, 중장년여성(45.8%), 고령여성(30.4%)에 비해 더 높은 1인가구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앞서 보았듯이 자발적/비자발적 유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유입된 경우, 자발적 유입보다 경제적 취약성에 더욱 노출되므로(박건 외, 2016), 이에 청년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된다.

【표 Ⅲ-7】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삶 만족도

(단위: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총 합	χ²(p)	
세 대 별	전 체	(1,810)	3.7	18.2	30.4	38.3	9.5	100.0	-
	청년여성	(706)	0.7	8.6	26.8	52.1	11.8	100.0	190.19*** (0.00)
	중장년여성	(504)	4.0	19.1	31.2	36.9	8.9	100.0	
	고령여성	(600)	6.8	28.7	34.2	23.2	7.2	100.0	

주: *** $p < 0.01$ ** $p < 0.05$ * $p < 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삶의 만족도를 월평균소득/근로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규직 여부 및 월평균소득과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74.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52.2%)에 비해 21.0%p 높았다. 게다가 월평균소득이 높은 청년여성 1인가구일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을 가진 경우, 현재 삶의 만족

한다는 응답비중은 69.4%에 달하였다. 반면, 월평균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청년여성 1인가구 중 3.7%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및 월평균소득과 1인가구의 삶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경제적 여건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삶의 만족도와 고용불안정간에 음의 관계($p<0.00$ 수준에서 유의)를 보였으며 반대로 월평균소득과 만족도는 양의 관계($p<0.00$ 수준에서 유의)였다.

【표 III-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 및 근로형태와 삶 만족도 상관관계

구 분	근로형태	월평균소득
1인가구 삶 만족도	-0.27***	0.10***

주1: *** $p<0.01$

주2: 근로형태는 정규직(1), 비정규직(2)임

【표 III-9】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삶 만족도

(단위: %)

구 분			전혀 만족하 지 않음	별로 만족하 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총 합	χ²(p)
월평균 소득	전 체	(706)	0.7	8.6	26.8	52.1	11.8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3.7	10.3	28.0	48.6	9.4	100.0	-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0.6	14.5	26.6	47.4	11.0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0.0	7.4	26.6	54.2	11.8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0.0	2.6	32.2	51.3	13.9	100.0	
	300만 원 이상	(108)	0.0	6.5	20.4	60.2	13.0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394)	0.0	5.6	20.3	57.9	16.2	100.0	77.81*** (0.00)
	비정규직	(276)	0.7	12.7	34.4	45.7	6.5	100.0	
	자영업	(36)	8.3	11.1	38.9	38.9	2.8	100.0	

주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혼자 사는 어려움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0.9%)이 가장 많았으며, ①경제적 불안감(23.4%), ②외로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청년여성 1인가구는 ①경제적 불안감(26.6%)을, 중장년여성(27.4%)과 고령여성 1인가구(39.3%)는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와 다른 세대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⑤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에 대해 19.6%가 응답하였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6.6%, 고령여성 1인가구는 3.3%에 불과하였다. 즉,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불안과 안전에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0】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혼자 사는 어려움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 합	χ²(p)
세 대 별	전 체	(1,810)	23.4	20.4	30.9	6.2	10.6	8.5	100.0	-
	청년여성	(706)	26.6	16.6	26.4	5.0	19.6	6.0	100.0	148.35*** (0.00)
	중장년여성	(504)	23.8	21.8	27.4	7.7	6.6	12.7	100.0	
	고령여성	(600)	19.3	23.8	39.3	6.3	3.3	7.8	100.0	

주1: ***p<0.01

주2: ①경제적 불안감 ②외로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기타(성적인 문제 해결, 입종에 대한 불안감, 자녀를 갖기 어려움, 주거관리의 어려움 등)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근로형태별 혼자 사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①경제적 불안감이 더 높았던 반면에 ⑤안전에 대한 불안감, ③위급상황 시 대처의 어려움은 다소 낮았다. 즉,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는 위급 시 대처, 안전에 관한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의미한다.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①경제적 불안감을 꼽은 비중은 22.8%였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이보다 9.8%p 높은 32.6%였다. 하지만 ⑤안전에 대한 불안감 응답비중은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20.8%, 비정규직은 17.4%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③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은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은 28.7%였으나 비정규직은 이보다 3.7%p 낮은 25.0%였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을수록 ④1인가구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어려움으로 꼽는 비중이 높았다. 20-20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비중은 0.0%였으며 25-29세 3.3%, 30-34세 4.7%, 35-39세 10.4%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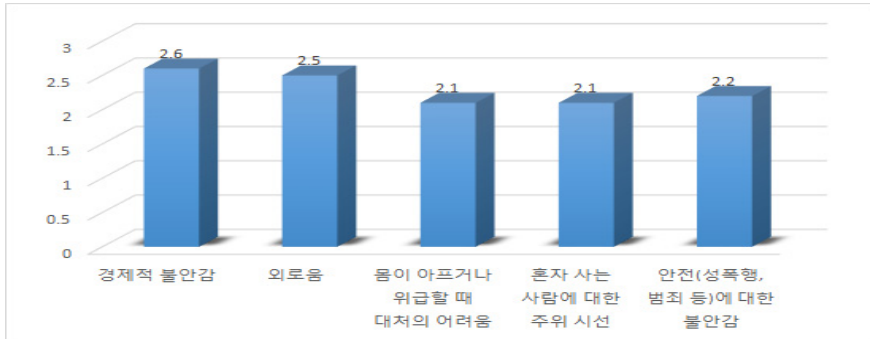
표 Ⅲ-11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자 사는 어려움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 합	x ² (p)	
5 세 단 위	전 체	(706)	26.6	16.6	26.4	5.0	19.6	6.0	100.0	-
	20-20세	(95)	36.8	19.0	16.8	0.0	19.0	8.4	100.0	49.03*** (0.00)
	25-29세	(211)	27.0	20.4	25.1	3.3	19.0	5.2	100.0	
	30-34세	(236)	17.8	14.0	31.4	4.7	25.4	6.8	100.0	
	35-39세	(164)	32.9	14.0	26.2	10.4	12.2	4.3	100.0	
근 로 형 태	정규직	(394)	22.8	16.5	28.7	3.8	20.8	7.4	100.0	23.14*** (0.01)
	비정규직	(276)	32.6	15.2	25.0	6.5	17.4	3.3	100.0	
	자영업	(36)	22.2	27.8	11.1	5.6	22.2	11.1	100.0	

주1: ***p<0.01
 주2: ①경제적 불안감 ②외로움 ③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기타(성적인 문제 해결, 임종에 대한 불안감, 자녀를 갖기 어려움, 주거관리의 어려움 등)
 주3: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혼자 사는 어려움별 우울증 경험은 경제적 불안감(2.6점), 외로움(2.5점), 안전(2.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삶의 만족도, 혼자 지내는 어려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Ⅲ-1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혼자 사는 어려움별 우울증 경험



주: 우울증 경험여부는 5점 척도로 ①느끼지 않음 ②아주 가끔 느낌(매달 1~2회) ③가끔 느낌(주 1~2회) ④자주 느낌(주 3~4회) ⑤매일 느낌임.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비중은 15.9%에 불과하였으며 매달 1~2회(51.7%), 매주 1~2회(20.1%), 매주 3~4회(10.5%), 매일(1.8%)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규직 청년여성의 18.5%가 우울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음에 반해 비정규직은 11.6%수준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전반적으로 높은 우울감 경험빈도는 근로환경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형태와 우울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⁸⁾,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비정규직일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월평균소득에 있어서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매달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을 가진 청년여성 1인가구가 전반적으로 우울감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근로형태 및 우울감 상관계수는 0.15였으며 유의수준 1%수준에서 유의함

표 Ⅲ-1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월평균소득별 우울감 경험

(단위: %)

구 분			느끼지 않음	매달 1~2회	매주 1~2회	매주 3~4회	매일 느낌	총 합	$\chi^2(p)$
근로 형태	전 체	(706)	15.9	51.7	20.1	10.5	1.8	100.0	-
	정규직	(394)	18.5	53.6	18.0	8.4	1.5	100.0	31.42*** (0.00)
	비정규직	(276)	11.6	53.3	22.1	10.9	2.2	100.0	
	자영업	(36)	19.4	19.4	27.8	30.6	2.8	100.0	
월평균 소득	최저임금이하	(107)	17.8	45.8	24.3	7.5	4.7	100.0	-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13.3	50.3	20.8	14.5	1.2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13.8	51.2	23.7	8.9	2.5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20.9	58.3	10.4	9.6	0.9	100.0	
	300만 원 이상	(108)	16.7	53.7	18.5	11.1	0.0	100.0	

주1: *** $p < 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3.1.3. 청년여성 1인가구 경제적 특성 및 세대별 비교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조사대상의 종사상지위에 있어서 상용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비경제활동(26.0%), 임시/일용직(17.9%), 자영업자(10.7%) 순이었다.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였는데, 상용직 69.7% 임시/일용직 25.2%였다. 이는 58.9%를 보인 중장년여성 1인가구 상용직 비중보다 10.8%p, 임시/일용직(12.5%)보다 12.7%p 높았다. 고령여성 1인가구의 경우,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의 비중이 5.8%였으며 임시/일용직은 13.7%를 보였다.

표 Ⅲ-1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종사장 지위

(단위: %)

구 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비경제활동	총 합	$\chi^2(p)$	
세 대 별	전체	(1,810)	45.5	17.9	10.7	26.0	100.0	-
	청년여성	(706)	69.7	25.2	5.1	0.0	100.0	120.0*** (0.00)
	중장년여성	(504)	58.9	12.5	21.0	7.5	100.0	
	고령여성	(600)	5.8	13.7	8.5	72.0	100.0	

주: *** $p < 0.01$

근로형태를 조사한 청년여성 1인가구,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임금근로자 중 58.8%는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41.2%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 정규직(72.5%)보다 13.7%p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41.2%)은 13.6%p 높았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31.9%로 가장 많고 시간제 7.8%, 비전형 1.5% 순이었다. 박재규(2004)는 이와 같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혜택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관계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어려움을 짐작 할 수 있다.

표 Ⅲ-1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근로형태

(단위: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 합	x²(p)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세 대 별	전체	(1,030)	63.6	36.4	29.2	6.0	1.2	100.0	-
	청년여성	(670)	58.8	41.2	31.9	7.8	1.5	100.0	23.17*** (0.00)
	중장년여성	(360)	72.5	27.6	24.2	2.8	0.6	100.0	

주: *** $p < 0.01$

근로형태는 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38.5만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65.8만원 낮은 172.7만원이었다. 이러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중장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보다 다소 낮았는데, 중장년여성 1인가구 정규직(252.4만원)보다 낮았으며 비정규직

(173.4만원) 역시 낮았다. 그러나 청년여성 1인가구 정규직 월평균소득의 표준편차(77.1만원)는 중장년여성(101.9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 계층별 편차가 크지 않은 중앙 밀집형 분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서 근로형태에서 보았듯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더욱 고용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여성	(670)	238.5 (77.1) ²	(394) ³	172.7 (67.4)	(276)
중장년여성	(359)	252.4 (101.9)	(261)	173.4 (65.8)	(98)

주1: 월평균소득은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소득임

주2: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3: 괄호안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함

월평균소득 분포에 있어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200만원~250만원 미만(26.4%)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135만원~200만원 미만(30.7%)으로 나타났다. 200만원~250만원을 중심으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우측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중장년여성은 양극단에 분포가 된 쌍봉분포형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소득분포가 고르게 되어있는 반면 중장년여성은 양극화된 모습이었다. 고령여성 1인가구의 절반(49.4%)은 최저임금수준이었으며 135만원~200만원 미만에 32.1%가 분포되어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월평균소득 분포

(단위: %)

구 분		최저 임금 이하	135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250만원 미만	25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총 합	χ²(p)	
세 대 별	전체	(1,340)	18.8	26.5	21.6	14.4	18.7	100.0	188.44*** (0.00)
	청년여성	(706)	15.2	24.5	28.8	16.3	15.3	100.0	
	중장년여성	(466)	13.3	27.5	16.3	15.7	27.3	100.0	
	고령여성	(168)	49.4	32.1	6.6	3.0	8.9	100.0	

주: ***p<0.0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20-24세의 48.4%는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을 보여 청년여성 1인가구 중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연령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는 0.0%였으나 25-29세 8.1%, 30-34세 22.5%였으며 35-39세는 23.2%였다. 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근속연수 등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소득 분포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최저임금이하는 6.4%였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무려 20.8%p 높은 27.2%였다. 또한 135만원~200만원 미만 역시 29.4%였다. 이처럼 고용불안정, 저소득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표 Ⅲ-1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분포

(단위: %)

구 분			최저 임금 이하	135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250만원 미만	25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총 합	χ ² (p)
5 세 단 위	전 체	(706)	15.2	24.5	28.8	16.3	15.3	100.0	－
	20-24세	(95)	48.4	32.6	19.0	0.0	0.0	100.0	163.04*** (0.00)
	25-29세	(211)	16.1	30.8	31.8	13.3	8.1	100.0	
	30-34세	(236)	7.2	18.6	29.7	22.0	22.5	100.0	
	35-39세	(164)	6.1	20.1	29.3	21.3	23.2	100.0	
근 로 형 태	정규직	(394)	6.4	21.8	26.4	23.6	21.8	100.0	－
	비정규직	(276)	27.2	29.4	31.9	6.9	4.7	100.0	
	자영업	(36)	19.4	16.7	30.6	8.3	25.0	100.0	

주: ***p<0.01 **p<0.05 *p<0.0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이인재·김태기(2009)는 개인의 근로형태와 교육수준과 크게 상관있음을 밝혔으며, 남성일·민주홍(2011)은 교육수준이 다시 소득에 영향을 주어 근로형태와 소득에 교육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과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서울시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62.9%가 비정규직이었으나, 전문대졸(40.5%), 대학교졸(35.8%), 대학원졸(22.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교육수준과 근로형태와의 상관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다.

표 Ⅲ-1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근로형태

(단위: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총 합	χ ² (p)	
교육수준	전 체	(706)	55.8	39.1	5.1	100.0	-
	고졸이하	(97)	32.0	62.9	5.2	100.0	42.73*** (0.00)
	전문대졸	(121)	49.6	40.5	9.9	100.0	
	대학교졸	(422)	60.7	35.8	3.6	100.0	
	대학원졸	(66)	71.2	22.7	6.1	100.0	

주: ***p<0.0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은 근로형태와 더불어 월평균임금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월평균소득 250만 원 이상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250만원 미만을 중심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은 더 낮은 소득수준(좌측)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교졸은 대칭적으로 분포되어있었다. 대학원졸은 200만원~250만원을 중심으로 더 높은 소득수준(우측)으로 분포하여 타 교육수준보다 더 높은 소득분포를 가졌다. 특히,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비중은 고졸 5.2%, 전문대졸 11.6%, 대학교졸 15.6%, 대학원졸 34.9%로 나타났다.

【 표 Ⅲ-19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 월평균임금 분포

(단위: %)

구 분		최저임금	135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250만원 미만	25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총 합	
교육 수 준	전 체	(706)	15.2	24.5	28.8	16.3	15.3	100.0
	고졸이하	(97)	19.6	40.2	28.9	6.2	5.2	100.0
	전문대졸	(121)	9.9	38.0	35.5	5.0	11.6	100.0
	대학교졸	(422)	17.8	19.7	25.8	21.1	15.6	100.0
	대학원졸	(66)	1.5	7.6	34.9	21.2	34.9	100.0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에 대한 차이는 평균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서울시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2.8만원, 전문대졸 200.2만원, 대학교졸 213.6만원, 대학원졸 277.7만원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학원졸업 청년여성 월평균소득의 62.2% 수준에 그쳐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표 Ⅲ-20 서울시 청년여성 교육수준별·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

(단위: 만원)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T/x ² (p)
고졸이하 (97)	172.8	2.32*** (0.01)
정규직 (31)	190.9	-
비정규직 (61)	161.8	
전문대졸 (121)	200.2	1.63* (0.06)
정규직 (60)	202.3	-
비정규직 (49)	184.4	
대학교졸 (422)	213.6	10.72*** (0.00)
정규직 (256)	243.1	-
비정규직 (151)	166.8	
대학원졸 (66)	277.7	1.81** (0.04)
정규직 (47)	291.3	-
비정규직 (15)	237.4	

주: ***p<0.01 **p<0.05 *p<0.0

한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근로소득과 가족지원, 친척 및 친구지원, 금융소득을 통한 근로소득 외 소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족의 지원 외 소득규모는 크지 않았다. 706명의 조사대상 중 가족의 지원을 받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95명이었으며 최근 3개월 월평균소득은 41.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적 근로를 한다는 응답자는 69명이었으며 이중 비정규직은 44명으로 정규직 25명에 비해 약 1.8배 많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평균 추가 근로소득은 38.3만원 수준이었으나 근로형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정규직 36.6만원, 비정규직은 1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Ⅲ-2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만원)

구 분		전 체			T
			정규직	비정규직	
추가 근로소득	(69)	38.3	35.0	37.3	-0.22 (0.59)
가족의 지원	(95)	41.8	43.3	40.2	0.39 (0.35)
친척, 친구, 지인의 지원	(11)	36.5	16.8	60.0	-2.01 (0.96)
금융소득	(43)	32.7	36.6	17.4	1.31* (0.09)
전배우자의 지원	(1)	10.0	-	10.0	-

이처럼 근로형태별,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8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규직 88.7만원, 비정규직 7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43.8%, 정규직은 37.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소득대비 높은 월평균 생활비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표 Ⅲ-2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

구 분		월평균소득(A)	월평균 생활비(B)	비중(A/B)
전 체	(706)	211.7	82.3	38.9
정규직	(394)	238.5	88.7	37.2
비정규직	(276)	172.7	73.9	43.8

세대별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하로 인식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생활수준은 상층(상층 + 최상층)이라 응답한 비중은 2.8%에 불과하여 중장년여성 1인가구(8.7%), 고령여성 1인가구(7.2%)보다 훨씬 낮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하층로 인식하

는 비중(최하층 + 하층)은 46.5%를 보이며 비경활동 고령여성 1인가구(53.3%)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33.0%)보다 13.5%p 낮았다.

표 Ⅲ-23
 서울시 세대별 여성 1인가구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구 분			최하층	하층	중간층	상층	최상층	총 합	χ²(p)
세 대 별	전 체	(1,810)	5.5	38.5	50.1	5.3	0.7	100.0	59.70*** (0.00)
	청년여성	(706)	5.1	41.4	50.7	2.4	0.4	100.0	
	중장년여성	(504)	4.2	28.8	58.3	8.3	0.4	100.0	
	고령여성	(600)	7.0	43.3	42.5	6.0	1.2	100.0	

주: ***p<0.0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대비 생활비와 주관적 생활수준과의 상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산출되어 월평균소득대비 생활비가 올라갈 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은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분포 역시 월평균소득대비 생활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하층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생활비 비중이 20% 미만인 청년여성 계층 중 34.8%가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20%~40%미만은 35.1%, 40%~60%미만 48.7%, 60%~80%미만 50.0%로 증가하였다.

표 Ⅲ-2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대비 생활비별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월평균소득대비 월평균생활비		최하층	하층	중간층	상층	최상층	총 합
20% 미만	(112)	6.3	34.8	52.7	3.6	2.7	100.0
20%~40% 미만	(322)	3.7	35.1	59.0	2.2	0.0	100.0
40%~60% 미만	(189)	4.2	48.7	45.0	2.1	0.0	100.0
60%~80% 미만	(62)	11.3	50.0	37.1	1.6	0.0	100.0
80%~100% 미만	(19)	5.3	84.2	5.3	5.3	0.0	100.0
100% 이상	(2)	50.0	50.0	0.0	0.0	0.0	100.0

또한 월평균 생활비와 더불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부채규모를 꼽을 수 있다. 청년여성 1인가구 중 26.1%는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형태 또는 연령대와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정규직의 26.1%, 비정규직의 25.0%가 부채가 있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사례 수는 적었으나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24.5%, 30대의 27.3%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표 Ⅲ-25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연령대별 부채유무

(단위: %)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총 합	$\chi^2(p)$
근로 형태	전 체	(706)	26.1	73.9	100.0	-
	정규직	(394)	26.1	73.9	100.0	0.71 (0.87)
	비정규직	(276)	25.0	75.0	100.0	
	자영업	(36)	33.3	66.7	100.0	
연령별	20-29세	(306)	24.5	75.5	100.0	0.68 (0.41)
	30-39세	(400)	27.3	72.8	100.0	

주1: *** $p < 0.01$ ** $p < 0.05$ * $p < 0.100$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부채는 주로 학자금대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부채를 가진 조사대상 중 주택자금대출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학자금 대출 33.7%, 기타대출은 16.3%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평균 총부채의 규모는 2,796만원이었으며 특히, 주택구매를 위한 현재 대출금은 평균 3,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주거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은 자칫 청년 1인가구의 빈곤가속화 및 하우스푸어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이현정, 2015), 청년세대는 높은 대학등록금과 기본생활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최계연, 2014).

표 Ⅲ-2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부채규모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최소	최대
학자금대출(A)	(62)	1,105	20	4,000
주택자금대출(B)	(99)	3,870	19	18,000
기타대출(C)	(30)	2,092	2,401	11,000
총부채(A+B+C)	(184)	2,796	19	18,000

총부채규모에 있어서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1,960만원이었으며, 정규직은 이보다 1,509만원 많은 3,469만원이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대출금액의 제약 등 제한된 대출상품 이용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방희경·유수미, 2015). 또한 연령별로 30~34세 청년여성 1인가구가 가장 대출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직장·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독립과 동시에 주택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7 서울시 청년여성 근로형태별·연령대별 부채규모

(단위: 만원)

구 분			총 부채규모
근로형태	전 체	(184)	2,796
	정규직	(103)	3,469
	비정규직	(69)	1,960
	자영업	(12)	1,835
연령별	20~20세	(23)	1,313
	25~29세	(52)	2,493
	30~34세	(65)	3,508
	35~39세	(44)	2,879

한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매월 67.0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저축규모 분포를 살펴본 결과 50만원~75만원 미만이 25.3%로 가장 많았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도 24.8%를 보였으나 중장년여성 1인가구(42.9%)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저축금액은 낮았다. 이뿐만 아니

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8.7%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표 Ⅲ-28 】 서울시 청년/중장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저축금액 분포

(단위: %)

구 분			저축 안함	25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75만원 미만	75만원- 100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총 합	$\chi^2(p)$
전 체			5.1	14.4	15.1	23.1	10.1	32.2	100.0	-
세 대 별	청년여성	(705)	8.7	18.2	13.3	25.3	9.8	24.8	100.0	95.50*** (0.00)
	중장년여성	(489)	0.0	9.0	17.6	20.0	10.4	42.9	100.0	

주: *** $p < 0.01$

비정규직은 매월 50만원~75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비중이 25.4%로 가장 높았으나 정규직의 경우 무려 35.5%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10.1%에 그쳐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 표 Ⅲ-29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월평균 저축금액 분포

(단위: %)

구 분		저축 안함	25만원 미만	25만원 － 50만원 미만	50만원 － 75만원 미만	75만원 － 100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총 합	x²(p)	
근로형태	전 체	(705)	8.7	18.2	13.3	25.3	9.8	24.8	100.0	－
	정규직	(394)	5.8	14.5	10.4	24.4	9.4	35.5	100.0	63.87*** (0.00)
	비정규직	(276)	12.0	23.6	18.1	25.4	10.9	10.1	100.0	
	자영업	(35)	14.3	17.1	8.6	34.3	5.7	20.0	100.0	－

주1: *** $p < 0.01$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이러한 사실은 근로형태별 월평균 저축액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의 월평균 저축액은 78.9만원을 보인 정규직 월평균 저축액보다 30.2만원 낮은 48.7만원이었다. 또한 저축률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월평균소득의 30.4%를 저축하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이보다 6.2%p 낮은 24.2%로 나타났다.

표 Ⅲ-3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

구 분		월평균 저축액	저축률(%)
근로 형태	전 체	(644) 67.0	27.7
	정규직	(371) 78.9	30.4
	비정규직	(243) 48.7	24.2
	자영업	(30) 69.2	23.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저축을 하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준비와 노후생활대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39.0%, 비정규직의 37.3%가 결혼준비로 인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생활대비는 정규직 29.3%, 비정규직 17.7%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후준비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저축의 주된 이유로 고용불안정을 꼽은 정규직은 3.7%에 불과하였으나, 비정규직은 이보다 10.1%p 높은 13.8%였다. 또한 정규직의 7.0%가 저축의 이유로 주택구매라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4%에 그쳤고 반대로 전세금액상승대비의 경우 정규직 7.6%, 비정규직 11.5%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서울시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주택구매비용보다 전세비용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3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 저축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결혼준비를 위해	38.4	39.0	37.3	38.5
주택구매를 위해	6.0	7.0	3.4	15.4
전세금액 상승대비	9.2	7.6	11.5	11.5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7.5	3.7	13.9	3.9
주택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	2.0	1.2	2.9	3.9
노후생활대비	24.7	29.3	17.7	23.1
미래 자녀교육 비용	0.7	0.6	1.0	0.0
부모님 부양비	0.5	0.3	1.0	0.0
위급상황(갑작스런 의료비 등) 대비	10.3	11.0	10.5	0.0
기 타	0.7	0.3	1.0	3.9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저축의 주된 이유에 대해 20-29세의 52.7%, 30-39세의 28.9%가 결혼준비라 응답하였으며, 노후생활대비의 경우 20-29세 12.5%, 30-39세는 32.7%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저축목적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20대 청년여성 1인가구는 결혼준비, 30대의 경우 노후준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Ⅲ-3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 저축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20대			30대		
		20-20세	25-29세		30-34세	35-39세
결혼준비를 위해	52.7	42.4	56.4	28.9	32.8	23.6
주택구매를 위해	4.9	0.0	6.7	6.8	4.6	9.7
전세금액 상승대비	3.1	0.0	4.2	13.3	13.9	12.5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8.9	11.9	7.9	6.5	6.7	6.3
주택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	3.1	6.8	1.8	1.2	0.5	2.1
노후생활대비	12.5	15.3	11.5	32.7	29.7	36.8
미래 자녀교육 비용	0.0	0.0	0.0	1.2	0.5	2.1
부모님 부양비	0.5	0.0	0.6	0.6	0.5	0.7

구 분	20대			30대		
		20-20세	25-29세		30-34세	35-39세
위급상황 (갑작스런 의료비 등) 대비	13.4	22.0	10.3	8.3	10.3	5.6
기 타	0.9	1.7	0.6	0.6	0.5	0.7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4.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및 세대별 비교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고시원/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낮은 비용이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비중은 21.5%였는데, 이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 4.6%에 비해 16.9%p, 고령여성 1인가구 0.3%보다 21.2%p 높은 수치였다. 반면, 가장 안전하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아파트 거주비중은 13.0%를 보이며 중장년여성(41.7%)보다 28.7%p 낮았다. 즉,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기간 등의 이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오피스텔 역시 높은 비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III-33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총 합	χ²(p)	
세 대 별	전 체	(1,810)	8.7	39.9	27.5	14.2	9.8	100.0	555.95*** (0.00)
	청년여성	(706)	4.5	31.9	13.0	29.0	21.5	100.0	
	중장년여성	(504)	5.2	38.5	41.7	10.1	4.6	100.0	
	고령여성	(600)	16.5	50.5	32.5	0.2	0.3	100.0	

주: ***p<0.0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소득에 의한 주거형태 차이를 보였는데, 고소득은 저소득에 비해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비중이 높은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42.1%는 고시원/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오피스텔 8.4%, 아파트는 9.4% 수준이었다. 즉,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보였다. 또한 월평균소득과 주거형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소득이 주거형태 나아가 주거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표 Ⅲ-3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 월평균소득과 주거형태 상관관계

구 분	근로형태	월평균소득
주거형태	0.06	-0.23***

주1: ***p<0.01

주2: 근로형태는 정규직(1), 비정규직(2), 자영업(3)이며, 점유유형은 자가(1), 전세(2), 보증금 있는 월세(3), 사글세(4)이며, 주거형태는 아파트(1), 단독주택(2), 오피스텔(3), 연립/다세대(4), 고시원/원룸(5)임.

근로형태별 주거형태는 소득분포 따른 주거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가 비정규직에 비해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비중이 높았다. 서울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5.7%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은 7.6%에 불과하였으며, 고시원/원룸 거주자는 정규직 18.5%, 비정규직은 이보다 8.7%p 높은 27.2%였다. 종합적으로, 앞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고용불안과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35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단독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총 합	χ²(p)
월평균 소득	전 체	(706)	4.5	31.9	13.0	29.0	21.5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4.7	35.5	9.4	8.4	42.1	100.0	72.99*** (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8.1	30.6	7.5	28.9	24.9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3.0	34.5	15.8	31.0	15.8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2.6	29.6	13.9	34.8	19.1	100.0	

구 분			단독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총 합	$\chi^2(p)$
근로 형태	300만 원 이상	(108)	3.7	27.8	19.4	39.8	9.3	100.0	15.52*** (0.00)
	정규직	(394)	5.1	31.2	15.7	29.4	18.5	100.0	
	비정규직	(276)	3.6	34.1	7.6	27.5	27.2	100.0	
	자영업	(36)	5.6	22.2	25.0	36.1	11.1	100.0	

주1: *** $p < 0.01$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5평 미만)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는 5평~10평 미만 거주지 거주비중(37.3%)이 가장 많았으며, 10평~15평 미만(32.4%), 15평~20평 미만(15.4%), 20평 이상(9.9%) 순이었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주지 거주비중도 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30.0%의 청년세대 주거빈곤율을 보인 임경지(2015)의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더 고연령대를 포함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과 근로형태 구분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거주하는 비중은 저소득,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가 높았다. 우선 월평균 소득과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5.9%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45.8%는 5평~10평 미만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135만원~200만원 미만의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8.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득이 낮은 청년여성 1인가구는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비중이 매우 낮아짐을 보였는데, 월평균소득 200만원~250만원 미만 청년여성은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월평균소득 250만원~300만원 미만은 더 낮아져 0.9%였으며,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경우는 없었다. 주거면적과 월평균소득간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표 Ⅲ-36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 근로형태와 주거면적 상관관계

구 분	월평균소득	근로형태
주거면적	-0.25***	24.6***

주1: ***p<0.01

주2: 근로형태는 정규직(1), 비정규직(2), 자영업(3)임

근로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중에 있어서 정규직 3.1%이었으나, 비정규직은 이보다 4.5%p 높은 7.6%수준이었다. 또한 20평 이상 주거면적을 보인 정규직은 11.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6.5%p 낮은 5.4%에 불과하였다. 월평균소득과 근로형태에 따른 주거면적을 분석한 결과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고용안정보다 현재 월평균소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시 청년여성의 근로형태, 월평균소득과 주거면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보다 월평균소득이 주거면적과 더 큰 양의 관계를 보였다.

【 표 Ⅲ-37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별/근로형태별 주거면적

(단위: %)

구 분			5평 미만	5평- 10평 미만	10평- 15평 미만	15평- 20평 미만	20평 이상	총 합	χ ² (p)
월평균 소득	전 체	(706)	5.0	37.3	32.4	15.4	9.9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15.9	45.8	19.6	11.2	7.5	100.0	66.75*** (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8.7	38.7	33.5	14.5	4.6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1.0	36.5	35.5	15.3	11.8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0.9	35.7	34.8	17.4	11.3	100.0	
	300만 원 이상	(108)	0.0	29.6	35.2	19.4	15.7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394)	3.1	35.5	32.7	16.8	11.9	100.0	26.63*** (0.00)
	비정규직	(276)	7.6	41.3	32.6	13.0	5.4	100.0	
	자영업	(36)	5.6	25.0	27.8	19.4	22.2	100.0	

주1: ***p<0.01

주2: 근로형태 x²(p)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점유유형에 있어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중장년여성, 고령여성 1인가구에 비해 월세 거주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서울시 청년세대는 매월 주거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자가 비중은 6.2%로 중장년여성 1인가구(51.0%)에 비해 44.8%p 낮고, 고령여성 1인가구(70.0%)보다 무려 63.8%p 낮았다. 반대로 보증금 있는 월세의 거주비중은 청년여성 1인가구 44.3%를 보이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8.5%), 고령여성 1인가구(2.0%)보다 매우 높았다. 이처럼 청년여성 1인가구의 낮은 자가 비중, 높은 월세 비중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주거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38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점유유형

(단위: %)

구 분			자가	전세	반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임대	무상	기 타	총 합
세 대 별	전 체	(1,810)	39.8	31.1	5.0	20.3	1.5	1.7	0.6	0.1	100.0
	청년여성	(706)	6.2	34.7	10.3	44.3	2.8	0.9	0.6	0.1	100.0
	중장년여성	(504)	51.0	35.5	2.0	8.5	1.2	0.8	1.0	0.0	100.0
	고령여성	(600)	70.0	23.0	1.3	2.0	0.2	3.3	0.2	0.0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근로형태별 점유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거주비중이 낮고 반대로 자가, 전세, 반전세의 비중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자가로 거주하는 비중은 10.2%였으며,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자가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점유유형과 월평균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월평균소득이 올라갈수록 반전세, 전세, 자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 점유유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Ⅲ-39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과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구 분	월평균소득
주거면적	-0.22***

주1: ***p<0.01

주2: 점유유형은 자가(1), 전세(2), 보증금 있는 월세(3), 사글세(4)이며, 주거형태는 아파트(1), 단독주택(2), 오피스텔(3), 연립/다세대(4), 고시원/원룸(5)임.

【 표 Ⅲ-40 】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

(단위: %)

구 분			자 가	전 세	반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임 대	무 상	기 타	총 합
연 령 대	전 체	(706)	6.2	34.7	10.3	44.3	2.8	0.9	0.6	0.1	100.0
	최저임금이하	(107)	0.9	24.3	3.7	55.1	9.4	3.7	2.8	0.0	1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5.8	30.1	7.5	50.9	4.1	1.2	0.6	0.0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7.4	37.9	12.8	40.9	1.0	0.0	0.0	0.0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6.1	41.7	13.9	37.4	0.0	0.0	0.0	0.9	100.0
	300만 원 이상	(108)	10.2	38.9	13.0	37.0	0.9	0.0	0.0	0.0	100.0
	근로형태										
정규직	(394)	7.6	35.8	11.4	42.4	2.0	0.8	0.0	0.0	100.0	
비정규직	(276)	4.4	33.0	8.3	48.6	3.6	0.7	1.1	0.4	100.0	
자영업	(36)	5.6	36.1	13.9	33.3	5.6	2.8	2.8	0.0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점유유형별 주거비는 자가(30,602만원), 전세(9,486만원), 반전세(5,991만원/30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2,188, 40만원), 사글세(20만원) 순이었다. 또한 각 점유유형별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자가 243.2만원, 전세 223.2만원, 반전세 241.8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199.4만원, 사글세 131.3만원이었다. 특히, 자가 비용은 자가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 125.8배이며, 10년간 월평균소득 전부를 저축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전세 역시 전세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42.5배이며, 3.5년간 저축이 필요하다. 반전세는 전세보증금만 고려하였을 때 반전세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24.8배 수준이며 추가로 매달 30만원의 월세부담이 요구된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44.3%를 차지하는 보증금 있는 월세는 월평균소득의 11.0배였으나 매달 월평균소득의 20.1% 수준인 4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Ⅲ-4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유형별 주거비

(단위: 만원)

구 분		평균비용(A)	월평균 소득(B)	A/B
자가	(44)	30,602	243.2	125.8
전세	(245)	9,486	223.2	42.5
반전세	(73)	5,991	241.8	24.8
월세	(73)	30		
보증금	(313)	2,188	199.4	11.0
월세	(313)	40		
사글세	(20)	20	131.3	-

앞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주거비 부담에 놓인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비 마련 방법에 있어서 본인자금(41.5%),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지의 도움(33.7%), 대출(15.3%),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의 도움(7.7%), 사금융(1.0%), 직장 내 대출(0.9%)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자금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현재 주택마련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며, 추후 첫 주택구입에 관한 조사 실시 시 본인자금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환하지 않는 부모나 친척이 도움비중이 감소하고 본인자금, 대출에 의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68.4%는 부모나 친지의 도움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29세는 40.3%, 30-34세 25.9%, 35-39세 16.5%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 본인자금으로 주거비를 마련한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24.2%에 불과하였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은 비중을 보이며 35-39세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53.7%에 달하였다. 또한 대출에 의한 주거비 마련 역시 20-29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6.3%에 불과하였으나 본인자금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35-39세의 경우, 23.8%였다. 특히, 소득 수준에 있어서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64.5%였다. 이는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매우 저렴한 공공에서의 주택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 표 Ⅲ-42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대별/근로형태별 주거비 마련방법 (단위: %)

구 분		본인 자금	대출	사금융	직장 내 대출	부모나 친지도움 (상환유)	부모나 친지도움 (상환무)	총 합	χ ² (p)	
연령대	전 체	(706)	41.5	15.3	1.0	0.9	7.7	33.7	100.0	-
	20-20세	(95)	24.2	6.3	0.0	0.0	1.1	68.4	100.0	
	25-29세	(211)	35.6	11.4	1.4	0.5	10.9	40.3	100.0	
	30-34세	(236)	45.3	16.5	1.7	1.7	8.9	25.9	100.0	
	35-39세	(164)	53.7	23.8	0.0	0.6	5.5	16.5	100.0	
소득 수준	최저임금 이하	(107)	24.3	5.6	0.0	0.9	4.7	64.5	100.0	-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35.3	14.5	1.2	1.2	10.4	37.6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48.3	16.8	1.0	1.0	7.4	25.6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45.2	18.3	0.0	0.9	7.8	27.8	100.0	
	300만원 이상	(108)	51.9	20.4	2.8	0.0	6.5	18.5	100.0	
근로형태	정규직	(394)	44.2	17.5	0.5	0.8	6.9	30.2	100.0	9.51*** (0.00)
	비정규직	(276)	38.8	12.7	1.5	1.1	6.5	39.5	100.0	
	자영업	(36)	33.3	11.1	2.8	0.0	25.0	27.8	100.0	

주1: *** $p < 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대출금 월평균 상환금액, 월세와 사글세를 포함하는 주거비에 대해 청년여성 1인 가구 중 33.7%는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부담 역시 40.5%에

달하였다. 또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고소득보다 저소득이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보였다.

서울시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무려 40.9%는 주거비에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35.1%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주거비 지출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비정규직에 비해 11.5%p 낮은 29.4%였으며, 약간 부담이라 응답한 비중은 비정규직보다 8.8%p 높은 35.1%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비정규직 청년여성에 비해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을 느낀다는 비중(매우부담+약간부담)이 73.3%에 달하고 있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였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주거비 부담정보 역시 근로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37.8%는 약간 부담이라 응답하였으며 40.2%는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인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73.3%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저소득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경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III-43 】 소득별/근로형태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비 부담정도

(단위: %)

구 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 없음	부담 없음	총 합	x²(p)
월평균 소득	전 체	(706)	33.7	40.5	11.9	13.9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40.2	37.4	13.1	9.4	100.0	-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44.5	39.3	6.4	9.8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31.5	39.4	12.3	16.8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29.6	42.6	16.5	11.3	100.0	
	300만 원 이상	(108)	18.5	45.4	13.9	22.2	100.0	

구 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 없음	부담 없음	총 합	$\chi^2(p)$
근로 형태	정규직	(394)	29.4	43.9	14.5	12.2	100.0	14.13*** (0.00)
	비정규직	(276)	40.9	35.1	9.1	14.9	100.0	
	자영업	(36)	25.0	44.4	5.6	25.0	100.0	

주1: *** $p < 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주2: 근로형태 $\chi^2(p)$ 의 경우, 자영업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한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여성 1인가구 모두 ①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 현 주거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47.6%로 중장년여성 1인가구(27.6%)에 비해 20%p 높았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②저렴한 비용이 20.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높아 비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⑤치안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현 주거지를 선택한 비중은 6.2%에 그쳐 주거 선택 시 안전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⑦주거지 환경이 좋아서(5.0%) 역시 주거선택의 주요인이 아니었다. 즉,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직장과의 거리, 교통편리 등 직장중심의 주거환경을 우선 고려하고 적정 지역 안에서 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 시 직장밀집지역 또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4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세대별 현 주거지 선택이유 1순위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세대별	전 체	(1,810)	29.3	18.2	25.2	6.2	8.0	8.3	3.8	0.6	0.1	0.3	100.0
	청년여성	(706)	47.6	20.0	8.8	3.0	6.2	8.1	5.0	0.9	0.0	0.6	100.0
	중장년여성	(504)	27.6	14.9	22.4	4.4	12.5	13.1	4.4	0.8	0.0	0.0	100.0
	고령여성	(600)	9.3	19.0	46.8	11.5	6.3	4.7	1.8	0.2	0.2	0.2	100.0

주: ①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비용이 저렴해서 ③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부모·자녀·친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⑤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교통이 편리해서 ⑦주거지 환경(방의 크기, 개수, 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이 좋아서 ⑧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의료시설(병원, 약국

특히, 현 주거지 선택이유 중 직장과의 거리를 1순위로 선택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현 주거지 선택이유 2순위는 교통의 편리함(32.6%), 비용이 저렴해서(28.1%) 순이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직장과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후 교통과 비용을 고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비용의 저렴함을 현 주거지 선택이유 1순위로 꼽은 청년여성 1인가구 중 38.6%는 직장과의 거리, 20.7%는 교통의 편리함을 꼽았다. 즉, 주거지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는 상이하지만 직장과의 거리, 교통의 편리, 저렴한 비용이 모두 충족되는 주거정책이 요구되어진다.

표 Ⅲ-45 현 주거지 선택이유 1순위별 2순위

(단위: %)

구 분		현 주거지 선택 2순위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 주거지 선택 1순위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0.0	28.1	6.3	1.8	17.1	32.6	11.4	1.5	0.3	0.9	100.0
	비용이 저렴해서	38.6	0.0	7.9	5.7	8.6	20.7	16.4	0.7	0.7	0.7	100.0

주 : ①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비용이 저렴해서 ③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부모·자녀·친지와
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치안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교통이 편리해서 ⑦주거지 환경이
좋아서 ⑧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의료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기타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현 주거지 만족도에 있어서 연립/다세대, 고시원/원룸의 경우 보통 응답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만족의 비중이 높았다. 현주거지 만족도 수준에서 보통의 응답비중은 단독주택 거주자의 43.8%,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40.9%였고 고시원/원룸(37.3%), 오피스텔(34.2%), 아파트(30.4%) 순이었다. 현 주거지에 만족(대체로 만족함 + 매우 만족함)하는 비중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65.2%를 보이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오피스텔 역시 54.2%로 높았다. 반면, 연립/다세대 거주자와 고시원/원룸 거주자의 만족비중은 각각 36.5% (연립/다세대), 36.2%(고시원/원룸) 수준으로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22.7%, 고시원/원룸 거주자의 25.1%가 현 거주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형태별 현 주거지 만족도는 자가에 비해 주거불안정, 매달 월세부

답이 있는 점유유형 거주자의 주거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거지 불만족 비중은 반전세(17.8%), 보증금 있는 월세(16.9%), 전세(15.5%)순이었으며 자가의 경우 0.0%였다.

표 Ⅲ-4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점유유형별 현 주거지 만족도

(단위: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총 합	
주거 유형	전 체	(706)	1.7	15.2	37.3	41.6	4.3	100.0
	단독주택	(32)	3.1	3.1	43.8	37.5	12.5	100.0
	연립/다세대	(225)	1.8	20.9	40.9	32.9	3.6	100.0
	아파트	(92)	0.0	4.4	30.4	57.6	7.6	100.0
	오피스텔	(205)	0.5	11.2	34.2	51.7	2.4	100.0
	고시원/원룸	(152)	4.0	21.1	38.8	32.2	4.0	100.0
점유 유형	자가	(44)	0.0	0.0	34.1	61.4	4.6	100.0
	전세	(245)	0.4	15.1	35.1	46.5	2.9	100.0
	반전세	(73)	0.0	17.8	31.5	46.6	4.1	100.0
	보증금 있는 월세	(313)	2.9	14.1	41.9	36.1	5.1	100.0
	사글세	(20)	10.0	60.0	25.0	0.0	5.0	100.0
	임대	(6)	0.0	16.7	16.7	50.0	16.7	100.0
	무상	(4)	0.0	0.0	25.0	75.0	0.0	100.0
	기타	(1)	0.0	0.0	100.0	0.0	0.0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 선택 시 어려운 점은 보증금/월세 비용(43.5%)이 가장 높았으며,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22.4%), 원하는 위치의 매물부족(21.7%),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부족(11.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아질수록 보증금/월세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5.1%는 보증금/월세 비용 문제를 꼽았으며 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30.6%에 달하였다. 또한 소득이 올라갈수록 주거비용 문제가 감소한 반면 원하는 위치에 매물을 찾기 어려운 모습도 나타났다.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원하는 위치의 매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비중은 14.0%였으나 300만 원 이상의 경우 33.3%였다. 이는 기존 저소득 위주의 주거정책대상을 고소득 청년여성 1인가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수요자의 주택수요 욕구를 반영한 공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와 연계하여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47 월평균소득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마련 시 어려움
 (단위: %)

구 분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부족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부족	보증금/ 월세 비용 부담	기 타	총 합	χ ² (p)
월 평 균 소 득	전 체	(706)	11.9	22.4	21.7	43.5	0.6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13.1	17.8	14.0	55.1	0.0	100.0	38.09*** (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12.1	23.7	13.9	50.3	0.0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10.3	25.1	25.1	39.4	0.0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13.9	19.1	23.5	41.7	1.7	100.0	
	300만 원 이상	(108)	11.1	23.2	33.3	30.6	1.9	100.0	

주: ***p<0.01

이처럼 주거마련 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82.6%는 내 집이 마련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17.4%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로형태별 내 집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비슷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월평균소득,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필요함을 느끼는 비중도 높았다. 20-20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71.6%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5-29세 80.1%, 30-34세 82.2%로 높아졌고 35-39세의 경우 무려 92.7%에 육박하였다.

【 표 Ⅲ-48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내 집 마련의 필요성 정도

(단위: %)

구 분			필요함	필요 없음	총 합	χ²(p)
월평균 소득	전 체	(706)	82.6	17.4	100.0	-
	최저임금이하	(102)	73.8	26.2	100.0	12.82*** (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57)	79.8	20.2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197)	89.2	10.8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6)	83.5	16.5	100.0	
	300만 원 이상	(134)	82.4	17.6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394)	83.0	17.0	100.0	1.43 (0.48)
	비정규직	(276)	81.2	18.8	100.0	
	자영업	(36)	88.9	11.1	100.0	
연령별	20-20세	(95)	71.6	28.4	100.0	20.56*** (0.00)
	25-29세	(211)	80.1	19.9	100.0	
	30-34세	(236)	82.2	17.8	100.0	
	35-39세	(164)	92.7	7.3	100.0	

주: ***p<0.01 **p<0.05 *p<0.10

내 집 마련이 불필요 이유에 대해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해서(49.6%), 주택비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31.7%), 주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볼까봐서(8.1%), 임대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라(5.7%), 직업특성상 이동이 잦아서(4.9%)순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내 집 마련이 불필요한 원인 역시 앞서 여러 조사문항에서 드러났듯이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Ⅲ 표 Ⅲ-49 Ⅲ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내 집 마련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

구 분	비중
주택비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31.7
직업특성상 이동이 잦아서	4.9
주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볼까봐서	8.1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해서	49.6
임대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라	5.7
총 합	100.0

한편, 서울시는 청년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개인의 공간을 줄이고, 공용공간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1인가구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회적 고립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서울시, 2014). 그러나 조사결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0.7%는 공동체주택 거주로 인한 고립감해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생활보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비중은 80.3%에 달하여 공동체주택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동체주택 거주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67.3%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Ⅲ 표 Ⅲ-50 Ⅲ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공동체주택에 관한 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 합
혼자 생활하지 않아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음	6.1	43.2	39.7	11.1	100.0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음	38.8	41.5	12.9	6.8	100.0
공동으로 생활하여 주거비가 더 낮을 것 같음	14.5	52.8	29.6	3.1	100.0

3.1.5.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상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고졸이하 교육수준을 지닌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4.6%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대졸 48.8%, 대학교졸업은 41.3%, 대학원졸업 40.9%로 낮았다. 또한 주거형태에 있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타 주거형태 거주 여성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비중이 낮았다. 아파트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별로 안전하지 않음 + 전혀 안전하지 않음)은 33.7%였으며 오피스텔(47.8%)이 가장 높았다. FGI에서 후술하겠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 표 Ⅲ-51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교육수준별/주거형태별 주관적 안전정도
(단위: %)

구 분		매우 안전함	대체로 안전함	별로 안전하지 않음	전혀 안전하지 않음	총 합	
교육수준	전 체	(706)	1.1	54.3	41.2	3.4	100.0
	고졸이하	(97)	0.0	45.4	47.4	7.2	100.0
	전문대졸	(121)	2.5	48.8	46.3	2.5	100.0
	대학교졸	(422)	1.2	57.1	38.9	2.8	100.0
	대학원졸	(66)	0.0	59.1	37.9	3.0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32)	0.0	71.9	21.9	6.3	100.0
	연립/다세대	(225)	2.7	49.8	44.9	2.7	100.0
	아파트	(92)	1.1	65.2	22.8	10.9	100.0
	오피스텔	(205)	0.0	52.2	46.3	1.5	100.0
	고시원/원룸	(152)	0.7	53.3	44.1	2.0	100.0

일상생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46.0%)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혼자 생활해야하는 1인가구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혼자 지내는 시

간이 많아서(14.6%),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서(11.4%),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몰라서(8.9%),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8.9%)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2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 분	비 중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몰라서	8.9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46.0
경찰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	9.2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8.9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서	11.4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14.6
기 타	1.0
총 합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은 성희롱·성폭행(45.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주거침입절도(24.7%), 납치 또는 인신매매(11.2%), 노상강도(9.2%), 폭행(6.9%), 택시강도(2.1%)순이었다. 특히, 성희롱·성폭행에 대한 불안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가지는 불안 요인이었으나 주거형태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단독주택(18.8%)과 연립/다세대(13.3%)는 타 주거형태에 비해 노상강도에 대한 노출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단독주택(31.3%), 연립/다세대(32.0%), 아파트(29.4%)는 주거침입 또는 절도에 대한 노출이 높았다.

표 Ⅲ-5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관적 노출 범죄유형

(단위: %)

구 분			폭행	성희롱/ 성폭행	노상 강도	택시 강도	납치/ 인신매매	주거 침입 절도	총 합	$\chi^2(p)$
주거 형태	전 체	(706)	6.9	45.9	9.2	2.1	11.2	24.7	100.0	-
	단독주택	(32)	9.4	34.4	18.8	3.1	3.1	31.3	100.0	43.15*** (0.00)
	연립/다세대	(255)	4.9	39.1	13.3	0.9	9.8	32.0	100.0	
	아파트	(92)	10.9	42.4	5.4	5.4	6.5	29.4	100.0	
	오피스텔	(205)	5.9	52.2	5.4	2.0	15.6	19.0	100.0	
	고시원/원룸	(152)	8.6	52.0	8.6	2.0	11.8	17.1	100.0	

주1: *** $p < 0.01$ ** $p < 0.05$ * $p < 0.10$

주2: 주거형태 $\chi^2(p)$ 의 경우, 단독주택을 제외한 검정량을 제시함

특히,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내부에서의 불안과 주거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불안한 요인으로 보았다. 범죄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1순위로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31.7%)를 꼽았으며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15.0%), 유흥가 밀집지역(14.2%), 대중교통-주거지 이동 공간(1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 안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응답한 청년여성 1인가구는 5.7%에 그쳐 주거지 안에서의 불안은 낮았다. 또한 주거유형별 범죄발생가능 장소에 대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로 주거지 내부와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을 꼽았으며, 연립/다세대 거주자는 주거지 내부와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유형별 범죄발생 가능성 장소

(단위: %)

구 분	전 체	단독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집 안	5.7	15.6	4.9	5.4	4.4	6.6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31.7	18.8	36.9	38.0	33.7	20.4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	15.0	6.3	8.9	15.2	20.5	18.4
대중교통-주거지 이동 공간	10.5	15.6	10.2	5.4	8.8	15.1
유흥가 밀집지역	14.2	15.6	16.0	8.7	12.2	17.1
공중화장실	8.9	15.6	10.2	10.9	4.4	10.5

구 분	전 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원룸
지하주차장	9.4	12.5	8.4	7.6	12.7	6.6
엘리베이터 내부	1.1	0.0	1.3	2.2	0.5	1.3
공원, 산책로	3.3	0.0	2.7	5.4	2.9	4.0
대중교통 수단 내부	0.3	0.0	0.4	1.1	0.0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처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불안을 느끼는 장소로 주거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김학실·이주호(2013)연구결과 역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설계과정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한 결과를 보였다. 이어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별 주거지 불안에 대한 비중은 연립/다세대 48.8%, 고시원/원룸 36.8%, 오피스텔 34.2%, 단독주택 31.3% 순이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10.9%로 가장 낮았다. 또한 주거형태와 주거지 안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 표 III-55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와 주거지 안전 상관관계

구 분	주거지 안전
주거형태	0.17***

주1: ***p<0.01

주2 : 주거형태는 아파트(5), 오피스텔(4), 단독주택(3), 연립/다세대(2), 고시원/원룸(1)임

■ 표 III-56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형태별 주거지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합 계
주거 형태	전 체	(706)	6.1	57.7	35.7	0.6	100.0
	단독주택	(32)	3.1	65.6	31.3	0.0	100.0
	연립/다세대	(255)	6.2	44.9	48.4	0.4	100.0
	아파트	(92)	13.0	76.1	9.8	1.1	100.0
	오피스텔	(205)	3.9	62.0	33.2	1.0	100.0
	고시원/원룸	(152)	5.3	57.9	36.8	0.0	100.0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FGI결과, 주거지 안전은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주거지 층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거주층수는 4층 이상(36.1%), 2층(24.2%), 3층(20.7%), 1층(14.6%), 지하/반지하(4.4%)순이었다. 특히, 지하/반지하를 포함한 저층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개인사생활,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주거지 불안을 겪고 있었다.

“방법창이라고 해야 되나? 집이 오래 되어서 뜯으면 뜯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 날씨가 좋고 이러면 문을 열어놓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번씩 보고 가는 느낌이 든다 거나..”(연립/다세대 1층 거주자, 31세)

거주지 층수는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월평균소득이 낮아질수록 저층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였으나, 53.7%는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의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4층 이상에 거주하는 비중은 29.4%였으며 지하/반지하 7.8%, 1층 2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었다. 즉, 경제적 여건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Ⅲ-57 】 월평균소득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층수

(단위: %)

구 분		지하/ 반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상	총 합	χ²(p)	
월 평 균 소 득	전 체	(706)	4.4	14.6	24.2	20.7	36.1	100.0	-
	최저임금이하	(107)	8.4	22.4	15.0	28.0	26.2	100.0	79.88*** (0.00)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4.6	18.5	35.8	12.1	28.9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3.9	12.3	25.6	28.6	29.6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3.5	7.8	16.5	22.6	49.6	100.0	
	300만 원 이상	(108)	1.9	12.0	20.4	10.2	55.6	100.0	

주: *** $p < 0.01$

FGI결과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주거지 층수가 주거지 안전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거주지가 4층 이상 시 주거지 불안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거지 층수에 의한 주거지 불안은 2층(53.2%), 1층(42.7%), 3층(42.5%), 지하/반지하(42.0%), 4층 이상(18.1%)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거지 층수와 주거지 안전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주거지 층수가 높아질수록 안전인식이 높아짐을 뒷받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 층수는 월평균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거지 층수와 월평균소득과 큰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월평균소득은 주거지 층수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지 층수는 다시 주거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58】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층수, 주거지 안전, 월평균소득 상관관계

구 분	주거지 안전	월평균소득
주거지 층수	-0.20***	-0.09***

주: ***p<0.01 **p<0.05 *p<0.10

【표 III-59】 거주지 층수별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약간 불안	매우 불안	총 합	
주거지층수	전 체	(706)	6.1	57.7	35.7	0.6	100.0
	지하/ 반지하	(31)	12.9	45.2	38.7	3.2	100.0
	1층	(103)	1.0	56.3	42.7	0.0	100.0
	2층	(171)	7.6	39.2	53.2	0.0	100.0
	3층	(146)	4.1	53.4	41.1	1.4	100.0
	4층 이상	(255)	7.5	74.5	17.7	0.4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유형 및 주거층수와 더불어 주거지 안전시설에 의한 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범죄발생장소 가능성에 대해 주택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범죄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으나 거주지 불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부재(45.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11.3%)였으며 지하, 반 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9.4%),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9.0%), 혼자 살아서(8.6%)등의 순이었다. 이는 은폐장소의 존재보다 거주지 CCTV, 보안시설 미비가 주는 불안의 크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보안시설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표 Ⅲ-6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 불안의 원인

(단위: %)

구 분	비 중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45.3
주택 관리인의 부재	6.3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11.3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9.0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9.4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4.3
대중교통으로부터 먼 거리	1.2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4.7
혼자 살아서	8.6
총 합	100.0

주 :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256명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주택 10명, 연립/다세대 110명, 아파트 10명, 오피스텔 70명, 고시원/원룸 56명으로 구성됨

주거지 불안의 원인 중 혼자 살아서(8.6%),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4.3%)의 응답비중은 다소 낮았으나 FGI 대상자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불안감, 공용주거로 인한 두려움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정보가 낮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택배, A/S 등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배달음식 조차 시켜먹지 못하는 불안에 시달렸다.

“방음이 잘 안되니까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할 용통이 있는데 거기 막 술병들이 있으면 괜히 좀 무섭고.”

(연립/다세대 거주자, 27세)

“배달음식 안 시켜먹거든요 무서워서..그리고 A/S 받을 때도 거의 A/S 기사님들이 남자잖아요 솔직히 무서워요. 혼자 있는데 집에 들어야 되니까 뭔가 무섭고...A/S오시는 분들 다 진짜 열이면 열 남자 분들이 오시니까..그래서 문을 열어놔요. 언제든 달려 나갈 수 있게..”

(연립/다세대 거주자, 30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불안과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이라는 이중적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81.0%가 안전교육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안전교육 경험은 정규교육, 고등교육정도와 상관없이 없었으며, 여성안전교육에 대해 큰 필요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성안전에 대한 정책이 용방법 등 정보제공은 요구되었다.

“여성안전에 관한 교육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중략) 어두운 골목에는 이어폰을 빼고 걸어가세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가요? 집 앞이 어두운 골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교육이 실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서울시에서 하는 안전서비스(안심귀가스카우트)를 홍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립/다세대 거주자, 27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SNS 등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활용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교육이나 팁 뭐 그런 거를 정보성으로 볼 수 있게..아 (서울시에)이런 정책이 있구나,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거주자, 31세)

표 III-61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경험여부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총 합	$\chi^2(p)$
교육 수준	전 체	(706)	19.0	81.0	100.0
	고졸이하	(97)	21.7	78.4	100.0
	전문대졸	(121)	11.6	88.4	100.0
	대학교졸	(422)	20.1	79.9	100.0
	대학원졸	(66)	21.2	78.8	100.0
					-
					5.40 (0.15)

주: *** $p < 0.01$ ** $p < 0.05$ * $p < 0.10$

한편, 주관적 범죄노출정도에 있어서 연령대,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남성 1인가구보다 범죄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89.8%는 남성 1인가구보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출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10.2%에 불과하였다. 앞선 조사를 통해 평소 안전과 주거지 안전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 거주자는 남성 1인가구 대비 주관적 범죄노출정도에서도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80.5%에 달하였다.

【표 Ⅲ-62】 남성 1인가구 대비 주관적 범죄노출정도

(단위: %)

구 분		매우 노출됨	대체로 노출됨	별로 노출되지 않음	전혀 노출되지 않음	총 합	$\chi^2(p)$
연령 대 별	전체	29.6	60.2	10.1	0.1	100.0	-
	20-24세	29.5	56.8	13.7	0.0	100.0	5.68 (0.77)
	25-29세	28.9	61.1	10.0	0.0	100.0	
	30-34세	32.2	59.3	8.1	0.4	100.0	
	35-39세	26.8	62.2	11.0	0.0	100.0	
주 거 형 태	단독주택	37.5	56.3	6.3	0.0	100.0	36.10*** (0.00)
	연립/다세대	35.1	59.6	5.3	0.0	100.0	
	아파트	29.4	51.1	19.6	0.0	100.0	
	오피스텔	18.5	69.3	12.2	0.0	100.0	
	고시원/원룸	34.9	55.3	9.2	0.7	100.0	

주: ***p<0.01 **p<0.05 *p<0.10

3.1.6. 청년여성 1인가구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 관해 조사한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TV/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여가활동에 대해 TV/비디오 시청은 55.2%였으며, 다음으로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가 11.6%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습활동(8.2%), 독서/신문/잡지보기(7.4%) 등의 순이었다. 주말 역시 TV/비디오 시청이 28.1%로 가장 높았으나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이 19.7%였으며 나들이/여행도 14.7%를 차지하였다.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적 시간이 많은

주말에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보내는 비중이 높은 모습이었다.

Ⅰ 표 Ⅲ-63 Ⅰ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평일/주말 여가활동 1순위

(단위: %)

구 분	평일	주말
TV/비디오 시청	55.2	28.1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	11.6	9.4
독서/신문/잡지보기	7.4	4.5
컴퓨터/게임	9.6	7.2
나들이/여행	1.1	14.7
학습활동	8.2	2.1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	1.7	4.8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3.1	19.7
종교활동	0.4	5.5
봉사활동	0.1	1.0
기 타	1.4	3.0
총 합	100.0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TV/비디오 시청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의 TV/비디오 시청 응답비중은 21.1%였으나 25-29세 26.5%, 30-34세 27.1%, 35-39세 35.4%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은 11.6%(20-24세), 6.2%(25-29세), 3.0%(30-34세), 1.8%(35-39세)로 감소하였다.

표 Ⅲ-64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 주말 여가활동 1순위

(단위: %)

구 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TV/비디오 시청	21.1	26.5	27.1	35.4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	11.6	9.0	7.6	11.0
독서/신문/잡지보기	2.1	5.2	3.8	6.1
컴퓨터/게임	6.3	6.2	7.6	8.5
나들이/여행	7.4	15.2	19.5	11.6
학습활동	3.2	3.3	1.3	1.2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	11.6	6.2	3.0	1.8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23.2	19.4	19.9	17.7
종교활동	10.5	5.2	4.2	4.9
봉사활동	0.0	1.9	1.3	0.0
기 타	3.2	1.9	4.7	1.8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주: 총 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여가활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였다(김순미·홍성희, 1996; 손재영, 2012). 그러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TV/비디오 시청 비중이 가장 높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요구되는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나들이 비중이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주말에 문화관람을 즐기는 비중은 18.7%를 보였는데 이는 두 배 이상 월평균소득을 가진 300만 원 이상 청년여성 1인가구(17.6%)보다 1.1%p 높다. 이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여가생활을 향유함에 있어서 소득에 의한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Ⅲ 표 Ⅲ-65 Ⅲ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 주말 여가활동 1순위

(단위: %)

구 분	최저임금 이하	135-200 만 원	200-250 만 원	250-300 만 원	300만 원 이상
TV/비디오 시청	25.2	32.4	28.1	26.1	25.9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	7.5	8.7	9.9	12.2	8.3
독서/신문/잡지보기	5.6	3.5	3.0	5.2	7.4
컴퓨터/게임	9.4	6.9	6.9	7.0	6.5
나들이/여행	8.4	13.3	19.7	13.0	15.7
학습활동	6.5	1.7	0.0	3.5	0.9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	6.5	5.2	3.9	4.4	4.6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18.7	16.2	24.1	20.0	17.6
종교활동	10.3	8.1	0.5	4.4	7.4
봉사활동	0.0	0.0	2.0	1.7	0.9
기 타	1.9	4.1	2.0	2.6	4.6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총 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여가시간의 충분함에 있어서 청년여성 1인가구의 45.7%는 부족(매우 부족함 + 부족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6%만이 충분(충분함 + 매우 충분함)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을 갖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25.0%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여가시간 만족도를 보였으나 반대로 부족하다는 응답(매우 부족함 + 부족함)또한 47.2%를 보여 여가시간의 양극화를 가진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표 Ⅲ-66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소득수준별 여가시간 충분정도

(단위: %)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그저 그렇다	충분함	매우 충분함	총 합	χ²(p)	
연령대	전 체	(706)	5.2	40.5	37.7	15.3	1.3	100.0	-
	20-24세	(95)	4.2	51.6	34.7	6.3	3.2	100.0	18.40 (0.11)
	25-29세	(211)	4.7	40.3	41.2	12.8	1.0	100.0	
	30-34세	(236)	5.9	37.3	35.6	20.3	0.9	100.0	
	35-39세	(164)	5.5	39.0	37.8	16.5	1.2	100.0	
월 평 균 소 득	최저임금 이하	(107)	7.5	37.4	39.3	14.0	1.9	100.0	36.42** (0.03)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7.5	38.7	36.4	15.0	2.3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1.5	47.8	37.4	13.3	0.0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7.0	31.3	47.8	11.3	2.6	100.0	
	300만원 이상	(108)	4.6	42.6	27.8	25.0	0.0	100.0	

주: ***p<0.01 **p<0.05 *p<0.1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일이 너무 바빠서(29.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24.8%)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8.9%), 쉬고 싶어서(8.4%) 등의 순을 보였다.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일이 바빠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중은 24.3%였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300만 원 이상의 경우 39.8%에 달하였다. 반면, 300만원 이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20.4%였으나 소득이 내려갈수록 증가하여 최저임금이하의 경우 32.7%였다. 즉, 월평균소득이 올라갈수록 일이 너무 바빠서 여가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응답비중은 낮았다.

Ⅱ 표 Ⅲ-67 Ⅱ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소득수준별 여가활동 어려운 이유

(단위: %)

구 분	전 체	최저임금 이하	135- 200만 원 미만	200- 250만 원 미만	250-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일이 너무 바빠서	29.8	24.3	24.9	30.1	32.2	39.8
경제적 부담 때문에	24.8	32.7	33.0	23.7	11.3	20.4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8.9	7.5	5.8	9.9	12.2	10.2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6.2	6.5	6.9	6.4	7.0	3.7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5.4	5.6	5.8	6.9	0.9	6.5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5.5	2.8	6.9	4.9	4.4	8.3
하기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7.5	8.4	4.1	7.9	13.9	4.6
쉬고 싶어서	8.4	5.6	9.8	7.9	13.9	3.7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3.1	6.5	1.7	2.0	4.4	2.8
기 타	0.4	0.0	1.2	0.5	0.0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은 친구 또는 이웃(61.5%)이 가장 많았으며 25.2%는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경우는 8.6%에 불과하였으며 동호회 등 단체 회원(3.4%), 기타(1.3%)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는 가족보다는 주로 친구 또는 이웃,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의 34.6%는 여가를 혼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 역시 51.4%로 타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이 우려된다.

■ 표 Ⅲ-68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형태별/소득별 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
(단위: %)

구 분		가 족	친구 또는 이웃	동호회 등 단체 회원	기 타	혼 자	총 합	χ²(p)	
전 체		(706)	8.6	61.5	3.4	1.3	25.2	100.0	-
근 로 형 태	정규직	(394)	8.6	61.9	4.1	1.5	23.9	100.0	-
	비정규직	(276)	8.0	62.3	2.5	1.1	26.1	100.0	
	자영업자	(36)	13.9	50.0	2.8	0.0	33.3	100.0	
월 평 균 소 득	최저임금이하	(107)	7.5	51.4	4.7	1.9	34.6	100.0	22.28 (0.13)
	135만원- 200만원 미만	(173)	4.6	64.2	1.2	1.7	28.3	100.0	
	200만원- 250만원 미만	(203)	10.3	64.0	3.0	1.5	21.2	100.0	
	250만원- 300만원 미만	(115)	11.3	64.4	4.4	0.9	19.1	100.0	
	300만 원 이상	(108)	10.2	59.3	5.6	0.0	25.0	100.0	

주: ***p<0.01 **p<0.05 *p<0.10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p)$ 값을 제시하지 않음)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소득계층 중 여가생활의 공유대상뿐만 아니라 고민대화상대가 없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고민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10.6%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하의 경우 이보다 8.1%p 높은 18.7%였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민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중도 1.1%(20-24세)에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35-39세는 13.4%였다.

표 Ⅲ-69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연령별/소득수준별 고민대화상대 유무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총 합	$\chi^2(p)$
연령대	전체	(706) 89.4	10.6	100.0	12.18*** (0.01)
	20-24세	(95) 99.0	1.1	100.0	
	25-29세	(211) 90.1	10.0	100.0	
	30-34세	(236) 86.9	13.1	100.0	
	35-39세	(164) 86.6	13.4	100.0	
월평균소득	최저임금이하	(107) 81.3	18.7	100.0	13.42*** (0.01)
	135만원-200만원 미만	(173) 93.1	6.9	100.0	
	200만원-250만원 미만	(203) 91.1	8.9	100.0	
	250만원-300만원 미만	(115) 92.2	7.8	100.0	
	300만 원 이상	(108) 85.2	14.8	100.0	

주: ***p<0.01

3.1.7. 청년여성 1인가구 정책수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을 조사한 결과, 주택안정(44.6%)과 여성안전(39.8%)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0.9%), 가족 내 관계망 지원(0.3%)으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감, 원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비중은 높았으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요구 역시 매우 낮은 3.3%에 불과하였다. 근로형태별, 월평균소득별 정책수요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안전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주택안정 요구가 증가하였다. 주택안정을 요구한 20-20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26.3%였으나 25-29세 40.8%, 30-34세 52.1%, 35-39세 49.4%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여성안전 필요성에 대해 20-20세의 경우 63.2%를 보여 주택안정 응답비중보다 36.9%p 높았다. 하지만 25-29세로 이동하면서 여성안전 응답비중은 주택안정 비중과 동일한 40.8%였고, 30-34세부터는 여성안전의 필요성이 주택안정보다 낮은 32.6%, 35-39세 35.4%로 낮아졌다.

표 Ⅲ-70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1순위 정책수요

(단위: %)

구 분		주택 안정	여성 안전	경제적 여건 개선	건강 증진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가족내 관계망 지원	총 합	
연령 대별	전체	(706)	44.6	39.8	7.8	3.3	3.4	0.9	0.3	100.0
	20-20세	(95)	26.3	63.2	5.3	1.1	3.2	1.1	0.0	100.0
	25-29세	(211)	40.8	40.8	7.1	7.1	2.8	1.0	0.5	100.0
	30-34세	(236)	52.1	32.6	9.3	1.3	3.4	0.9	0.4	100.0
	35-39세	(164)	49.4	35.4	7.9	2.4	4.3	0.6	0.0	100.0
근로 형태	정규직	(394)	45.4	40.6	6.9	2.3	3.6	1.0	0.3	100.0
	비정규직	(276)	44.6	40.2	7.3	4.0	2.9	0.7	0.4	100.0
	자영업	(36)	36.1	27.8	22.2	8.3	5.6	0.0	0.0	100.0

주: 경제적 여건 개선: 구인·구직정보, 능력개발 등, 건강증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의미함

주택안정 정책을 요구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세부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5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신미림(2011), 설동필(2012)등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인가구 중심의 중대형 주택공급으로 인한 정책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형주택은 중·대형주택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아 주택마련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24.1%)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양가족 순으로 순위부여를 하는 현 임대주택 입주조건 등 임대주택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에 대한 요구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이 13.0%로 나타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대출 우대 상품에서 1인가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낮은 주거비, 사회관계망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닌 공동체 주택은 10.2%만이 1순위로 꼽아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택안정 정책수요

(단위: %)

구 분		비 중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	(166)	52.7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	(32)	10.2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76)	24.1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41)	13.0
총 합	(315)	100.0

한편, 앞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거주지 불안 원인 중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정책을 요구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안전 세부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외진 곳, 골목길 등에 가로등 및 CCTV 증설을 포함하는 주택 주변 환경 개선(43.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남성과 공용주거로 인한 두려움에서 보았듯이 청년여성 1인가구는 1인가구 전용 원룸형 주택(23.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간 보안업체(CAPS, ADT 등)와 협력을 통한 주거지 안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장치(19.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미 서울시에서 여성안전정책으로 시행중인 정책이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안전정책의 홍보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주택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출입구 및 현관 도어락, 방범창 등 설치지원을 포함하는 주택 내부 환경개선도 13.5%로 나타나 주거지 내·외부에 대한 안전이 56.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정책요구는 0.4%에 불과하였다.

【 표 Ⅲ-72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정책수요

(단위: %)

구 분	전체	20-20세	25-29세	30-34세	35-39세
	(N=281)	(N=60)	(N=86)	(N=77)	(N=58)
여성 1인가구 전용 원룸형 주택	23.1	18.3	18.6	20.8	37.9
주택 주변 환경 개선	43.4	50.0	41.9	37.7	46.6
주택 내부 환경 개선	13.5	18.3	11.6	16.9	6.9
위급상황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장치	19.2	13.3	26.7	23.4	8.6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0.4	0.0	1.2	0.0	0.0
기 타	0.4	0.0	0.0	1.3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중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을 1순위로 꼽은 조사대상은 55명에 불과하였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차별개선(43.6%)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18.2%),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정보(14.6%), 싱글여성 특화 공공근로사업(14.6%), 연락이 두절된 부양가족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개선(9.1%)순이었다. 1~3위 응답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근로형태별 정책수요를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이상(53.7%)이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차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역시 43.8%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직장 내 차별문제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여성이 겪고 있으며,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표 Ⅲ-7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경제적 지원 정책수요

(단위: %)

구 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N=55)	(N=194)	(N=136)	(N=20)
연락이 두절된 부양가족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9.1	13.4	7.4	0.0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차별개선	43.6	43.8	53.7	25.0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정보	14.6	17.0	18.4	45.0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18.2	17.5	15.4	5.0
싱글여성 특화 공공근로사업	14.6	7.7	5.2	25.0
기 타	0.0	0.5	0.0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3.1.7. 소결

본 장에서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706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 유입경로, 경제,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도출했다.

□ 직장과의 거리 및 개인적 편의로 인한 자발적 1인가구 유입, 1인가구 생활만족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94.6%는 미혼이었으며, 이혼/사별 등의 다양한 1인가구 유입경로를 지닌 다른 세대에 비해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유입비중이 높았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61.5%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8.7%)와 고령여성 1인가구(0.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유입보다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1인가구를 선택한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20-24세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로 인해 1인가구로 유입된 비중은 79.0%에 달하였으나 35-39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44.5% 수준이었다. 반면에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1인가구로 유입된 비중이 15.8%였으나 35-39세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이보다 20.2%p 높은 36.0%이었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 고령여성 1인가구보다 더 높은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63.9%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 45.8%, 고령여성 1인가구 30.4%였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이혼/사별 등에 의한 비자발적 유입보다 자발적 유입비중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경제적 문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1인가구 생활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정규직(74.1%)에 비해 21.0%p 낮은 52.2%수준에 그쳤다. 또한 월평균소득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경제적 여건이 1인가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경제적 어려움(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32.6%로 나타나 정규직(22.8%)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6.4%),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1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 및 교육수준별 낮은 월평균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높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비중

서울시 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38.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65.8만원 낮은 172.7만원이었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15.2%는 최저임금이하(135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의 27.2%가 최저임금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규직(6.4%)에 비해 20.8%p 높았다. 즉,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는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낮은 소득수준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근로형태와 소득은 개인의 교육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고졸이하 청년여성의 19.6%는 최저임금이하 소득을 받고 있었으나 대학원졸 이상 청년여성은 1.5%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대학원졸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의 경우, 34.9%에 달하였으나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5.2%

수준이었다.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2.8만원이었으며 전문대졸 200.2만원, 대학교졸 213.6만원, 대학원졸 277.7만원으로 조사되어 고졸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학원졸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62.2%에 그쳤다.

이와 같은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는 주거환경으로 직결되었다.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청년여성 1인가구의 15.9%는 5평 미만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200-250만원 1.0%, 250-300만원 0.9%, 300만 원 이상 0.0%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하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5.1%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 중 무려 42.1%는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월평균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은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전세형태 거주로 인한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부모 지원에 의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중장년여성 및 고령여성 1인가구에 비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거주비중이 높았으며, 연립/다세대(39.9%), 아파트(27.5%), 오피스텔(14.2%), 고시원/원룸(9.8%), 단독주택(8.7%) 순이었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의 자가 점유비중은 6.2%수준으로 중장년여성 1인가구(51.0%)보다 44.8%p 낮았으며, 고령여성 1인가구(70.0%)에 비해 무려 63.2%p 낮았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불안정이 매우 높은 계층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비 마련을 위해 33.7%가 부모나 친지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64.5%에 달하였고 135-150만원 37.6%, 200-250만원 25.6%, 250-300만원 27.8%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

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마련 후 월세 등 주거비에 대해 74.2%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을 가진 계층이라 할지라도 73.3%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층거주와 안전 시설 미비로 인한 주거지에서의 불안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5.4%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에서 범죄발생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층 이상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지하/반지하, 1층, 2층, 3층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가 더 큰 불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상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8.1%만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나 지하/반지하(42.0%), 3층(42.5%), 1층(42.7%), 2층(53.2%) 순으로 불안감이 높아졌다.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11.3%),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9.4%) 등의 순이었다. 이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주택안정과 여성안전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택안정(44.6%)과 여성안전(39.8%)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주택안정 중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52.7%)이 가장 많았다. 여성안전에 있어서는 주거지 내·외부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5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제적 여건 개선(7.8%)과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3.4%), 건강증진(3.3%) 등의 정책요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있어서 주거와 안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되었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직면한 주거불안정과 불안한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점유형태 및 안전 결정요인 실증분석

3.2.1. 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분석모형 및 방법

앞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 주거, 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현황을 교차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는 엄밀하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예컨대, 근로형태별-점유유형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자가, 전세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월평균소득이 높거나 또는 고용안정, 대출규모의 차이 등이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즉, 근로형태에 의한 점유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근로형태와 더불어 월평균소득, 대출유무 등 점유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근로형태가 갖는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점유유형과 안전여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연령범위를 20세~39세로 정의한 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 706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주거, 안전,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거비 부담,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여성 1인가구 자신의 비용부담이 점유유형 또는 주거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로 제한하였다. 또한 관측지가 매우 적어 분석이 불가능한 사글세, 무상, 임대형태의 점유유형은 제외하여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총 6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점유형태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하였으며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인적특성과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다항로짓 모형은 2개 이상의 명목척도로 이루어진 종속변수일 때 사용하는 모형으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반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총 4개의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점유형태 간에는 순서가 없는 명목변수이다. 모형에서 개인 i 는 4개의 선택($j \in$ 자가, 전세, 반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특별히 j 번째를 선택하는 이유를 j 선택 시의 효용이 가장 크다고 가정한다. 이때의 효용은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관찰되지 않는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U_j = V_j + \epsilon_j, \quad j = 1, 2, 3, 4 \quad (\text{식1})$$

V_j 는 설명변수로 설명이 가능한 효용함수이며, 나머지 항은 일반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오차항이다. 4개의 점유형태 중에서 특정한 점유형태 j 를 선택하는 이유는 식(1)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Pr(y=j) &= \Pr(U_j > U_k, \text{ all } k \neq j) \\ &= \Pr(U_k - U_j < 0, \text{ all } k \neq j) \\ &= \Pr(\epsilon_k - \epsilon_j < V_j - V_k, \text{ all } k \neq j) \end{aligned} \quad (\text{식2})$$

만약, 총 4개의 점유형태 중 1번째를 선택하였다면 식(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Pr(y=j) &= \Pr(\epsilon_2 - \epsilon_1 < V_1 - V_2, \epsilon_3 - \epsilon_1 < V_1 - V_3, \epsilon_4 - \epsilon_1 < V_1 - V_4) \\ &= \int_{-\infty}^{V_1 - V_2} \int_{-\infty}^{V_1 - V_3} \int_{-\infty}^{V_1 - V_4} f(\epsilon_2 - \epsilon_1, \epsilon_3 - \epsilon_1, \epsilon_4 - \epsilon_1) d(\epsilon_2 - \epsilon_1, \epsilon_3 - \epsilon_1, \epsilon_4 - \epsilon_1) \end{aligned} \quad (\text{식3})$$

위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보다 하나가 적은 수의 다중적분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오차항의 분포를 가정해야 하는데, 제1종 극단값 분포를 가정하면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epsilon_j) = \exp(-\epsilon_j) \exp(-\exp(\epsilon_j)) \quad (\text{식4})$$

이러한 오차항의 분포 하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면 식(3)의 다중적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출된다.

$$\Pr(y=1) = \frac{e^{V_1}}{e^{V_1} + e^{V_2} + e^{V_3} + e^{V_4}} \quad (\text{식5})$$

이제 식(1)의 확정적 효용 V_j 를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V_{i1} = x_i\beta_1, \dots, V_{i4} = x_i\beta_4$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5)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y = 1) = \frac{e^{x_i\beta_1}}{e^{V_{x_i\beta_1}} + e^{V_{x_i\beta_2}} + e^{x_i\beta_3} + e^{V_{x_i\beta_4}}} \quad (\text{식6})$$

다항로짓모형은 일반적으로 각각 β_i 를 추정하는 방법과 다르게 $\beta_i - \beta_j$ 를 추정하므로 계수 식별을 위해 기준범주를 두어 승산(odds)을 산출한다. 기준범주를 1로 하였을 때, 승산은 다음과 같다.

$$\frac{\Pr(y_i = 2)}{\Pr(y_i = 1)} = \frac{e^{x_i\beta_2}}{e^{x_i\beta_1}} = \exp(x_i(\beta_2 - \beta_1)), \quad \frac{\Pr(y_i = 3)}{\Pr(y_i = 1)} = \frac{e^{x_i\beta_3}}{e^{x_i\beta_1}} = \exp(x_i(\beta_3 - \beta_1)) \quad (\text{식7})$$

이처럼 식(7)은 $\beta_2 - \beta_1, \beta_3 - \beta_1$ 을 추정할 뿐 각각의 모수를 추정하지 못하므로 기준범주를 두어 개별 모수를 추정한다. 가령, $\beta_1 = 0$ 을 기준범주로 한다면 식(7)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rac{\Pr(y_i = 2)}{\Pr(y_i = 1)} = \frac{\Pr(y_i = 2)}{\Pr(y_i = 1)} = \exp(x_i(\beta_2 - \beta_1)) \quad (\text{식8})$$

따라서 4개의 점유유형 선택이 가능할 때, 3개의 이항 로짓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다항로짓인데, 이항 로짓모형과 마찬가지로 최우추정량을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 = \sum_{i=1}^n \sum_{j=1}^m I(y_i = j) \ln \Pr(y_i = j | x_i) \quad (\text{식9})$$

한편,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Ⅲ-74 변수 기초통계량

구 분	변수명	구 분	빈도,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종속 변수	점유형태	자가	44	6.5
		전세	245	36.3
		반전세-월세	73	10.8
		보증금 있는 월세	313	46.4
설명 변수	연령(세)		30.6	4.55
	교육수준	고졸이하	89	13.2
		전문대졸	118	17.5
		대졸	403	59.7
		대학원졸	65	9.6
	근로형태	정규직	383	56.7
		비정규직	260	38.5
		자영업	32	4.7
	월평균소득(만원)		215.5	79.70
	월평균 저축액(만원)		63.0	51.91
	월평균 생활비(만원)		83.7	46.72
	주택자금 마련 방법	본인자금	297	41.3
		차용대출	168	24.9
		부모지원(무상환)	228	33.8
	내 집 마련의 필요성	필요함	563	84.4
		필요 없음	112	16.6
	부채유무	있음	173	25.6
		없음	502	74.4
	부채규모(만원)		649.4	1891.26

3.2.2.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결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증분석 결과, 주로 연령과 주택자금 마련의 방법, 월평균소득과 생활비, 부채를 포함하는 경제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대별 추정된 모수값을 살펴보면,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보다 30-34세 청년여성 1인가구가 보증금 있는 월세 대신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14.2배, 35-39세의 경우 무려 39.1배 높았다. 즉, 높아질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였다. 반면, 25-29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가뿐만 아니라 전세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25-29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20-24세보다 보증금 있는 월세 대신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2.1배, 25-29세의 경우 4.2배, 35-39세는 11.0배로 나타났다. 자가에 비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택 확률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반전세 월세에 있어서 35-39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29세 청년여성 1인가구는 20-24세 청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보증금 있는 월세 대신 반전세 월세를 선택할 확률이 4.2배, 30-34세의 경우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안정적인 혹은 매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점유형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한 연령 증가에 의한 주거형태에 대한 가치관이나 미래 고용에 대한 안정성 등이 향후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택자금 마련방법에 있어서 차용대출 또는 부모의 지원이 있는 청년여성 1인가구가 자가, 전세에 거주하는 확률이 높았다. 차용대출을 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본인자금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한 여성보다 보증금 있는 월세 대신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19.2배 높았다. 부모지원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본인자금 청년여성 1인가구보다 보증금 있는 월세 대신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25.6배로 매우 높았다. 전세 역시 차용대출 청년여성 1인가구가 7.2배, 부모지원은 3.5배로 나타나 본인자금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청년여성에 비해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자가 선택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지원으로 인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반전세 월세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정적 주거유형으로 가기 위해 본인의 자금보다 부모의 도움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용대출 의존도 역시 높아 주택대출로 인한 빈곤 가속화의 문제 또한 우려된다.

또한 월평균소득에 있어서 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자가, 전세, 반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확률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월평균 생활비는 1.0이하를 보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낮고 월평균 생활비가 낮은 청년여성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근로형태와 교육수준은 점유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점유형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크게 부모의 지원, 차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 표 III-75 】 서울시 청년여성 점유형태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점유형태 (자가-1, 전세-2, 반전세 월세-3, 보증금 있는 월세-기준)			
변수명	자가	전세	반전세 월세
연령대(5세 단위): 기준변수 20-24세			
25-29세	5.38 (0.13)	2.07** (0.04)	4.18** (0.03)
30-34세	14.17** (0.02)	4.17*** (0.00)	4.60** (0.02)
35-39세	39.05*** (0.00)	11.04*** (0.00)	2.67 (0.19)
교육수준: 기준변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0.15** (0.03)	0.90 (0.77)	1.38 (0.55)
대학교졸	0.52 (0.23)	0.81 (0.48)	1.08 (0.87)
대학원졸	1.13 (0.87)	1.28 (0.57)	0.60 (0.49)
주택자금 마련방법: 기준변수 본인자금			
차용대출	19.15*** (0.00)	7.21*** (0.00)	1.98* (0.08)
부모지원	25.61*** (0.00)	3.48*** (0.00)	0.73 (0.41)
내 집 마련의 필요성: 기준변수 필요함			
필요 없음	0.32 (0.14)	0.98 (0.93)	1.74* (0.10)
근로형태: 기준변수 정규직			
비정규	0.50 (0.13)	0.80 (0.32)	0.84 (0.60)
자영업	0.83 (0.84)	0.97 (0.96)	1.36 (0.63)

경제상태: 기준변수 부채 있음

ln(월평균소득)	4.03** (0.03)	2.08** (0.02)	4.20*** (0.01)
ln(월평균생활비)	0.40*** (0.00)	0.44*** (0.00)	0.53*** (0.01)
부채 없음	2.83** (0.03)	2.38*** (0.00)	0.99 (0.97)

***p<0.01 **p<0.05 *p<0.10

주1: base outcomes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하여 추정함

주2: 위의 결과표는 추정 후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값을 제시한 것임

3.2.3. 안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및 방법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 점유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안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다양한 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앞서 점유유형 실증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안전에 관한 교차분석 시 다양한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가령,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연립/다세대보다 안전한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거주지의 층수가 고려되지 않은 문제 등이다. 즉,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연립/다세대보다 더 고층이기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장점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증분석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하나의 변수가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 안전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이는 4점 척도(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 별로 안전하지 않음, 전혀 안전하지 않음)로 구성되어있다.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학력을 범주화하여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거주층수, 이사 횟수, 현 주거지의 안전정도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운동 횟수, 안전교육 경험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평소 안전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고민대화상대의 수도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 고려한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 안전은 앞서 분석한 점유형태와 다르

게 매우 불안부터 매우 안전까지 순서가 존재하는 변수⁹⁾이다. 즉, 종속변수가 서열을 갖기 때문에 앞서 점유형태 분석방법인 다항로짓이 불가능하며 순서형 변수를 고려한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모형을 활용하였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매우 불안, 대체로 불안, 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 총 4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며 관찰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y_i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begin{aligned} y_i &= 1, \quad y_i^* \leq \delta_1 \quad (\text{매우 불안 선택}) \\ y_i &= 2, \quad \delta_1 < y_i^* \leq \delta_2 \quad (\text{대체로 불안 선택}) \\ y_i &= 3, \quad \delta_2 < y_i^* \leq \delta_3 \quad (\text{대체로 안전 선택}) \\ y_i &= 4, \quad \delta_3 < y_i^* \quad (\text{매우 안전 선택}) \end{aligned}$$

위의 식에서 $\delta_i, i=1,2,3$ 는 절사점(cutoff point)으로 추정되어야 할 파라메타의 수를 의미한다. 즉, 종속변수가 4개의 범주를 갖을 때 절사점은 이보다 1개의 수가 적은 3개의 절사점을 추정한다. 이를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개인 i 가 j 번째 선택을 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때 $y_i = \alpha + x_i\beta + \epsilon_i$ 의 모형을 가정한다.

$$\begin{aligned} \Pr(y_i = j) &= \Pr(\delta_{j-1} < y_i^* \leq \delta_j) \quad (\text{식1}) \\ &= \Pr(\delta_{j-1} < \alpha + x_i\beta + e_i \leq \delta_j) \\ &= \Pr(\delta_{j-1} - (\alpha + x_i\beta) < e_i \leq \delta_j - (\alpha + x_i\beta)) \\ &= F(\delta_j - (\alpha + x_i\beta)) - F(\delta_{j-1} - (\alpha + x_i\beta)) \end{aligned}$$

여기서 F는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의 분포를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한다. 또한 상수항 α 는 $\delta_j - \alpha$ 로 추정되므로 따로 추정이 불가능하다. 식(1)을 통해 추정된 계수는 수학적으로 편미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음의 식을 통해 한계효과를 추정한다.

9) 매우 불안은 1, 대체로 불안 2, 대체로 안전 3, 매우 안전 4로 코딩되어 있는 순서형 변수임

$$\begin{aligned}\frac{\partial \Pr(y_i = j)}{\partial x_i} &= \frac{\partial F(\delta_j - x_i\beta)}{\partial x_i} - \frac{\partial F(\delta_{j-1} - x_i\beta)}{\partial x_i} \\ &= \beta[f(\delta_{j-1} - x_i\beta) - f(\delta_j - x_i\beta)]\end{aligned}\quad (\text{식2})$$

로지스틱 분포에서 $F(x) = 1/[1 + \exp(-x)]$ 를 활용하여 승산비(odds ratio)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mega(x)_j = \frac{1}{\exp(\delta_j - x_i\beta)} \quad (\text{식3})$$

식(3)에 로그를 취하면 위험정도와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ln \Omega(x)_j = \delta_j - x_i\beta \quad (\text{식4})$$

최종적으로 설명변수 단위가 증가할 때, 기존보다 몇 배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승산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frac{\Omega(x + \Delta x)_j}{\Omega(x)_j} = \frac{\exp(\delta_j - x_i\beta)}{\exp(\delta_j - (x_i + \Delta x_i)\beta)} = \exp(\beta) \quad (\text{식5})$$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Ⅲ 표 Ⅲ-76 Ⅲ 변수 기초통계량

구 분	변수명	구 분	빈도,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종속 변수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 안전	매우 불안함	24	3.4
		대체로 불안함	291	41.2
		대체로 안전함	383	54.3
		매우 안전함	8	1.1
설명 변수	연령대	20-24세	95	13.5
		25-29세	211	29.9
		30-34세	236	33.4
		35-39세	164	23.2
	교육수준	고졸이하	97	13.7
		전문대졸	121	17.1

구 분	변수명	구 분	빈도,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대졸	422	59.8
		대학원졸	66	9.4
	혼자 거주한 기간(년)		5.1	3.68
	월평균소득(만원)		211.7	80.98
	근로형태	정규직	394	55.8
		비정규직	276	39.1
		자영업	36	5.1
	주거형태	단독주택	32	4.5
		연립/다세대	225	31.9
		아파트	92	13.0
		오피스텔	205	29.0
		고시원/원룸	152	21.5
	거주층수	지하/반지하	31	4.4
		1층	103	14.6
		2층	171	24.2
		3층	146	20.7
		4층 이상	255	36.1
	주관적 신체건강	건강하지 않음	43	6.1
		보통임	182	25.8
		건강함	481	68.1
	운동 횟수	안함	43	6.1
		매달 1~2회	135	19.1
		매주 1~4회	446	63.2
		거의 매일	82	11.6
	주관적 정신건강	건강하지 않음	42	6.0
		보통	199	28.2
		건강함	465	65.9
	안전(범죄예방, 대처 등)교육 경험	있음	134	19.0
		없음	572	81.0
	주거환경 불안 (주거지 내·외부 안전시설 여부)	없음	204	28.9
		있음	502	71.1

3.2.4.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영향요인 분석결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고려하였으나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보듯이 추정된 모수값의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효과 산출을 위해 최적모형을 선별함에 있어서 AIC값이 가장 낮은 모형3을 최종모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모형들을 통해 주거환경과 안전시설, 건강이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소득, 근로형태 등의 경제적 상태와 주관적 정신건강, 교육수준,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인터뷰를 통해 낯선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하였는데, 안전시설과 거주층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거주형태 분석결과 역시 유사하였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단독주택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원룸에 거주할 경우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거주층수와 안전시설을 통제하였다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공간과 다수가 동일한 건물 안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비교로 볼 수 있는데 다수가 거주할 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층 이상 거주자에 비해 저층(1층, 2층, 3층)에 거주하는 경우의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저층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 및 여성 1인가구 주택공급 시 저층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거층수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CCTV, 방범창, 골목길 CCTV, 유흥가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안한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역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안전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건강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청년여성 1인가구에 비해 운동을 자주하는 경우, 더 높은 불안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건강에 관한 변수가 다수 누락되어 발생하는 문제일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폭행 등에 취약하여 운동을 하는 경우 모두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청년여성 1인가구가 있는 여성에 비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드러났다.

표 Ⅲ-77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영향요인 추정결과

구 분	모형 1	모형2	모형3
연령대: 기준변수 20-24세 및 1인가구 기간			
25-29세	0.40	0.39	0.40
30-34세	0.59*	0.59**	0.60**
35-39세	0.33	0.33	0.34
혼자 거주한 기간	0.01	0.01	-
교육수준: 기준변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0.22	0.22	-
대학교졸	0.45*	0.43*	-
대학원졸	0.25	0.23	-
경제상태: 기준변수 정규직(근로형태)			
ln(월평균소득)	0.00	-	-
비정규직	0.06	-	-
자영업자	0.19	-	-
주거형태: 기준변수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0.78*	-0.77*	-0.76*
아파트	-1.02**	-1.01**	-0.93**
오피스텔	-1.16**	-1.15**	-1.09**
고시원/원룸	-0.90**	-0.89*	-0.82*
거주층수: 기준변수 4층 이상			
지하/반지하	-0.04	-0.06	-0.21
1층	-0.83***	-0.81***	-0.81***
2층	-1.04***	-1.04***	-1.04***
3층	-0.45*	-0.45*	-0.41*
주관적 신체건강: 기준변수 건강하지 않음			
보통	1.09***	1.08***	0.87***
건강함	0.99**	0.99**	1.13**
운동 횟수: 기준변수 안함			
매달 1~2회	-0.26	-0.25	-0.21
매주 1~4회	-0.81**	-0.81**	-0.71**
거의 매일	-0.69	-0.70*	-0.60
주관적 정신건강: 기준변수 건강하지 않음			
보통	-0.53	-0.52	-
건강함	0.06	0.06	-

구 분	모형 1	모형2	모형3
안전교육 경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0.56**	-0.57***	-0.58***
주거환경 불안: 안전시설 있음			
안전시설 없음	-0.44***	-0.44***	-0.44***
AIC	1192.71	1187.00	1186.78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각 변수가 안전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우선,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안전에 대해 두 가지 대안(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안전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70.6%이었으며 연립/다세대는 56.5%, 아파트 52.9%, 오피스텔 49.4%, 고시원/원룸 55.3%로 나타났다. 이 중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21.2%p로 가장 나타났는데 이를 단독주택 거주가 안전에 미치는 한계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층수에 있어서도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64.1%를 보이며 1층 46.6%, 2층 42.3%, 3층 55.7% 지하/반지하 5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확률을 보인 2층과의 차이는 21.8%p로 나타나 주거형태보다 더 높은 한계효과를 보였다. 주거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안전시설이 마련된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58.3%였으나 반대의 경우 48.8%로 나타나 안전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한계효과는 9.5%p였다. 또한 건강에 있어서 건강할 경우 57.4%가 안전하다고 응답할 확률을 보였으나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32.9%로 나타나 확률효과는 15.4%p로 나타났다.

표 Ⅲ-78 안전영향요인 한계효과

구 분		변수명	한계효과	최대-최소
주거	주거형태	단독주택	0.706	0.000
		연립/다세대	0.565	0.142
		아파트	0.529	0.177
		오피스텔	0.494	0.212
		고시원/원룸	0.553	0.154
	거주층수	지하/반지하	0.599	0.042
		1층	0.466	0.175
		2층	0.423	0.218
		3층	0.557	0.085
		4층 이상	0.641	0.000
주변 환경 안전시설 (CCTV, 방범창 등)		있음	0.583	0.000
		없음	0.488	0.095
건강		건강하지 않음	0.329	0.154
		보통	0.518	0.029
		건강함	0.574	0.000

3.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 조사결과

3.3.1. 조사개요

앞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 주거, 안전을 설문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로서의 삶, 주거환경과 안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이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다세대/연립거주자,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자 등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여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로 연립/다세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공동체주택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자 공동체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도 인터뷰하여 과거 연립/다세대와 비교하여 현 거주지(오피스텔)의 장·단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다만, 조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거환경과 안전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직에 다소 치우친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 III-79 FGI 조사 참여자 특성

사례	참여자	연령	경제활동상태	지역	특성
A	김△△	20대 후반	아르바이트	마포구	연립/다세대 거주
B	김○○	30대 초반	정규직	강남구	연립/다세대 거주
C	김□□	30대 초반	정규직	마포구	연립/다세대 거주
D	황△△	30대 초반	정규직	서초구	연립/다세대 거주
E	김○○	20대 후반	프리랜서	서초구	연립/다세대 거주
F	안□□	20대 후반	정규직	마포구	오피스텔 거주
G	조△△	30대 후반	정규직	마포구	오피스텔 거주
H	박○○	20대 중반	비정규직	서대문구	공동체주택 거주
I	성□□	20대 중반	비정규직	서대문구	공동체주택 거주
J	김○○	20대 후반	정규직	용산구	연립/다세대 거주
K	원△△	20대 후반	정규직	강동구	연립/다세대 거주

3.3.2. 자발적 1인가구 유입과 원가족과의 관계

□ 경제적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만족도로 인한 현 가구형태 유지경향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로 인해 자발적 1인가구로 유입되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 역시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가구가 된 이후 원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부모님이랑 관계는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나아졌어요...(중략)...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나고 해서 자주 찾아뵙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례A)

그러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가족과 합가(合家)를 원하지는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자유도 좋지만, 인터넷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한다거나...(중략)...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지금 너무 아까워서 무조건 만족도가 높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또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다 포함하면은 자유보다 나올까싶은 생각도 요즘에는 좀 들고, 근데 부모님과 다시 합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합치고 싶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혼자 사는 어려움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사례B)

또한 조사 참여자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업무강도, 부모님과 거주 시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1인가구를 유지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평일에는 업무처리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일주일에 한 번은 출근을 꼭 하는 편이기도 해요. 잔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인데 (부모님께 방문하면) 충전되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계속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일하는 기분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돼요.” (사례F)

3.3.3.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

□ 안전시설 미비,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대응방법 전무

조사에 참여한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의 열악한 안전시설, 이로 인한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층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낙후된 안전시설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주로 창문과 베란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조금 오래 되가지고 뜯으면 약간 뜯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흔들다보면) 막 덜컥덜컥 하거든요. 제 힘으로 뜯을 수는 없겠지만 남자가 힘으로 하면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죠.” (사례C)

“옆집이랑 베란다가 이어져있는데 철문 같이 자물쇠가 되어있긴 되어 있는데 사실 넘어오면 설마 그거 하나 못 뚫고 올라 싶고.. 준비해서 진짜 마음먹고 들어오면...(중략)...더군다나 베란다가 후미진 곳으로 되어있어서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사례B)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 낯선 사람에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범죄의 대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접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며 지내거나 집수리 등으로 집주인과의 마찰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고 피해를 보는 현실이었다.

“옆집에 남자가 살거든요. 40-50대 되시는 거 같은데, 방음이 복도에서는 잘 안되니까 집안에서 이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행색도 좀 안 좋아서 괜히 편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복도에 재활용통 있는데, 저도 물론 술을 좋아하지만 거기 막 술병들이 막 소주 이런 게 있으면 괜히 좀 무섭고 그래요.” (사례A)

“윗집에 남자가 살았는데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엄마가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사례E)

이처럼 주거지 안전시설에 대한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자의 누구도 집주인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여성안전을 여성 당사자의 몫으로 전가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하나 인터뷰 결과, 여성폭력에 대해 막연하게 본인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는 안전불감증의 모습도 보였다.

“강남역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불안해요. 근데 막상 뭐 나한테 크게 뭔 일이 있을까? 약간 이런 좀 해이한 마음도 살짝 들고. ...(중략)... 딱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없고 그냥

무섭다? 정도로 생각만해요. 겪어본 게 없어서 그런가.” (사례C)

“이게 안전불감증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위험하게 보였는데 살다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다녀도 뭐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무서우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사례K)

“집수리 시 경비실에 비밀번호를 적고 가야하는데 적으려고 보니까 다른 집 비밀번호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되게 찜찜하고...(중략)... 근데 저는 뭐 안전불감증이라 도둑이 바꿨다고 생각하고 안 오겠지 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안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을 잘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런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누가 초인종 눌러서 뭔가 고치러 왔다고 하면 그냥 열어주는 편이에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연립/다세대에 살아도 그냥 열어줄 것 같아요. 직접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사례F)

“집주인이랑 마찰이 생겼을 때 이거를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 여자 혼자 살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나? 이런 기분도 들도 여자라서 무시하는 느낌도 있고...(중략)... 계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친구를 불러서 남편 행세를 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사례E)

☐ 주거지 안전보다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에 대해 우선적 고려

앞서 다양한 통계들과 인터뷰를 통해 청년여성 1인가구는 스스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주거지 선택 시 안전한 환경보다 주거지의 비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과의 거리가 주된 1인가구 유입경로였던 청년여성의 특성에서 보았듯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도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역세권, 변화가에서 다소 떨어진 골목 등 후미진 곳 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립/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주거지의 안전한 환경보다 우선적으로 접근성, 주거비용을 고려하다보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집을 알아볼 때 풀 옵션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려면 돈이 드니까..월세도 내 수준에 좀 적당해야 됐어요. 그리고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새로 지은 건물로 찾게 되고...(중략)...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정도? 카메라(CCTV)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집구할 때” (사례A)

“집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 뭐 회사라든가 좀 변화한 곳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런 곳은 비싸니까...(지금 집은)생활하다 보니까 벌레 나오고, 골목 끝에 있고 뭐...안전장치도 없고 그냥 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

다보니까 여유가 생기면 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례C)

“돈이 없으니까 웨어하우스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같이 살면서 제가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솔직히 안 살고 싶더라고요. 여건이 되면 원룸이어도 독립된 내 공간에서 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골목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례D)

□ 자연감시가 가능한 주거환경 및 여성전용주거 환경 선호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대의 으스스한 골목,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 지역 등을 안전하지 주거환경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하나·김선화, 2015). 그러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인터뷰 결과 조용한 주택밀집 지역보다 오히려 상가 밀집 지역을 매우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불안과 안전에 대한 의견이 각각 존재하였다. 우선, 다수의 인파, 취객 등의 범죄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서 한 15분밖에 안 걸리기는 하는데 이게 모텔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좀 있고..뭔가 유흥문화가 그 쪽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골목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어폰을 빼고 지나간다던가..안 들릴 수 있으니까” (사례C)

그러나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범죄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더 많은 조사 참여자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동인구가 자연감시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등의 불안감은 존재하였다.

“사람이 밤늦게까지 다니는 곳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늦게까지 하는 가게들도 많고 제가 어디서 당하더라도 막 뛰쳐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성추행 같은 게 일어날 지언정 큰 사고는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소리를 질렀을 때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더 안전한 거 같아요.” (사례A)

“유흥가 쪽에 사는데 오히려 늦게까지 그러는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소리 지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 (사례B)

3.3.4. 청년여성 1인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주거비 지출과 경제적 부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립/다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주거지 안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모습도 관찰되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불안과 경제적 부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성추행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져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네 번 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전에 살던 집(원룸)이 강남의 변화가에서 바로 뒤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집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입을 막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막 비명 지르고 하나까 도망가더라고요. …(중략)…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진짜 변화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오피스텔)로 왔는데 월세가 제 월급 1/3정도(70만원)고 노후 같은 게 좀 걱정되죠.” (사례G)

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더 높은 주거비용과 더불어 주거 면적이 좁아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경비아저씨가 계시고 그런 거는 사실 가격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전용면적이 6평정도 되거든요. 진짜 엄청 좁아요. 진짜 좁은 원룸인데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가격(월세 45만원)이면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곳은 그래도 15평 구할 수 있어요. 관리비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관리비만 별도로 13만 원정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안전 때문에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도 어쩔어찌 지내는 거 같아요.” (사례F)

3.3.5. 공동주거로 인한 장점 및 애로사항

□ 낮은 주거비 부담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반면 사생활 보장 및 공급량 부족의 문제

앞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구는 공동체 주택이 고립감해소에 부정적(50.7%)이며 사생활보장이 어려운 것(80.3%)으로 여겼다. 반면, 공동체 주거로 인한 낮은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동체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경제적 부담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장점을 보였다. 그러나 2인 1실의 공간과 주방, 화장실의 공유로 인해 불편함, 적은 공급량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공동체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최소한의 독립 공간(1인 1실)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같이 살고 있는 분들 모두 (주거비)싸서 들어온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주거비가 싸고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싼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죠 당연히. …(중략)… 싸고 신축건물이라 깨끗하기도 했고요…(중략)… 옵션(가구)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 (1)

“2인 1실에 살고 있는데 집이니까 개인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부분을 살짝 포기하고 나니까 그냥 그런 부분(개인공간이 없는 것)에서는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략)…음…이 가격에 이 집? 이런 공동체? 이러면 굉장히 설득 가능한 금액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례2)

“공동체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좋다고 느끼는데 청년 이후의 삶도 같이 살면 어떨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공동육아 하는 거는 언제? 같이 마을 만들어서 사는 거는 언제? 이런 얘기들이요. 지금하고 있는 미래의 불안감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례2)

조사에 참여한 공동체주택 거주자는 두 명에 불과하였으나, 주거비는 각각 23만원(보증금은 월세의 2.5배)과 11만원(보증금 2,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조사 참여자에게 공동체주택 월세기준은 20만원 미만 수준이었으며 주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공동체 주거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일단 단체생활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공동으로 산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월 20~30만원 월세까지 내야 된다면 굳이... (중략)...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고시원 중에서 화장실이 딸린 곳은 20만 원 더 비싸게 받거든요. 화장실이 중요한 프라이버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공용이라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사례A)

“공동체주택 주거비가 고시원이랑 비슷하면 차라리 방음이 잘되고 화장실이 딸려있는 고시원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좁더라도... (중략)... 저는 어차피 밥을 잘 안 해먹기 때문에 부엌만 공유하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례C)

☐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접근성 부족

서울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 주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공동체주택에 소통하기 위한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 주거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와 나아가 주민과의 교류, 청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저렴한 공급 비용과 건물 주인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높은 역세권보다 다소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는 한계를 보였다.

“(공간이 없어서)공동체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중략)... 뭔가 재밌는 활동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인데 공간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진짜 잘 쓸 수 있게끔 1층이나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어야 했는데...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H)

“(지금 거주하는 곳은) 교통이 매우 안 좋아요. 사실 썬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려고 해도 환승 한 번 하고 가야하고 편하지는 않아요.” (사례I)

“저렴한 주거비와 공동체 두 가지로 조합이 집을 공급하는데 저렴한 집을 구하려면 교통이 더 안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인데 수리하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사례H)

3.3.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이용경험과 문제점

□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의 불안 및 공급부족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조영미 외, 2015) 여성안심택배 이용경험자는 오히려 안심택배사용이 더욱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제 활동으로 인해 저녁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드문 인적, 어두운 장소 등으로 인해 이용이 꺼려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에 혼자 있을 시 택배수령에 대한 불안이 아닌 여성 혼자 사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안심택배를 이용하고자 했던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부분 집 근처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였다.

“제가 거주하는 근처에 여성안심택배함 설치된 곳이 용산구청이 있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있는 데에 있어요. 근데 제가 (퇴근 후) 저녁 때 물건을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용산구청 뒤쪽 가보셨어요? 뒤가 더 위험해요. 조명도 어둡고. 한남동 공영주차장도 저녁시간에 차만 지나다니고 사람이 없어요. …(중략)…택배함 설치된 곳이 밝고 그렇지 않아요. 약간 불그스름한 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가로등이 쭉 되어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녁 때 그거를 찾으러 가는 길이 더 위험해요.” (사례J)

“안심택배함을 이용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다니는 길목에는 없고 좀 벗어나야지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걸어가도 이용을 해볼까 했는데, 택배를 좀 무거운 거를 받았더니 들고 오는 게 더 번거롭더라고요. 요즘에 좋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따로 택배함이 있더라고요. 무인택배함 같은거. 그런 게 나중에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례D)

“안심택배함 이용 중인데, 너무 양(택배함)이 적어요. 주변에 가구가 그렇게 많은데 진짜 너무 적게 있어서…(중략)…택배아저씨한테 맡겨달라고 하면 꼭 차서 못 맡긴데요. 이왕 할 거면 좀 늘려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A)

□ 여성안심택배의 반품불가 및 장기보관 물품에 대한 패널티 필요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사용의 문제점은 설치공간의 불안과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중 택배반품함의 부재와 장기간 택배를 찾아가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특히, 장기간 택배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비용이 낮아 여성안전택배함의 회전율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사실 이거(여성안심택배)는 반품함이 없어요. 일반적인 택배는 내가 반품하고 싶으면 집으로 오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여성안심택배)는 맡기는 것만 있지 반품함이 없더라고요. 결국에 택배아저씨랑 혼자 있을 때 반품 때문에 만나야 해요. …(중략)…그리고 48시간 이후에 이용요금이 천 원씩 발생해요. 그런데 요금이 너무 낮아서 하루 더 맡기고 말래 이런 식으로 되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택배보관함)이 딱 차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례J)

□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으로 인한 여성 1인가구 정보노출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의 주소와 서명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 여성은 본인의 개인정보 또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불안해하였다.

“제가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역 앞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서비스인데(안심귀가스카우트) 집까지 데려다주신다고. 그래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시고 현관문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수첩에 주소랑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쓰려고 보니까 다른분들 주소도 다 보이고..어떤 분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으신 분도 계시고…(중략)…이거 잃어버리시면 어찌지 뭐 이런 걱정도 들고.” (사례K)

“저희 동네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2인 1조로 다녀요. 명함을 주시면서 필요할 때 부르시라고. 그러다가 한번 늦어가지고 이용한 적이 있는데 수첩에 이름이랑 핸드폰번호, 주소를 적어가지더라고요. 뭔가 활동했다는 거를 증명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인가? 암튼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정보가 너무 노출되어서 좀 불편하고.” (사례E)

□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의 제한점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나 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철역에 내려서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현재의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는 짧은 이용가능 시간과 전철역에서도 도로 이동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심귀갓길 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분들(안심귀갓길 도우미)이 유니폼도 입고 계시고 그래서 의심이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망설이시는 느낌? 생각해보니까 차비도 내셔야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용을 안했어요.” (사례A)

“한 여름에는 사실 밤 10시, 11시여도 사람 많고 막 그렇게 어둡고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로 무섭다 누가 좀 데려다줬으면 좋겠다 싶을 시간이 새벽 2시 넘어서 인데 보니까 그때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겨울이면 해도 일찍 지고 하니까 괜찮은데..” (사례K)

“어머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보호해드려야 할 것 같은..과연 술 취한 성인남자가 시비를 걸거나 했을 때 방어할 수 있을까? 우리 셋이서 싸우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례C)

IV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

1.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지원방안
2. 안전 지원방안
3. 일자리 지원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

1.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지원방안

4.1.1.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 정책목표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여성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서울시 저소득 고령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창출

☐ 현황 및 추진배경

조사결과,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가 점유비중이 매우 낮은 주거불안정 계층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반전세(10.3%), 보증금 있는 월세(44.3%), 사글세(2.8%)에 거주하여 매월 고정적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다. 평균 월세는 반전세 30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40만원, 사글세 20만원 수준이었으며, 보증금 역시 반전세 5,991만원 보증금 있는 월세 2,18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울시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해 청년여성 1인가구 중 41.5%만이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부모님이나 친지의 도움, 대출 등으로 주택비용을 마련하고 있어 주거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비용 마련뿐만 아니라 주거비 또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무려 74.2%는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바꿔 말하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있어서도 서울시의 주거비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주택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보다 보증금/월세가 가장 주택마련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 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안전 역시 요구되었다. 앞서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다소 낮았으나, 주거지에서 불안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모습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거지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주거지 내 안전시설미비(45.3%)를 꼽았는데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된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정책수요에 있어서 주택안정(44.6%)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1인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52.7%)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주택공급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이 더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한계로 인한 주택욕구 해석된다. 또한 여성안전정책을 요구한 청년여성 1인가구는 39.8%로, 주택안정 다음으로 높은 정책수요를 보였다. 특히, 안전을 요구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56.9%는 주택 내·외부 환경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거지 내 안전시설 미비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주거공급과 안전에 대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정책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원활한 청년세대 주거공급을 위해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은 자치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1실 당 5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존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의 개선을 통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주택공급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청년주택의 건설·공급)
- 서울시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 사업내용

기존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개선을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주거공급과 주거지 안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주거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을 위한 부지확보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주거공급 부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점, 고령여성 1인가구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고령여성 1인가구 주택 리모델링 개선 및 청년여성 1인가구 주택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단독주택 고령여성 1인가구의 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그린벨트 지역 등의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부지 역시 고려된다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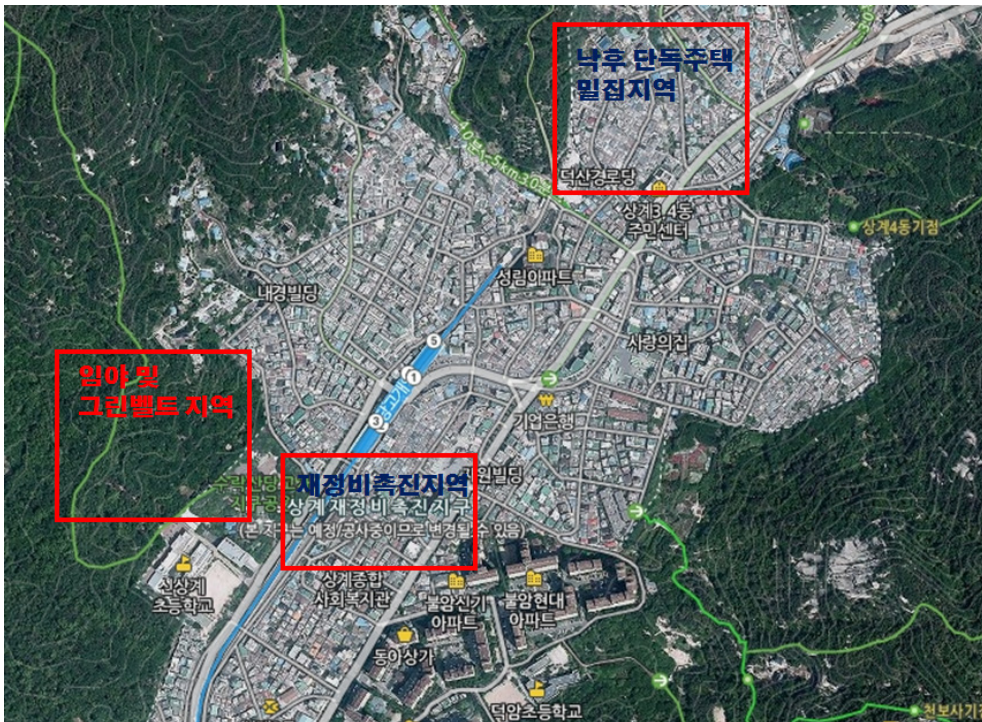
- 청년여성 1인가구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대상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17)
 - 역세권 중심의 자가소유 저소득 고령여성(60세 이상) 1인가구 발굴 및 리모델링 협의
 - ※ 연립/다세대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거취 문제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단독주택 우선 고려
 - 리모델링비 전액지원을 전제로 한 임대료, 임대기간 협의
 - 안전에 취약한 저층은 무인택배함 또는 커뮤니티 공간(카페테리아 등) 등으로 활용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기존)		개선안
사업 대상	• 자가 소유 60세 이상 어르신 • 자치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자가 소유 고령여성 1인가구 ※단독주택 소유 저소득층 우선 • 빈집, 유휴지, 이용률이 낮은 공용부지 등 검토
입주 조건	• 부모의 월평균 소득총 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가구 120% 이하)	• 서울시 거주 여성 1인가구 • 1인가구로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된 여성 ※경쟁 시 소득분위별 우선순위
지원 내용	• 1실 당 5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비 • 무보증금/ 월 임대료 20만원 내외 ※ 전기료, 수도세 등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	• 리모델링비용 전액지원 • 무보증금/월 임대료 20만원 내외 ※ 전기료, 수도세 등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조정
임대 기간	• 기본 1년 ※ 상호간 협의에 의한 기간 연장가능	• 기본 1년 ※상호간 협의에 의한 기간 연장가능
의무 설치 시설	• 없음	• 건물 내 세대간 교류를 위한 공간마련 • 건물 주 출입구 및 복도 CCTV설치 • 건물 1층 무인택배함 설치 • 도어락,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 세대융합형 룸세어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17)
 - 기존 토지소유자(고령여성 1인가구) 유지를 통한 고령여성 1인가구 참여활성화
 - 리모델링을 통한 신축건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요구
 - ※ 토지 및 신축건물 중 1실은 고령여성 1인가구로 유지하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증축된 실에 대한 소유·운영은 서울시로 할 수 있는 방안마련.
 - 특히, 고령여성 1인가구의 사망 시 재산권에 대한 법적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 대규모 공급을 위한 사업적합부지 밀집지역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18~20)
 -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부지확보 및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시 기부채납
 - 역세권 주변 임야(산) 또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한 사업부지 확보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시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이며, 이를 상향조정하여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방안이 요구됨

- 노원구 상계3동의 경우, 역세권 내에 재정비촉진지구와 임야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시범사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여겨짐. 특히, 당고개역은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앞서 제시한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임



4.1.2.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및 대상조건 완화

☐ 정책목표

- 기존 임대주택공급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여성 1인가구로의 대상 확대
-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를 통한 청년여성 1인가구 주택공급
-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 소득 및 자산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심 공급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였으며,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시,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의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과하고 있어 1인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의 대상에 있어서도 신혼부부(30%), 장애인(20%),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구, 철거민(이상 10%), 영구임대거주자(3%),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2%)로 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원룸형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부분 제외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희망하우징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 저소득이 아닌 청년여성 1인가구는 대부분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가 주거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택안정 정책수요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택안정을 요구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24.1%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를 꼽았는데, 이는 정책수요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조건 완화

를 통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정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장기 안심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 공급, 매입임대주택 공급
- 서울특별시 희망하우징 사업

□ 사업내용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주거빈곤 계층인 청년여성 1인가구 역시 포함하여 원활한 주거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서 1인가구를 주택공급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서울시 재건축사업 등 공공주택공급 사업 우선순위에 선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주거빈곤계층인 1인가구가 포함이 요구된다. 특히, 한정된 공급량으로 인해 소득기준에 의할 시 일괄적인 소득기준이 아닌 청년여성 1인가구의 소득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지원자금의 규모 역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 17)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4조(입주자 선정) 개정을 통한 서울시 1인가구 주택공급 우선순위 대상자 포함
- 서울시 재건축사업 등 공공주택공급사업 시행 시 1인가구 우선공급대상자 포함
- 기존 임대주택공급 사업 개선을 통한 1인가구 입주조건 완화(* 18~)
 -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1인가구 우선권 부여 및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필요
 - 역세권 2030 청년주택(충정로역 역세권, 봉화산역 역세권) 공급 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자 청년여성 1인가구 의무배정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2010년 도입된 역세권 시프트 정책과 다소 유사함. 역세권 시프트 정책은 은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용적률이 500%에서 최소 680% 이하로 대폭 완화된 차이를 가짐.

- 의무배정량 및 소득기준 근거마련을 위한 청년여성 1인가구 주택수요 조사
- 장기안심주택을 포함한 주택자금지원정책의 대상자 확대 요구

※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임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임. 또한 재계약시(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전세보증금 10% 이내 범위에 한하여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함

구 분	현재	개선안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세대 1인가구 (신설)
장기 안심 주택	<우선공급 대상> • 신혼부부 20% • 다자녀가구 10%	<우선공급 대상> • 신혼부부 20% • 다자녀가구 10% • 청년여성 1인가구 10% (안)
장기 전세 주택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세 자녀 세대/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5년,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세 자녀 세대/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5년,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년여성 1인가구(안) -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80% 이내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내

구 분	현재	개선안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 선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세대 1인가구 (신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우선순위

2. 안전 지원방안

4.2.1. 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정책목표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 주거환경 조성
- 청년여성 1인가구 안전시설 설치비용 부담경감

☐ 현황 및 추진배경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45.3%는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안전정책요구 역시 주거지 내·외부 환경개선이 56.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는 오피스텔 거주자와 달리 주로 창문, 베란다 등을 통한 외부침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부담, 집주인과의 문제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지원을 통해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서울시민 의견 수렴: 본 연구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대상 설문조사(700명) 및 FGI결과(11명)

□ 사업내용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시설 지원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주거지 안전시설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저층 거주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이를 위해 온라인 설치 지원 신청 페이지가 요구된다.

또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시설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방법창, 주 출입구 보안시설 등 건물 전체 안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집주인이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사업 참여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는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무인택배함 설치 시 우선 고려, 골목길 개선사업 시 우선 고려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참여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안전시설 설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 홍보('17)
 -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위한 온라인 페이지 구축
 - 지하철, 버스 등 노출빈도가 높은 홍보채널을 활용한 여성안전정책 홍보
- 집주인과 협의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집주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7)
 -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시설 설치신청 → 집주인과 협의 후 방법창, 주 출입구 보안시설 등 건물 전체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50%)
 - 집주인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주거지 인근 CCTV 설치 확대 및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여성안심택배 설

- 치 시 우선 고려 → 건물 내·외부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주택가치 향상 기대
- 집주인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

4.2.2.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적극적 확대 및 환경개선

☐ 정책목표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 공급확대를 통한 여성안심택배 이용률 제고
- 여성안심택배 설치장소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는 2013년 50개소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수요와 맞물려 설치장소가 증가하여 2016년 6월 160개소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인 강남구는 4곳에 불과하며, 관악구 역시 8곳에 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인터뷰 결과, 여성안심택배는 매우 한정적인 설치장소와 더불어 설치장소 주변 환경으로 인한 불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성안심택배 공급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및 안전한 환경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서울시민 의견 수렴: 본 연구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결과(11명)

☐ 사업내용

여성안심택배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역 및 공공기관 등 추가적인 설치와 더불어 단순 안심택배함의 공급을 넘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이 조

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에 설치된 안심택배함 주변 환경을 점검하여 어둡거나 인적이 드문 곳을 개선하고, 신규 공급 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24시간 편의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접근성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서울시 지하철역 및 공공기관 등 여성안심택배 추가설치 및 환경개선('17~)
 - 서울시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공용주차장 내 여성안심택배 설치
 - 여성안심택배 설치 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되 어두운 지역의 경우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 청년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설치확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24시간 편의점과 업무협약 체결로 인한 접근성 확대('17~)
 - 무거운 짐, 반품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사업 참여 주택중심의 여성안심택배 설치
 - 다양한 안전시설이 확보된 안전시설 설치사업 참여 주택중심의 여성안심택배 설치

4.2.3.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 및 기능 확대

☐ 정책목표

- 늦은 저녁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지원 및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기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개선방안을 통한 이용률 제고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주5일, 하루 3시간(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스카우트의 대부분은 40~50대 여성(70%)으

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운영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점, 운영 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장년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장한 남성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안심스카우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환승이 필요할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와 서비스 이용 후 여성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추가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는 이용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하절기/동절기 등 기간별로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 MBC언론보도(2016년 6월 18일자 MBC뉴스데스크 집중취재)에 따르면 새벽 1시까지 정책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요일은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정지역에는 스카우트가 배치조차 되지 않음을 지적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 서울시민 의견 수렴: 본 연구의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FGI결과(11명)

□ 사업내용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개선점으로 기존 중장년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스카우트와 지구대 및 자율순찰대의 연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구대 및 자율순찰대와 의 연계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안전뿐만 아니라, 중장년여성 스카우트의 안전을 함께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또한 짧은 이용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스카우트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확보된 인력을 통해 주중/주말, 하절기/동절기 각각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실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은 이용률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 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전화번호, 집주소, 서명 등을 수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더 큰 불안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재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실적을 위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기능강화 및 지구대, 자율순찰대 등과 연계('17~)
 - 안심귀가스카우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력확보 및 2교대 시스템 체계마련
 - 주중/주말 및 하절기/동절기 각각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지구대 또는 자율순찰대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 방안 마련

구 분	기 존	개 선 안
운영시간	• 주5일(월~금) • 저녁10시~새벽1시	• 주5일(월~금) / 주말 • 저녁10시~새벽1시(평일) • 저녁10시~새벽5시(주말, 하절기) • 저녁8시~새벽3시(주말, 동절기)
스카우트 구성	• 2인 1조	• 2인 1조 또는 3인 1조 ※지역 지구대 또는 자율순찰대 등 1인 포함

-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이용 여성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이용실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집주소 등) 수집 → 총 서비스 제공 건수로 대체

3. 일자리 지원방안

4.3.1. 강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 정책목표

- 서울시 기업체의 구인수요와 청년세대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연계
- 청년세대의 믿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 정보제공 및 청년취업 활성화
- 일자리 지원을 통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 지원

□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월평균소득과 1인가구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혼자 사는 어려움 역시 경제적 어려움(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여성 1인가구 중 27.2%는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고용불안과 낮은 소득수준이라는 이중고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은 주거문제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5.9%는 5평 미만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비중이 높았으며, 고시원/원룸 등 더욱 열악한 환경 놓여있었는데, 주거환경은 안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일자리 연계는 151명에 그치고 있다(2015년 기준). 이뿐만 아니라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저소득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신청을 위해 저소득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양적확대와 더불어 취업교육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공서비스형(아동시설 아동돌봄도우미,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사 등)과 경력형성인턴형(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청년활동가 등)으로 나뉘지며, 2015년 기준 417명이 종사하고 있음. 또한 총 11개월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서울시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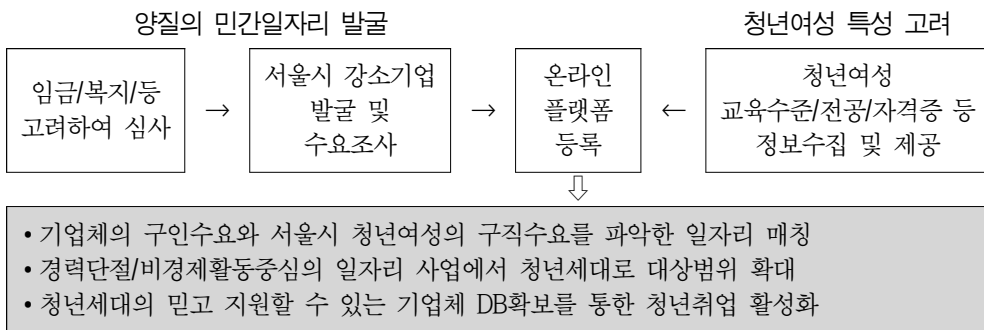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발굴 및 강소기업 구직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은 일자리 사업들은 사업 참여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자리와 연계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는 실수요자(기업체)의 수요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청년여성 1인가구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청년여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 전공, 경력 등의 정보와 인력풀을 구성하고, 수시채용을 위한 서울형 청년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또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강소기업-청년세대를 연결하는 자발적 취업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소재의 강소기업 발굴 및 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구인('17~)
 - 중소기업 일자리 DB 및 자치구 인력을 활용하여 임금수준, 4대 보험 및 후생복지 등을 고려한 강소기업 발굴
 - ※ 강소기업 발굴 시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선정

- 발굴된 서울시 소재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청년여성 인력특성(교육수준, 전공, 경력 등)수요조사 실시

※ 일자리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참여자 특성조사 및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취업연계 (17~)
 -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대상 교육수준, 전공, 경력, 자격증 여부 등 개인특성에 관한 정보수집 및 인력풀 구성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강소기업 수요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
 - 민간 강소기업과 일자리 연계 시 동일 자치구 중심의 취업알선 및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여성도 사업대상자에 포함
- 서울시 청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17~)
 - 기업체의 수시채용 정보 및 청년여성 개인특성 정보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연계뿐만 아니라 자발적 청년취업시장 활성화



4.3.2.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대상자 확대

☐ 정책목표

- 서울시 사업체 경영인 인식개선 및 최저임금미만 청년여성 경제력 회복지원

☐ 현황 및 추진배경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 중 15.2%는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주거, 안전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권리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노동법 실무와 상담기법 등의 교육을 받은 지킴이들(10대~30대)이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을 찾아가 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사업체에 종사자하는 최저임금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는 제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세대 역시 사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 추진근거

- 최저임금법
- 서울시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 및 서울시 뉴딜일자리 권리지킴이 사업

□ 사업내용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청년여성 1인가구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에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 청년권리 지킴이 사업은 아르바이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확한 대상자 선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벌 조치가 요구되고,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의 신고절차 및 증빙서류 등 원활한 신고를 위한 도움서비스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심 근로실태조사 및 사업주 교육프로그램 제공('17~)
 - 음식점, 편의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킴이 사업대상 확대
 - 청년 권리지킴이와 공인노무사가 함께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 및 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법적 준수사항 교육프로그램 제공
- 최저임금미만 사업장 신고 도움서비스 운영('17~)
 -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에 대한 신고 시 신고절차, 증빙서류 등 원활한 신고 및 해결을 위한 도움서비스 운영
 - ※ 현재 최저임금미만 사업장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 증빙(근로시간, 월평균소득 등)을 통해 차액분 지급명령이 이루어짐

>>> 참고문헌

- 구자해·우동주. 2002.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2(2): 123-126.
- 권지웅. 2014. “청년주거실태 진단과 협동형 주거 모델: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LH-Housing 2차 세미나(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자료집: 5-22.
- 권주안·이유진·최혜경. 2007.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4): 1-91.
- 김년희·채정숙. 2005.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 43(1): 85-103.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옥연·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7(2): 37-53.
- 김태완·김문길·정진욱·강성호·윤상용·이주미·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정민·오옥찬·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101-123.
- 박천규·이수옥·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통권(60): 171-187.
- 배병우·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23-38.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7-41.
- 변미리. 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성진용. 2008. “이제는 1-2인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통권(86)
- 신미림·남진. 2011. “서울시 1인가구 주택수요예측.” 『국토계획』 46(4): 131-145.
- 신은진·안건혁. 2010. “소득별 1인가구 거주지 선택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5(4): 69-79.
- 안상수·김인순·이정현·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동훈. 2001.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거시적 주택구입능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 개발학회지』 13(2): 13-32.
- 오정·최정민. 2014. “국내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주거학회』 25(3): 63-72.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단행본
- 이동훈. 2012.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이성은·박홍주·유정민. 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72-80.
- 이재수·양재섭. 2013. “서울의 1인가구 특성과 거주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향 연구.” 『국토계획』 48(3): 181-193.
- 이준우·장민선. 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현정. 2015. “청년 임차가구의 주택보유 의식 및 영향 요인.” 『생활과학연구논총』 19(2): 137-148.
- 장미혜·박복순·노성훈·이훈·정지연. 2015.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민선. 2015.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32.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희주·오동훈. 2014.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95-113.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부동산학연구』 18(2): 19-31.
- 정하나·김선화. 2015.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9(1): 1-21.
- 차경욱. 2006.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최유미·남진. 2008. “서울시 가구특성별 주거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3): 195-210.
- 오정·최정민. 2014. “국내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주거학회』 25(3): 63-72.
- 최은영.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 허미영. 2013.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준. 2013. “여성안전 방법서비스를 통해 본 민간경비와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298-321.

Abstract

A study on young single female-headed households in Seoul and policy implication

Jin-Hee Jang

Family Team, Family Policy Office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With the aim of building the most effective policy levers, this paper discusses dwellings inhabited by young singl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their residential safety in Seoul. For meaningful policy interventions, 700 young female-headed households who work and live in Seoul were subjected to a questionnaire survey, which includes the reason for transition to be a single person household, the status of their finances, living environment, living safety, leisure, and health status as well as social networks. A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ordered logit model are carried out to be examined. In addition, FGI(focus group interview) survey is used as a qualitative supplement for rigorous analysis, which 11 young female-headed household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common reason for transition to be single person household is a commuting distance from home to a place of work or study for. Their life satisfaction is high although they have a hard time getting ahead economically. It is observed that income levels are directly connected to living environment. Especially, 27.2% of contingent workers, who responded to this survey,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ouble torture of job insecurity and low income which is lower than the minimum wage in Korea. Most of them have stayed in monthly rentals rather than their own house or Jeonse, which is specific to Korea and involves depositing a large sum of money with the landlord for the

duration of the lease, resulting in the situation of housing poverty. What is worse is that they have lived under minimum housing standards. Their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influenced the environmental safety and they exhibited depressive symptoms.

In short, respondents in low income are more likely to live i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threaten the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status. The survey says safety policy improvement is highly required. For instance, using safe parcel delivery service boxes is uncomfortable, Get-Home-Safely Scout (safe return home service) is restricted to some condition such as weekend periods and holidays, and residential safety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desirable, such as improving “Room Sharing”, a policy that allows elderly citizens to share spare rooms with college students who are struggling financially; supply of housing customized for single female households; easing regula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ublic rental houses; financial support to install safety facilities in the single female households' living area; expanding safe parcel delivery service boxes for women and Improving environmental requirements; finding reliable and potential small business and encouraging the company to properly offer customized jobs, and so on.

부 록

부록1. 2030 여성 1인가구 설문지

부록2. 3세대 공통문항

부록3. 2세대 공통문항

- 2030 여성 1인가구 및 4050 여성 1인가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 일반적 사항

1. 나이	만 ()세
2.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석사졸 ⑧ 박사졸 (※중퇴의 경우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 현재의 학력으로 간주함)
3.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4. 경제활동상태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하고 있음 ② 안하고 있음 → 조사중단
5. 현 거주지	서울시 ()구

B. 1인가구 삶

문)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문) 현재 귀하가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 ④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 ⑤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 ⑦ 기타 : _____

문)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문)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제적 불안감
- ② 외로움
-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 ⑤ 성(性)적인 문제 해결
- ⑥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⑦ 임종에 대한 불안감
-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 ⑩ 기타 : _____

→ ② 선택 시 문)귀하는 우울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느끼지 않음 ② 아주 가끔 느낌(매달 1~2회) ③ 가끔 느낌(주 1~2회)
- ④ 자주 느낌(주 3~4회) ⑤ 매일 느낌

D. 경제활동 및 상태

[공통/2030] 문)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이외(미상, 분류불능 포함) ⑪기타()

[공통/2030] 문)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사업체)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 ②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금,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 ③ 임시근로자: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혹은 특정한 사업완료의 필요 때문에 고용된 사람
- ④ 무급가족종사자: 급여는 없으나 자가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소득에 기여한 자로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한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

→ ①, ②, ③ 선택 시 문)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②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③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④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류기준

[공통/2030] 문) 현재 귀하의 실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공통/2030] 문) 귀하께서는 이직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_____회 ② 없음

→ ① 선택 시, 문) 이직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낮은 임금수준 | ② 높은 근로시간 |
| ③ 경직된 조직문화 | ④ 계약기간의 만료 등 |
| ⑤ 향후 경력발전의 가능성 | ⑥ 장시간 출퇴근거리 |
| ⑦ 직장상사·동료와의 불화 | ⑧ 직장 내 성차별 |
| ⑨ 개인적 사유(건강악화, 가족문제 등) | |
| ⑩ 정규직으로 오기 위해 | |
| ⑪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유급휴가 불만족 | |
| ⑫ 수당, 퇴직금제도 불만족 | |
| ⑬ 전공·적성에 맞지 않아서 | |

문) 귀하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 3개월간 평균을 말씀해주시요.

문항	소득여부		월평균 소득
세후 월평균 근로소득			_____원
가족의 지원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친척·친구·지인 등의 지원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추가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금융소득(이자소득 등) 및 부동산 임대소득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부조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전배우자의 지원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기타 : _____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공통/2030] 문) 저축을 포함한 귀하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_____원 (※생활비는 저축, 보험료, 개인연금 납입액 등을 포함)

문)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_____원

문) 귀하께서는 미래를 위해 저축, 개인연금 등 준비를 하십니까?

- ① 하고 있음 ② 하고 있지 않음

문)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혼준비를 위해 ② 주택구매를 위해 ③전세금액 상승대비
 ④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⑤ 학자금 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
 ⑥ 노후생활대비 ⑦ 미래 자녀교육 비용
 ⑧ 부모님 부양비 ⑨ 위급한 상황(갑작스런 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⑩ 기타 : _____

문) 귀하께서는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 부채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항	부채여부		부채규모
학자금 대출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주택마련 대출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기타: _____	①있음	②없음	_____원

문) 평소 생활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하층 ② 하층 ③ 중간층 ④ 상층 ⑤ 최상층

문) 귀하께서는 향후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③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④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문) 귀하께서는 2인 이상의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여유롭지 않음 ② 별로 여유롭지 않음
③ 대체로 여유로움 ④ 매우 여유 있음

E. 주거환경 및 주거비용

문)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⑥ 기타 ()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 ① 지하/반지하 ② 1층 ③ 2층 ④ 3층 ⑤ 4층 이상

문) 현 거주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____m² (____평)

문) 귀하는 독립하시고 이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____회 ② 없음

문)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⑤ 거주지의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 ⑥ 교통이 편리해서
- ⑦ 주거면적(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가 좋아서
-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⑩ 기타

문) 귀하는 주택을 구할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부족
- ②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 ③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부족
- ④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

문)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주거지에 만족하십니까? ①만족함 ②만족하지 않음

문) 귀하께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⑤ 주택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외진 곳, 위험한 골목 등이 없어서)
- ⑥ 교통이 편리해서
- ⑦ 주거면적(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가 좋아서
- ⑧ 거주지의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이 좋아서
- ⑨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 ⑩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⑪ 기타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주택 주변 환경이 혼자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함 ② 대체로 안전함 ③ 약간 불안함 ④ 매우 불안함

→ ③, ④선택 시, 문) 현재의 거주지가 불안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요한 원인을 순서대로 선택해주시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
② 주택 관리인의 부재
③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장소 존재
④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
⑤ 지하, 반지하, 저층 등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한 위치
⑥ 남녀 공용주거로 인한 불안감
⑦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먼 거리
⑧ 골목길 안전 시설물 부족(가로등, CCTV 등) ⑨혼자 살아서

문)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집의 점유형태 및 금액은 얼마입니까?

※ 반전세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는 계약 시 고정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포함

- ① 자가: _____억 _____만원
② 전세: _____만원
③ 반전세 월세: 전세금 _____억 _____만원 / 월세 _____만원
④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제외): 보증금 _____억 _____만원 / 월세 _____만원
⑤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_____만원
⑥ 임대(공공임대주택, 보람채, 해뜰나래 등 정부지원 주택): 임대료 _____만원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⑧ 기타 ()

(※ 반전세는 현 거주지 주변 전세시세 50% 이상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 필요)

문)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거지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 하셨습니까?

- ①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대출없음) ② 금융기관 대출(1금융권/2금융권 포함)
 ③ 사금융(3금융권) ④ 직장 내 대출
 ⑤ (매월 상환해야하는) 부모나 친지의 도움
 ⑥ (상환하지 않는)부모나 친지의 도움

→ ②~⑥ 선택 시, 문) 매월 상환하는 금액(원금+이자)은 얼마입니까?

_____만원 _____천원

문)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월세, 사글세, 대출금 상환금액 포함)는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약간 부담됨 ③별로 부담되지 않음 ④부담 없음

문) 귀하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요함 ②필요없음

→ ② 선택 시, 문)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택비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② 직업특성상 이동이 잦아서
 ③ 주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볼까봐서
 ④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해서
 ⑤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이라

문) 다음은 거실,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생활주거지에 관한 의견입니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혼자 생활하지 않아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음				
②	여성들만 거주하여 더욱 안전할 것 같음				
③	공동으로 생활하여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음				
④	공동으로 생활하여 주거비가 더 낮을 것 같음				

F. 안전

문) 귀하는 범죄예방, 대처 등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없음

문) 귀하에게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집 안 ② 주거지 내부 계단 등 은폐장소
 ③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 ④ 대중교통-주거지 이동 공간
 ⑤ 유흥가 밀집지역 ⑥ 공중화장실
 ⑦ 지하주차장 ⑧ 엘리베이터 내부
 ⑨ 공원, 산책로 ⑩ 대중교통 수단 내부

문)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안전함 ②대체로 안전함 ③별로 안전하지 않음 ④전혀 안전하지 않음

→ ③, ④선택 시, 문) 안전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서
 ② 위급상황 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③ 경찰에 대해 신뢰가 안가서
 ④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⑤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해서
 ⑥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⑧ 기타 : ____

문) 귀하는 다음의 범죄유형 중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폭행 ② 성희롱·성폭행 ③ 노상강도 ④ 택시강도
 ⑤ 납치 또는 인신매매 ⑥ 주거 침입 절도

문) 여성 혼자 사는 것이 남성 혼자 사는 가구보다 범죄에 더욱 노출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노출됨 ② 대체로 노출됨 ③ 별로 노출되지 않음 ④ 전혀 노출되지 않음

문) 혼자 사는 것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범죄에 더욱 노출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노출됨 ② 대체로 노출됨 ③ 별로 노출되지 않음 ④ 전혀 노출되지 않음

G. 건강

문)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건강함 ② 대체로 건강함 ③ 보통임 ④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⑤ 전혀 건강하지 않음

문)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건강함 ② 대체로 건강함 ③ 보통임 ④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⑤ 전혀 건강하지 않음

문) 귀하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운동(가벼운 걷기, 실내용 운동 모두 포함)을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한다 ② 자주 한다(주 3-4회)
③ 가끔 한다(주 1-2회) ④ 거의 안 한다(매달 1-2회)
⑤ 안 한다

→ ④,⑤선택 시, 문)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일, 가사, 돌봄 등으로 인해)
④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⑤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⑥ 하기 싫어서
⑦ 기타 : _____

H. 여가

문) 귀하는 평소 무엇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시오.

평일(월~금)		주말(토~일)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TV/비디오 시청 ② 운동(자전거, 등산 등)/헬스 ③ 독서/신문/잡지보기
 ④ 컴퓨터/게임 ⑤ 나들이나 여행 ⑥ 학습활동
 ⑦ 문화관련 취미활동(댄스, 그림 등)
 ⑧ 문화관람(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⑨ 종교활동 ⑩ 봉사활동 ⑪ 기타 : _____

문)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십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또는 이웃 ③ 동호회 등 단체 회원 ④ 기타() ⑤ 혼자

문)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충분한 편이다
 5) 매우 충분하다

문) 여가활동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⑤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하기 싫어서/귀찮아서 ⑧ 쉬고 싶어서
 ⑨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⑩ 기타 _____

I. 관계망

문) 귀하는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있음 ____명
- ② 없음

문)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자녀 ④ 친구 및 이웃
- ⑤ 직장동료 ⑥ 선후배 ⑦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⑨ 기타 () ⑩ 없음

문) 가족과의 소통 및 빈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을 골라주십시오.

	부모	① 월 4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③ 월 1회 미만	④ 없음	⑤ 해당없음
직접만남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전화 또는 문자 연락	부모	①	②	③	④	⑤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K. 정책수요

문)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주택안정 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 ② 여성안전정책 : 안전한 주거환경, 지역사회 등
- ③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인·구직정보, 능력개발 등
- ④ 건강증진 관련 정책 :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 ⑤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⑥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지역사회 공동체, 1인가구 연대 등 참여형 프로그램
- ⑦ 가족 내 관계망 지원 정책: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① 선택 시, 문) 귀하는 주거불안정 문제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비용측면에서 원룸형 소형주택 > 공동체주택임을 가정 하에 응답해주십시오)

- ①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
- ②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
- ③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 ④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 ⑤ 기타 : _____

→ ② 선택 시, 문) 귀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여성1인 가구 전용 원룸형 주택
- ② 주택 주변 환경 개선
: 주택외부의 외진 곳, 골목길 등에 가로등, CCTV 증설
- ③ 주택 내부 환경 개선

: 주택출입구 및 현관 도어락, 방법장 설치 지원

④ 위급상황 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

: 민간 보안업체(CAPS, ADT 등)와의 협력을 통한 주거지 안전, 긴
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제공

⑤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⑥ 기타 : _____

→ ③ 선택 시, 문) 귀하는 경제적(일자리 포함) 문제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연력이 두절된 부양가족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개선

②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차별개선

③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정보

④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⑤ 싱글여성 특화 공공근로사업

⑥ 기타 : _____

→ ④선택 시, 문) 귀하는 건강문제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

②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③ 신체적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④ 금연/금주서비스

⑤ 기타 : _____

부록 2 3세대 공통문항

2030	4050	6080
a-1) 나이	a-1) 나이	a-1) 나이
a-2) 학력	a-2) 학력	a-2) 학력
a-3) 혼인상태	a-3) 혼인상태	a-3) 혼인상태
a-4) 현 거주지	a-4) 현 거주지	a-4) 현 거주지
문1) 혼자 거주 기간	문1) 혼자 거주 기간	문1) 혼자 거주 기간
문2) 혼자 생활 이유	문2) 혼자 생활 이유	문2) 혼자 생활 이유
문3) 만족도	문3) 만족도	문4) 만족도
문4) 곤란한 점	문4) 곤란한 점	문5) 곤란한 점
문8) 주거지선택이유	문27) 주거지선택이유	문14) 주거지선택이유
a-5) 거주주택유형	문26) 거주주택유형	문12) 거주주택유형
문13) 점유형태	문28) 점유형태	문13) 점유형태
문24) 신체건강상태	문31) 신체건강상태	문15) 신체건강상태
문25) 정신건강상태	문32) 정신건강상태	문17) 정신건강상태
문26) 운동빈도	문33) 운동빈도	문18) 운동빈도
문26-1)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33-1)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18-3)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28) 함께 여가를 보내는 대상	문35) 함께 여가를 보내는 대상	문21) 함께 여가를 보내는 대상
문31) 대화상대	문39) 대화상대	문31) 대화상대
문32) 고민상담 상대	문40) 고민상담 상대	문32) 고민상담상대
문33) 연락빈도	문41) 연락빈도	문33) 연락빈도
문35) 현재 직업	문11) 현재 직업	문8-1) 현재 직업
문36) 종사상 지위	문13) 종사상 지위	문8-3) 종사상 지위
문37) 주당근로시간	문17) 주당근로시간	문8-2) 주당근로시간
문43) 생활수준	문2) 생활수준	문11) 생활수준

표 부록2-1 학력

(단위: 명, %)

구 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총 합	
연령	20대	0	0	1	43	44	202	15	1	306
		0.0	0.0	0.3	14.1	14.4	66.0	4.9	0.3	100.0
	30대	0	0	0	53	77	220	47	3	400
		0.0	0.0	0.0	13.3	19.3	55.0	11.8	0.8	100.0
	40대	0	0	3	94	67	80	5	4	253
		0.0	0.0	1.2	37.2	26.5	31.6	2.0	1.6	100.0
	50대	0	2	17	126	50	51	3	2	251
		0.0	0.8	6.8	50.2	19.9	20.3	1.2	0.8	100.0
	60대	0	15	75	172	14	23	1	0	300
		0.0	5.0	25.0	57.3	4.7	7.7	0.3	0.0	100.0
	70대	35	101	105	43	4	10	2	0	300
		11.7	33.7	35.0	14.3	1.3	3.3	0.7	0.0	100.0
	총 합	35	118	201	531	256	586	73	10	1810
		1.9	6.5	11.1	29.3	14.1	32.4	4.0	0.6	100.0

표 부록2-2 혼인상태

(단위: 명, %)

구 분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총 합	
연령	20대	2 0.7	302 98.7	2 0.7	0 0.0	306 100.0
	30대	12 3.0	366 91.5	21 5.3	1 0.3	400 100.0
	40대	20 7.9	120 47.4	81 32.0	32 12.6	253 100.0
	50대	19 7.6	120 47.8	64 25.5	48 19.1	251 100.0
	60대	41 13.7	15 5.0	92 30.7	152 50.7	300 100.0
	70대	23 7.7	2 0.7	31 10.3	244 81.3	300 100.0
	이상					
	총 합	117 6.5	925 51.1	291 16.1	477 26.4	1810 100.0

표 부록2-3 혼자 생활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연령	20대	235	2	1	6	6	56	0	306
		76.8	0.7	0.3	2.0	2.0	18.3	0.0	100.0
	30대	199	22	6	22	19	130	2	400
		49.8	5.5	1.5	5.5	4.8	32.5	0.5	100.0
	40대	30	111	12	15	13	72	0	253
		11.9	43.9	4.7	5.9	5.1	28.5	0.0	100.0
	50대	14	103	31	21	17	63	2	251
		5.6	41.0	12.4	8.4	6.8	25.1	0.8	100.0
	60대	3	204	2	40	26	25	0	300
		1.0	68.0	0.7	13.3	8.7	8.3	0.0	100.0
	70대	0	248	4	21	16	11	0	300
		이상	0.0	82.7	1.3	7.0	5.3	3.7	0.0
	총 합	481	690	56	125	97	357	4	1810
		26.6	38.1	3.1	6.9	5.4	19.7	0.2	100.0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 기타

표 부록2-4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총 합	
연령	20대	4 1.3	41 13.4	65 21.2	162 52.9	34 11.1	306 100.0
	30대	1 0.3	20 5.0	124 31.0	206 51.5	49 12.3	400 100.0
	40대	10 4.0	52 20.6	67 26.5	102 40.3	22 8.7	253 100.0
	50대	10 4.0	44 17.5	90 35.9	84 33.5	23 9.2	251 100.0
	60대	14 4.7	77 25.7	102 34.0	82 27.3	25 8.3	300 100.0
	70대	27 9.0	95 31.7	103 34.3	57 19.0	18 6.0	300 100.0
	이상	9.0	31.7	34.3	19.0	6.0	100.0
	총 합	66 3.6	329 18.2	551 30.4	693 38.3	171 9.4	1810 100.0

표 부록2-5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총 합	
연령	20대	45	65	196	3.59	306
		14.7	21.2	64.1		100.0
	30대	21	124	255	3.71	400
		5.3	31.0	63.8		100.0
	40대	62	67	124	3.29	253
		24.5	26.5	49.0		100.0
	50대	54	90	107	3.26	251
		21.5	35.9	42.6		100.0
	60대	91	102	107	3.09	300
		30.3	34.0	35.7		100.0
	70대	122	103	75	2.81	300
	이상	40.7	34.3	25.0		100.0
	총 합	395	551	864	3.32	1810
		21.8	30.4	47.7		100.0

표 부록2-6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1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령	20대	92	61	69	7	8	58	0	0	11	0	306
		30.1	19.9	22.5	2.3	2.6	19.0	0.0	0.0	3.6	0.0	100.0
	30대	96	56	117	28	7	80	4	3	9	0	400
		24.0	14.0	29.3	7.0	1.8	20.0	1.0	0.8	2.3	0.0	100.0
	40대	64	50	63	26	23	19	3	2	3	0	253
		25.3	19.8	24.9	10.3	9.1	7.5	1.2	0.8	1.2	0.0	100.0
	50대	56	60	75	13	10	23	5	3	6	0	251
		22.3	23.9	29.9	5.2	4.0	9.2	2.0	1.2	2.4	0.0	100.0
	60대	66	76	101	22	2	15	7	1	10	0	300
		22.0	25.3	33.7	7.3	0.7	5.0	2.3	0.3	3.3	0.0	100.0
	70대 이상	50	67	135	16	0	5	22	0	5	0	300
		16.7	22.3	45.0	5.3	0.0	1.7	7.3	0.0	1.7	0.0	100.0
	총 합	424	370	560	112	50	200	41	9	44	0	1810
		23.4	20.4	30.9	6.2	2.8	11.0	2.3	0.5	2.4	0.0	100.0

-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 성적인 문제 해결
 ⑦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기타

표 부록2-7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2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27	45	63	16	4	114	1	4	32	0	306
		8.8	14.7	20.6	5.2	1.3	37.3	0.3	1.3	10.5	0.0	100.0
	30대	36	81	95	26	4	112	7	12	26	1	400
		9.0	20.3	23.8	6.5	1.0	28.0	1.8	3.0	6.5	0.3	100.0
	40대	25	40	67	42	21	32	3	11	11	1	253
		9.9	15.8	26.5	16.6	8.3	12.6	1.2	4.3	4.3	0.4	100.0
	50대	33	55	74	22	17	29	3	5	13	0	251
		13.1	21.9	29.5	8.8	6.8	11.6	1.2	2.0	5.2	0.0	100.0
	60대	47	66	85	34	6	40	9	0	12	1	300
		15.7	22.0	28.3	11.3	2.0	13.3	3.0	0.0	4.0	0.3	100.0
	70대	36	95	79	12	1	24	28	0	25	0	300
		12.0	31.7	26.3	4.0	0.3	8.0	9.3	0.0	8.3	0.0	100.0
	이 상											
	총 합	204	382	463	152	53	351	51	32	119	3	1810
		11.3	21.1	25.6	8.4	2.9	19.4	2.8	1.8	6.6	0.2	100.0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성적인 문제 해결 ⑥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⑦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기타

표 부록2-8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168	59	16	7	18	21	10	6	0	1	306
		54.9	19.3	5.2	2.3	5.9	6.9	3.3	2.0	0.0	0.3	100.0
	30대	168	82	47	13	26	36	25	0	0	3	400
		42.0	20.5	11.8	3.3	6.5	9.0	6.3	0.0	0.0	0.8	100.0
	40대	72	29	53	12	33	39	12	3	0	0	253
		28.5	11.5	20.9	4.7	13.0	15.4	4.7	1.2	0.0	0.0	100.0
	50대	67	46	60	10	30	27	10	1	0	0	251
		26.7	18.3	23.9	4.0	12.0	10.8	4.0	0.4	0.0	0.0	100.0
	60대	47	56	132	26	16	16	6	1	0	0	300
		15.7	18.7	44.0	8.7	5.3	5.3	2.0	0.3	0.0	0.0	100.0
70대 이상	9	58	149	43	22	12	5	0	1	1	300	
	3.0	19.3	49.7	14.3	7.3	4.0	1.7	0.0	0.3	0.3	100.0	
총 합	531	330	457	111	145	151	68	11	1	5	1810	
	29.3	18.2	25.2	6.1	8.0	8.3	3.8	0.6	0.1	0.3	100.0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 교통이 편리해서 ⑦ 주거지 환경(방의 크기, 개수, 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이 좋아서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 표 부록2-9 】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2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46	70	11	11	43	81	34	6	1	3	306
		15.0	22.9	3.6	3.6	14.1	26.5	11.1	2.0	0.3	1.0	100.0
	30대	78	55	28	20	57	93	57	4	2	3	397
		19.6	13.9	7.1	5.0	14.4	23.4	14.4	1.0	0.5	0.8	100.0
	40대	33	14	18	35	29	83	30	6	4	1	253
		13.0	5.5	7.1	13.8	11.5	32.8	11.9	2.4	1.6	0.4	100.0
	50대	49	20	24	19	33	59	39	2	6	0	251
		19.5	8.0	9.6	7.6	13.1	23.5	15.5	0.8	2.4	0.0	100.0
	60대	20	25	53	52	31	66	36	10	6	1	300
		6.7	8.3	17.7	17.3	10.3	22.0	12.0	3.3	2.0	0.3	100.0
	70대	10	26	56	59	21	62	48	5	12	1	300
		3.3	8.7	18.7	19.7	7.0	20.7	16.0	1.7	4.0	0.3	100.0
	이 상											
	총 합	236	210	190	196	214	444	244	33	31	9	1807
13.1		11.6	10.5	10.8	11.8	24.6	13.5	1.8	1.7	0.5	100.0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 교통이 편리해서 ⑦ 주거지 환경(방의 크기, 개수, 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이 좋아서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 표 부록2-10 】 거주주택유형

(단위: 명, %)

구 분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기 타	총 합	
연령	20대	8 2.6	87 28.4	26 8.5	87 28.4	97 31.7	1 0.3	306 100.0
	30대	24 6.0	136 34.0	66 16.5	118 29.5	55 13.8	1 0.3	400 100.0
	40대	11 4.3	91 36.0	104 41.1	37 14.6	10 4.0	0 0.0	253 100.0
	50대	15 6.0	102 40.6	106 42.2	14 5.6	13 5.2	1 0.4	251 100.0
	60대	38 12.7	144 48.0	116 38.7	1 0.3	1 0.3	0 0.0	300 100.0
	70대	61	158	79	0	1	1	300
	이상	20.3	52.7	26.3	0.0	0.3	0.3	100.0
	총 합	157 8.7	718 39.7	497 27.5	257 14.2	177 9.8	4 0.2	1810 100.0

표 부록2-11 점유형태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 합	
연령	20대	12	72	30	166	18	4	3	1	306
		3.9	23.5	9.8	54.2	5.9	1.3	1.0	0.3	100.0
	30대	32	173	43	147	2	2	1	0	400
		8.0	43.3	10.8	36.8	0.5	0.5	0.3	0.0	100.0
	40대	114	97	7	31	0	1	3	0	253
		45.1	38.3	2.8	12.3	0.0	0.4	1.2	0.0	100.0
	50대	143	82	3	12	6	3	2	0	251
		57.0	32.7	1.2	4.8	2.4	1.2	0.8	0.0	100.0
	60대	204	78	3	5	0	10	0	0	300
		68.0	26.0	1.0	1.7	0.0	3.3	0.0	0.0	100.0
	70대	216	60	5	7	1	10	1	0	300
	이상	72.0	20.0	1.7	2.3	0.3	3.3	0.3	0.0	100.0
	총 합	721	561	91	368	27	30	10	1	1810
		39.8	31.0	5.0	20.3	1.5	1.7	0.6	0.1	100.0

① 자가 ② 전세 ③ 반전세 월세 ④ 보증금 있는 월세 ⑤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⑥ 임대(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지원 주택)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⑧ 기타

표 부록2-12 신체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총 합	
연령	20대	1	21	77	143	64	306
		0.3	6.9	25.2	46.7	20.9	100.0
	30대	1	20	105	221	53	400
		0.3	5.0	26.3	55.3	13.3	100.0
	40대	3	15	44	153	38	253
		1.2	5.9	17.4	60.5	15.0	100.0
	50대	5	20	66	131	29	251
		2.0	8.0	26.3	52.2	11.6	100.0
	60대	5	37	117	112	29	300
		1.7	12.3	39.0	37.3	9.7	100.0
	70대	18	96	111	62	13	300
	이상	6.0	32.0	37.0	20.7	4.3	100.0
	총 합	33	209	520	822	226	1810
		1.8	11.5	28.7	45.4	12.5	100.0

표 부록2-13 신체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건강함	평균	총 합	
연령	20대	22	77	207	3.81	306
		7.2	25.2	67.6		100.0
	30대	21	105	274	3.76	400
		5.3	26.3	68.5		100.0
	40대	18	44	191	3.82	253
		7.1	17.4	75.5		100.0
	50대	25	66	160	3.63	251
		10.0	26.3	63.7		100.0
	60대	42	117	141	3.41	300
		14.0	39.0	47.0		100.0
	70대	114	111	75	2.85	300
		38.0	37.0	25.0		100.0
	총 합	242	520	1048	3.55	1810
		13.4	28.7	57.9		100.0

표 부록2-14 정신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총 합	
연령	20대	2	17	84	152	51	306
		0.7	5.6	27.5	49.7	16.7	100.0
	30대	1	22	115	211	51	400
		0.3	5.5	28.8	52.8	12.8	100.0
	40대	0	18	50	146	39	253
		0.0	7.1	19.8	57.7	15.4	100.0
	50대	3	16	55	155	22	251
		1.2	6.4	21.9	61.8	8.8	100.0
	60대	4	27	92	136	41	300
		1.3	9.0	30.7	45.3	13.7	100.0
	70대	15	68	111	85	21	300
	이상	5.0	22.7	37.0	28.3	7.0	100.0
	총 합	25	168	507	885	225	1810
		1.4	9.3	28.0	48.9	12.4	100.0

표 부록2-15 정신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건강함	평균	총 합
연령	20대	19 6.2	84 27.5	203 66.3	3.76 306 100.0
	30대	23 5.8	115 28.8	262 65.5	3.72 400 100.0
	40대	18 7.1	50 19.8	185 73.1	3.81 253 100.0
	50대	19 7.6	55 21.9	177 70.5	3.71 251 100.0
	60대	31 10.3	92 30.7	177 59.0	3.61 300 100.0
	70대	83 27.7	111 37.0	106 35.3	3.10 300 100.0
	이상				
	총 합	193 10.7	507 28.0	1110 61.3	3.62 1810 100.0

표 부록2-16 운동빈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매일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한다	안 한다	총 합
연령	20대	42	88	101	61	14	306
		13.7	28.8	33.0	19.9	4.6	100.0
	30대	40	118	139	74	29	400
		10.0	29.5	34.8	18.5	7.3	100.0
	40대	40	46	90	50	27	253
		15.8	18.2	35.6	19.8	10.7	100.0
	50대	32	60	79	56	24	251
		12.7	23.9	31.5	22.3	9.6	100.0
	60대	60	60	70	55	55	300
		20.0	20.0	23.3	18.3	18.3	100.0
	70대	49	71	61	51	68	300
	이상	16.3	23.7	20.3	17.0	22.7	100.0
	총 합	263	443	540	347	217	1810
		14.5	24.5	29.8	19.2	12.0	100.0

표 부록2-17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연령	20대	11	12	29	3	10	8	2	75
		14.7	16.0	38.7	4.0	13.3	10.7	2.7	100.0
	30대	10	4	29	10	22	28	0	103
		9.7	3.9	28.2	9.7	21.4	27.2	0.0	100.0
	40대	14	2	26	6	8	21	0	77
		18.2	2.6	33.8	7.8	10.4	27.3	0.0	100.0
	50대	11	3	34	4	13	15	0	80
		13.8	3.8	42.5	5.0	16.3	18.8	0.0	100.0
	60대	12	2	55	9	16	16	0	110
		10.9	1.8	50.0	8.2	14.5	14.5	0.0	100.0
	70대	13	2	11	4	67	22	0	119
		10.9	1.7	9.2	3.4	56.3	18.5	0.0	100.0
	이상								
	총 합	71	25	184	36	136	110	2	564
		12.6	4.4	32.6	6.4	24.1	19.5	0.4	100.0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일, 가사, 돌봄 등으로 인해)
 ④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⑤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⑥ 하기 싫어서 ⑦ 기타

표 부록2-18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

(단위: 명, %)

구 분	가족	친구 또는 이웃	동호회 등 단체 회원	기 타	혼 자	총 합	
연령	20대	21	197	12	6	70	306
		6.9	64.4	3.9	2.0	22.9	100.0
	30대	40	237	12	3	108	400
		10.0	59.3	3.0	0.8	27.0	100.0
	40대	31	136	11	0	75	253
		12.3	53.8	4.3	0.0	29.6	100.0
	50대	15	135	9	2	90	251
		6.0	53.8	3.6	0.8	35.9	100.0
	60대	22	181	25	2	70	300
		7.3	60.3	8.3	0.7	23.3	100.0
	70대	26	182	14	1	77	300
		8.7	60.7	4.7	0.3	25.7	100.0
	총 합	155	1068	83	14	490	1810
		8.6	59.0	4.6	0.8	27.1	100.0

표 부록2-20 고민상담 상대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43	21	3	204	6	4	1	1	18	5	306
		14.1	6.9	1.0	66.7	2.0	1.3	0.3	0.3	5.9	1.6	100.0
	30대	42	62	0	244	13	6	3	0	26	4	400
		10.5	15.5	0.0	61.0	3.3	1.5	0.8	0.0	6.5	1.0	100.0
	40대	9	27	10	142	23	7	0	9	25	1	253
		3.6	10.7	4.0	56.1	9.1	2.8	0.0	3.6	9.9	0.4	100.0
	50대	5	34	18	135	16	6	2	6	28	1	251
		2.0	13.5	7.2	53.8	6.4	2.4	0.8	2.4	11.2	0.4	100.0
	60대	0	39	63	140	6	1	8	9	34	0	300
		0.0	13.0	21.0	46.7	2.0	0.3	2.7	3.0	11.3	0.0	100.0
	70대	0	23	106	112	0	0	5	7	47	0	300
	이상	0.0	7.7	35.3	37.3	0.0	0.0	1.7	2.3	15.7	0.0	100.0
	총 합	99	206	200	977	64	24	19	32	178	11	1810
		5.5	11.4	11.0	54.0	3.5	1.3	1.0	1.8	9.8	0.6	100.0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자녀 ④ 친구 및 이웃 ⑤ 직장동료 ⑥ 선후배
⑦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⑨ 없음 ⑩ 기타

표 부록2-21 현재 직업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 합	
연령	20대	2	41	165	40	42	1	0	1	9	0	5	306
		0.7	13.4	53.9	13.1	13.7	0.3	0.0	0.3	2.9	0.0	1.6	100.0
	30대	10	56	255	36	36	0	2	0	2	0	3	400
		2.5	14.0	63.8	9.0	9.0	0.0	0.5	0.0	0.5	0.0	0.8	100.0
	40대	12	47	64	50	45	0	4	0	10	0	2	234
		5.1	20.1	27.4	21.4	19.2	0.0	1.7	0.0	4.3	0.0	0.9	100.0
	50대	13	32	39	60	60	0	8	0	18	0	2	232
		5.6	13.8	16.8	25.9	25.9	0.0	3.4	0.0	7.8	0.0	0.9	100.0
	60대	3	7	4	44	47	0	7	0	26	1	2	141
		2.1	5.0	2.8	31.2	33.3	0.0	5.0	0.0	18.4	0.7	1.4	100.0
	70대 이상	0	0	0	10	8	0	1	0	7	0	1	27
		0.0	0.0	0.0	37.0	29.6	0.0	3.7	0.0	25.9	0.0	3.7	100.0
총 합	40	183	527	240	238	1	22	1	72	1	15	1340	
	3.0	13.7	39.3	17.9	17.8	0.1	1.6	0.1	5.4	0.1	1.1	100.0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이외(미상, 분류불능 포함) ⑪ 기타

표 부록2-22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총 합	
연령	20대	195 63.7	19 6.2	79 25.8	0 0.0	9 2.9	4 1.3	306 100.0
	30대	297 74.3	8 2.0	72 18.0	0 0.0	12 3.0	11 2.8	400 100.0
	40대	166 70.9	10 4.3	16 6.8	0 0.0	28 12.0	14 6.0	234 100.0
	50대	131 56.5	16 6.9	21 9.1	0 0.0	37 15.9	27 11.6	232 100.0
	60대	34 24.1	32 22.7	32 22.7	0 0.0	25 17.7	18 12.8	141 100.0
	70대	1 3.7	7 25.9	11 40.7	0 0.0	3 11.1	5 18.5	27 100.0
	이상							
	총 합	824 61.5	92 6.9	231 17.2	0 0.0	114 8.5	79 5.9	1340 100.0

표 부록2-23 전반적인 생활수준

(단위: 명, %)

구 분	최하층	하층	중간층	상층	최상층	총 합	
연령	20대	23	138	134	8	3	306
		7.5	45.1	43.8	2.6	1.0	100.0
	30대	13	154	224	9	0	400
		3.3	38.5	56.0	2.3	0.0	100.0
	40대	11	66	150	26	0	253
		4.3	26.1	59.3	10.3	0.0	100.0
	50대	10	79	144	16	2	251
		4.0	31.5	57.4	6.4	0.8	100.0
	60대	12	123	136	24	5	300
		4.0	41.0	45.3	8.0	1.7	100.0
	70대	30	137	119	12	2	300
	이상	10.0	45.7	39.7	4.0	0.7	100.0
	총 합	99	697	907	95	12	1810
		5.5	38.5	50.1	5.2	0.7	100.0

부록 3 2세대 공통문항 - 2030 여성 1인가구 및 4050 여성 1인가구

공통항목		유사항목	
2030	4050	2030	4050
a-1) 나이	a-1) 나이	문4) 곤란한 점	문4) 곤란한 점
a-2) 학력	a-2) 학력	문12) 주거지 안전도	문29) 주거지 안전도
a-3) 혼인상태	a-3) 혼인상태	문24) 신체건강상태	문31) 신체건강상태
a-4) 현 거주지	a-4) 현 거주지	문25) 정신건강상태	문32) 정신건강상태
a-5) 거주주택유형	문26) 거주주택유형	문27) 여가생활 참여도	문34) 여가생활 참여도
a-6) 경제활동상태	문10) 수입목적활동여부	문28) 함께 여가를 보내는 대상	문35) 함께 여가를 보내는 대상
문1) 혼자 거주 기간	문1) 혼자 거주 기간	문29) 여가시간 충분도	문36) 여가시간 충분도
문2) 혼자 생활 이유	문2) 혼자 생활 이유	문32) 고민상담 상대	문40) 고민상담 상대
문3) 만족도	문3) 만족도	문35) 현재 직업	문11) 현재 직업
문8) 주거지선택이유	문27) 주거지선택이유	문38) 이직경험	문14) 몇 번째 직장
문13) 점유형태	문28) 점유형태	문38-1) 이직 이유	문14-1) 이직 이유
문26) 운동빈도	문33) 운동빈도	문39) 소득마련방법	문18) 소득마련방법
문26-1)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33-1)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40-1) 월평균생활비	문19) 월평균생활비
문30)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문37)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문40-2)-8) 상세지출액	문20) 상세지출액
문31) 대화상대	문39) 대화상대	문42) 부채여부	문21) 부채여부
문33) 연락빈도	문41) 연락빈도		
문36) 종사상 지위	문13) 종사상 지위		
문37) 주당근로시간	문17) 주당근로시간		
문43) 생활수준	문2) 생활수준		
문44) 향후 생활수준	문23) 향후 생활수준		

표 부록3-1 학력

(단위: 명, %)

구 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총 합
연령	20대	0	0	1	43	44	202	15	306
		0.0	0.0	0.3	14.1	14.4	66.0	4.9	100.0
	30대	0	0	0	53	77	220	47	400
		0.0	0.0	0.0	13.3	19.3	55.0	11.8	100.0
	40대	0	0	3	94	67	80	5	253
		0.0	0.0	1.2	37.2	26.5	31.6	2.0	100.0
	50대	0	2	17	126	50	51	3	251
		0.0	0.8	6.8	50.2	19.9	20.3	1.2	100.0
	총 합	0	2	21	316	238	553	70	1210
		0.0%	0.2	1.7	26.1	19.7	45.7	5.8	100.0

표 부록3-2 혼인상태

(단위: 명, %)

구 분	기혼	미혼	이혼	사별	총 합	
연령	20대	2 0.7	302 98.7	2 0.7	0 0.0	306 100.0
	30대	12 3.0	366 91.5	21 5.3	1 0.3	400 100.0
	40대	20 7.9	120 47.4	81 32.0	32 12.6	253 100.0
	50대	19 7.6	120 47.8	64 25.5	48 19.1	251 100.0
	총 합	53 4.4	908 75.0	168 13.9	81 6.7	1210 100.0

【 표 부록3-3 】 거주주택유형

(단위: 명, %)

구 분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기 타	총 합	
연령	20대	8	87	26	87	97	1	306
		2.6	28.4	8.5	28.4	31.7	0.3	100.0
	30대	24	136	66	118	55	1	400
		6.0	34.0	16.5	29.5	13.8	0.3	100.0
	40대	11	91	104	37	10	0	253
		4.3	36.0	41.1	14.6	4.0	0.0	100.0
	50대	15	102	106	14	13	1	251
		6.0	40.6	42.2	5.6	5.2	0.4	100.0
	총 합	58	416	302	256	175	3	1210
		4.8	34.4	25.0	21.2	14.5	0.2	100.0

【 표 부록3-4 】 혼자 생활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연령	20대	235	2	1	6	6	56	0	306
		76.8	0.7	0.3	2.0	2.0	18.3	0.0	100.0
	30대	199	22	6	22	19	130	2	400
		49.8	5.5	1.5	5.5	4.8	32.5	0.5	100.0
	40대	30	111	12	15	13	72	0	253
		11.9	43.9	4.7	5.9	5.1	28.5	0.0	100.0
	50대	14	103	31	21	17	63	2	251
		5.6	41.0	12.4	8.4	6.8	25.1	0.8	100.0
	총 합	478	238	50	64	55	321	4	1210
		39.5	19.7	4.1	5.3	4.5	26.5	0.3	100.0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④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⑤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⑦ 기타

표 부록3-5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총 합
20대	4	41	65	162	34	306
	1.3	13.4	21.2	52.9	11.1	100.0
30대	1	20	124	206	49	400
	0.3	5.0	31.0	51.5	12.3	100.0
40대	10	52	67	102	22	253
	4.0	20.6	26.5	40.3	8.7	100.0
50대	10	44	90	84	23	251
	4.0	17.5	35.9	33.5	9.2	100.0
총 합	25	157	346	554	128	1210
	2.1	13.0	28.6	45.8	10.6	100.0

표 부록3-6 1인가구 생활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총 합
연령 20대	45	65	196	3.59	306
	14.7	21.2	64.1		100.0
30대	21	124	255	3.70	400
	5.3	31.0	63.8		100.0
40대	62	67	124	3.29	253
	24.5	26.5	49.0		100.0
50대	54	90	107	3.26	251
	21.5	35.9	42.6		100.0
총 합	182	346	682	3.50	1210
	15.0	28.6	56.4		100.0

표 부록3-7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20대	168	59	16	7	18	21	10	6	0	1	306
	54.9	19.3	5.2	2.3	5.9	6.9	3.3	2.0	0.0	0.3	100.0
30대	168	82	47	13	26	36	25	0	0	3	400
	42.0	20.5	11.8	3.3	6.5	9.0	6.3	0.0	0.0	0.8	100.0
40대	72	29	53	12	33	39	12	3	0	0	253
	28.5	11.5	20.9	4.7	13.0	15.4	4.7	1.2	0.0	0.0	100.0
50대	67	46	60	10	30	27	10	1	0	0	251
	26.7	18.3	23.9	4.0	12.0	10.8	4.0	0.4	0.0	0.0	100.0
총 합	475	216	176	42	107	123	57	10	0	4	1210
	39.3	17.9	14.5	3.5	8.8	10.2	4.7	0.8	0.0	0.3	100.0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 교통이 편리해서 ⑦ 주거지 환경(방의 크기, 개수, 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이 좋아서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표 부록3-8】 현재의 주거지 선택 이유 2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46	70	11	11	43	81	34	6	1	3	306
		15.0	22.9	3.6	3.6	14.1	26.5	11.1	2.0	0.3	1.0	100.0
	30대	78	55	28	20	57	93	57	4	2	3	397
		19.6	13.9	7.1	5.0	14.4	23.4	14.4	1.0	0.5	0.8	100.0
	40대	33	14	18	35	29	83	30	6	4	1	253
		13.0	5.5	7.1	13.8	11.5	32.8	11.9	2.4	1.6	0.4	100.0
	50대	49	20	24	19	33	59	39	2	6	0	251
		19.5	8.0	9.6	7.6	13.1	23.5	15.5	0.8	2.4	0.0	100.0
	총 합	206	159	81	85	162	316	160	18	13	7	1207
		17.1	13.2	6.7	7.0	13.4	26.2	13.3	1.5	1.1	0.6	100.0

-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치안(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⑥ 교통이 편리해서 ⑦ 주거지 환경(방의 크기, 개수, 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층수)이 좋아서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⑩ 기타

【표 부록3- 9】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1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92	61	69	7	8	58	0	0	11	0	306
		30.1	19.9	22.5	2.3	2.6	19.0	0.0	0.0	3.6	0.0	100.0
	30대	96	56	117	28	7	80	4	3	9	0	400
		24.0	14.0	29.3	7.0	1.8	20.0	1.0	0.8	2.3	0.0	100.0
	40대	64	50	63	26	23	19	3	2	3	0	253
		25.3	19.8	24.9	10.3	9.1	7.5	1.2	0.8	1.2	0.0	100.0
	50대	56	60	75	13	10	23	5	3	6	0	251
		22.3	23.9	29.9	5.2	4.0	9.2	2.0	1.2	2.4	0.0	100.0
	총 합	308	227	324	74	48	180	12	8	29	0	1210
		25.5	18.8	26.8	6.1	4.0	14.9	1.0	0.7	2.4	0.0	100.0

-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⑥ 성적인 문제 해결
 ⑦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기타

【 표 부록3-10 】 1인가구 거주 시 곤란한 점 2순위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27	45	63	16	4	114	1	4	32	0	306
		8.8	14.7	20.6	5.2	1.3	37.3	0.3	1.3	10.5	0.0	100.0
	30대	36	81	95	26	4	112	7	12	26	1	400
		9.0	20.3	23.8	6.5	1.0	28.0	1.8	3.0	6.5	0.3	100.0
	40대	25	40	67	42	32	21	3	11	11	1	253
		9.9	15.8	26.5	16.6	12.6	8.3	1.2	4.3	4.3	0.4	100.0
	50대	33	55	74	22	29	17	3	5	13	0	251
		13.1	21.9	29.5	8.8	11.6	6.8	1.2	2.0	5.2	0.0	100.0
	총 합	121	221	299	106	46	287	14	32	82	2	1210
		10.0	18.3	24.7	8.8	3.8	23.7	1.2	2.6	6.8	0.2	100.0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외로움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⑤ 성적인 문제 해결 ⑥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⑦ 임종에 대한 불안감 ⑧ 자녀를 갖기 어려움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기타

【 표 부록3-11 】 점유형태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 합	
연령	20대	12	72	30	166	18	4	3	1	306
		3.9	23.5	9.8	54.2	5.9	1.3	1.0	0.3	100.0
	30대	32	173	43	147	2	2	1	0	400
		8.0	43.3	10.8	36.8	0.5	0.5	0.3	0.0	100.0
	40대	114	97	7	31	0	1	3	0	253
		45.1	38.3	2.8	12.3	0.0	0.4	1.2	0.0	100.0
	50대	143	82	3	12	6	3	2	0	251
		57.0	32.7	1.2	4.8	2.4	1.2	0.8	0.0	100.0
	총 합	301	424	83	356	26	10	9	1	1210
		24.9	35.0	6.9	29.4	2.1	0.8	0.7	0.1	100.0

① 자가 ② 전세 ③ 반전세 월세 ④ 보증금 있는 월세 ⑤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⑥ 임대(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지원 주택)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⑧ 기타

표 부록3-12 신체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총 합
연령	20대	1	21	77	143	64	306
		0.3	6.9	25.2	46.7	20.9	100.0
	30대	1	20	105	221	53	400
		0.3	5.0	26.3	55.3	13.3	100.0
	40대	3	15	44	153	38	253
		1.2	5.9	17.4	60.5	15.0	100.0
	50대	5	20	66	131	29	251
		2.0	8.0	26.3	52.2	11.6	100.0
총 합	10	76	292	648	184	1210	
	0.8	6.3	24.1	53.6	15.2	100.0	

표 부록3-13 신체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건강함	평균	총 합
연령	20대	22 7.2	77 25.2	207 67.6	3.81 100.0
	30대	21 5.3	105 26.3	274 68.5	3.76 100.0
	40대	18 7.1	44 17.4	191 75.5	3.82 100.0
	50대	25 10.0	66 26.3	160 63.7	3.63 100.0
	총 합	86 7.1	292 24.1	832 68.8	3.76 100.0

표 부록3-14 정신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총 합
연령	20대	2	17	84	152	306
		0.7	5.6	27.5	49.7	100.0
	30대	1	22	115	211	400
		0.3	5.5	28.8	52.8	100.0
	40대	0	18	50	146	253
		0.0	7.1	19.8	57.7	100.0
	50대	3	16	55	155	251
		1.2	6.4	21.9	61.8	100.0
	총 합	6	73	304	664	1210
		0.5	6.0	25.1	54.9	100.0

표 부록3-15 정신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건강함	평균	총 합
연령	20대	19	84	203	306
		6.2	27.5	66.3	100.0
	30대	23	115	262	400
		5.8	28.8	65.5	100.0
	40대	18	50	185	253
		7.1	19.8	73.1	100.0
	50대	19	55	177	251
		7.6	21.9	70.5	100.0
	총 합	79	304	827	1210
		6.5	25.1	68.3	100.0

표 부록3-16 운동빈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매일한다	자주 한다	가끔 한다	거의 안한다	안 한다	총 합
연령	20대	42	88	101	61	306
		13.7	28.8	33.0	19.9	100.0
	30대	40	118	139	74	400
		10.0	29.5	34.8	18.5	100.0
	40대	40	46	90	50	253
		15.8	18.2	35.6	19.8	100.0
	50대	32	60	79	56	251
		12.7	23.9	31.5	22.3	100.0
총 합		154	312	409	241	1210
		12.7	25.8	33.8	19.9	100.0

표 부록3-17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합
연령	20대	11	12	29	3	10	8	75
		14.7	16.0	38.7	4.0	13.3	10.7	100.0
	30대	10	4	29	10	22	28	103
		9.7	3.9	28.2	9.7	21.4	27.2	100.0
	40대	14	2	26	6	8	21	77
		18.2	2.6	33.8	7.8	10.4	27.3	100.0
	50대	11	3	34	4	13	15	80
		13.8	3.8	42.5	5.0	16.3	18.8	100.0
총 합		46	21	118	23	53	72	335
		13.7	6.3	35.2	6.9	15.8	21.5	100.0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일, 가사, 돌봄 등으로 인해)
 ④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⑤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⑥ 하기 싫어서 ⑦ 기타

표 부록3-18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

(단위: 명, %)

구 분	가족	친구 또는 이웃	동호회 등 단체 회원	기 타	혼자	총 합	
연령	20대	21	197	12	6	70	306
		6.9	64.4	3.9	2.0	22.9	100.0
	30대	40	237	12	3	108	400
		10.0	59.3	3.0	0.8	27.0	100.0
	40대	31	136	11	0	75	253
		12.3	53.8	4.3	0.0	29.6	100.0
	50대	15	135	9	2	90	251
		6.0	53.8	3.6	0.8	35.9	100.0
	총 합	107	705	44	11	343	1210
		8.8	58.3	3.6	0.9	28.3	100.0

표 부록3-19 여가시간의 충분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그저 그렇다	충분함	매우 충분함	총 합	
연령	20대	14	134	120	33	5	306
		4.6	43.8	39.2	10.8	1.6	100.0
	30대	23	152	146	75	4	400
		5.8	38.0	36.5	18.8	1.0	100.0
	40대	10	70	109	59	5	253
		4.0	27.7	43.1	23.3	2.0	100.0
	50대	24	70	97	52	8	251
		9.6	27.9	38.6	20.7	3.2	100.0
	총 합	71	426	472	219	22	1210
		5.9	35.2	39.0	18.1	1.8	100.0

표 부록3-20 여가시간의 충분도

(단위: 명, %)

구 분		부족함	보통	충분	평균	총 합
연령	20대	148	120	38	2.61	306
		48.4	39.2	12.4		100.0
	30대	175	146	79	2.71	400
		43.8	36.5	19.8		100.0
	40대	80	109	64	2.92	253
		31.6	43.1	25.3		100.0
	50대	94	97	60	2.80	251
		37.5	38.6	23.9		100.0
	총 합	497	472	241	2.75	1210
		41.1	39.0	19.9		100.0

표 부록3-21 여가활동이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88	78	25	17	13	16	24	33	9	3	306
		28.8	25.5	8.2	5.6	4.2	5.2	7.8	10.8	2.9	1.0	100.0
	30대	122	97	38	27	25	23	29	26	13	0	400
		30.5	24.3	9.5	6.8	6.3	5.8	7.3	6.5	3.3	0.0	100.0
	40대	58	39	35	27	15	22	27	18	11	1	253
		22.9	15.4	13.8	10.7	5.9	8.7	10.7	7.1	4.3	0.4	100.0
	50대	61	48	22	24	10	27	21	21	16	1	251
		24.3	19.1	8.8	9.6	4.0	10.8	8.4	8.4	6.4	0.4	100.0
	총 합	329	262	120	95	63	88	101	98	49	5	1210
		27.2	21.7	9.9	7.9	5.2	7.3	8.3	8.1	4.0	0.4	100.0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⑤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하기 싫어서/귀찮아서 ⑧ 쉬고 싶어서 ⑨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⑩ 기타

표 부록3-22 고민상담 상대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합	
연 령	20대	43	21	3	204	6	4	1	1	18	5	306
		14.1	6.9	1.0	66.7	2.0	1.3	0.3	0.3	5.9	1.6	100.0
	30대	42	62	0	244	13	6	3	0	26	4	400
		10.5	15.5	0.0	61.0	3.3	1.5	0.8	0.0	6.5	1.0	100.0
	40대	9	27	10	142	23	7	0	9	25	1	253
		3.6	10.7	4.0	56.1	9.1	2.8	0.0	3.6	9.9	0.4	100.0
	50대	5	34	18	135	16	6	2	6	28	1	251
		2.0	13.5	7.2	53.8	6.4	2.4	0.8	2.4	11.2	0.4	100.0
	총 합	99	144	31	725	58	23	6	16	97	11	1210
		8.2	11.9	2.6	59.9	4.8	1.9	0.5	1.3	8.0	0.9	100.0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자녀 ④ 친구 및 이웃 ⑤ 직장동료 ⑥ 선후배
 ⑦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⑨ 없음 ⑩ 기타

표 부록3-23 현재 직업

(단위: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 합	
연 령	20대	2	41	165	40	42	1	0	1	9	0	5	306
		0.7	13.4	53.9	13.1	13.7	0.3	0.0	0.3	2.9	0.0	1.6	100.0
	30대	10	56	255	36	36	0	2	0	2	0	3	400
		2.5	14.0	63.8	9.0	9.0	0.0	0.5	0.0	0.5	0.0	0.8	100.0
	40대	12	47	64	50	45	0	4	0	10	0	2	234
		5.1	20.1	27.4	21.4	19.2	0.0	1.7	0.0	4.3	0.0	0.9	100.0
	50대	13	32	39	60	60	0	8	0	18	0	2	232
		5.6	13.8	16.8	25.9	25.9	0.0	3.4	0.0	7.8	0.0	0.9	100.0
	총 합	37	176	523	186	183	1	14	1	39	0	12	1172
		3.2	15.0	44.6	15.9	15.6	0.1	1.2	0.1	3.3	0.0	1.0	100.0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이외(미상, 분류불능 포함) ⑪ 기타

표 부록3-24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총 합	
연령	20대	195	19	79	0	9	4	306
		63.7	6.2	25.8	0.0	2.9	1.3	100.0
	30대	297	8	72	0	12	11	400
		74.3	2.0	18.0	0.0	3.0	2.8	100.0
	40대	166	10	16	0	28	14	234
		70.9	4.3	6.8	0.0	12.0	6.0	100.0
	50대	131	16	21	0	37	27	232
		56.5	6.9	9.1	0.0	15.9	11.6	100.0
총 합	789	53	188	0	86	56	1172	
	67.3	4.5	16.0	0.0	7.3	4.8	100.0	

【 표 부록3-25 】 근로형태

(단위: 명, %)

구 분		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총 합
연령	20대	165	92	30	6	293
		56.3	31.4	10.2	2.0	100.0
	30대	229	122	22	4	377
		60.7	32.4	5.8	1.1	100.0
	40대	151	39	1	1	192
		78.6	20.3	0.5	0.5	100.0
	50대	110	48	9	1	168
		65.5	28.6	5.4	0.6	100.0
	총 합	655	301	62	12	1030
		63.6	29.2	6.0	1.2	100.0

【 표 부록3-26 】 부채여부

(단위: 명, %)

구 분		있음	없음	총 합
연령	20대	75	231	306
		24.5	75.5	100.0
	30대	109	291	400
		27.3	72.8	100.0
	40대	72	181	253
		28.5	71.5	100.0
	50대	64	187	251
		25.5	74.5	100.0
	총 합	320	890	1210
		26.4	73.6	100.0

【 표 부록3-27 】 전반적인 생활수준

(단위: 명, %)

구 분		최하층	하층	중간층	상층	최상층	총 합
연령	20대	23	138	134	8	3	306
		7.5	45.1	43.8	2.6	1.0	100.0
	30대	13	154	224	9	0	400
		3.3	38.5	56.0	2.3	0.0	100.0
	40대	11	66	150	26	0	253
		4.3	26.1	59.3	10.3	0.0	100.0
	50대	10	79	144	16	2	251
		4.0	31.5	57.4	6.4	0.8	100.0
	총 합	57	437	652	59	5	1210
		4.7	36.1	53.9	4.9	0.4	100.0

표 부록3-28 향후 생활수준

(단위: 명, %)

구 분	매우 나빠짐	다소 나빠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다소 좋아짐	매우 좋아짐	총 합	
연령	20대	13	36	138	110	9	306
		4.2	11.8	45.1	35.9	2.9	100.0
	30대	14	65	164	142	15	400
		3.5	16.3	41.0	35.5	3.8	100.0
	40대	2	54	130	66	1	253
		0.8	21.3	51.4	26.1	0.4	100.0
	50대	3	56	132	59	1	251
		1.2	22.3	52.6	23.5	0.4	100.0
	총 합	32	211	564	377	26	1210
		2.6	17.4	46.6	31.2	2.1	100.0

2016 정책연구 - 12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장진희
발행일 2016년 12월
인쇄처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 S B N 979-11-85624-97-6(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